

011.4097

총 146

한국표준산업분류 준용범령집

2009



B0012016

통계정책국
통계기준팀

법령집 이용 시 유의사항

1. 본 법령집은 표준산업분류 준용법령의 종류, 소관부처, 준용내역 등을 파악하여 관련 민원사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내부 실무자 업무참고용을 제작한 것입니다.
2. 수록된 법령들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하였으며, 2009년 8월 7일 현재 시행중인 법령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3. '표준산업분류'용어가 직접법령에 현출된 경우에만 수집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 표준산업분류를 준용하는 법령들은 여기에 수집된 법령 숫자(77개)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목 차

I. 한국표준산업분류 준용법령 현황	1
1. 주관기관 및 법령별 현황	3
2. 준용법령 목록	4
II. 준용법령 세부내용	7
1. 지식경제부 소관법령(19)	9
2. 중소기업청 소관법령(7)	41
3. 노동부 소관법령(10)	47
4. 환경부 소관법령(7)	55
5. 기획재정부 소관법령(15)	87
6. 금융위원회 소관법령(6)	120
7. 공정거래위원회 소관법령(2)	123
8. 행정안전부 소관법령(6)	124
9. 국토해양부 소관법령(1)	163
10. 경찰청 소관법령(1)	167
11. 국가보훈처 소관법령(1)	170
12. 농림수산식품부 소관법령(1)	173
13. 국방부 소관법령(1)	174
14. 교육과학기술부 소관법령(1)	179
15.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약관	181
[붙임] 한국표준산업분류 준용 서식 모음	187

STATISTICS



I . 한국표준산업분류 준용범령 현황



1. 주관 기관 및 법령별 현황

주관 기관 별	법령 별			
	계	법률	대통령령 (시행령 등)	부령 (시행규칙 등)
계	77	8	43	26
지식경제부	18	1	8	9
중소기업청	7	-	7	
노동부	10	-	6	4
환경부	7	1	2	4
기획재정부	15	2	7	6
금융위원회	6	2	4	-
공정거래위원회	2	1	1	-
행정안전부	6	1	3	2
국토해양부	1	-	-	1
경찰청	1	-	1	-
국가보훈처	1	-	1	-
농림수산식품부	1	-	1	-
국방부	1	-	1	-
교육과학기술부	1	-	1	-

※ 기타 한국전력공사나 은행 등 공공기관에서도 약관이나 내부규정 등을 통해 산업분류를 준용하여 사용하고 있음

2. 준용법령 목록

순번	법령명	소관 부처	담당 부서	비고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경부	입지총괄과	공장등록 등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첨단업종 등
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4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5	산업발전법	"	산업경제정책과	
6	산업발전법 시행령	"	"	지식서비스 산업
7	산업발전법 시행규칙	"	"	
8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	유통물류과	
9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산업환경과	
10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	투자정책과	
11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규칙	"	"	
12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규제개혁법무 담당관	
13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	"	
14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부품소재총괄과	
15	전기사업법 시행령	"	전력산업과	
16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	"	
17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령	"	제품안전정책과	
18	열사용기자재 관리규칙	"	에너지관리과	
19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중기청	정책총괄과	중소기업의 기준
20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21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	기술정책과	
22	중소기업사업전환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사업전환과	

23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령	중기청	인력지원과	
24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	창업진흥과	
2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	기업협력과	
26	고용보험법 시행령	노동부	고용보험정책팀	
27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	"	
2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보험운영지원팀	
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30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고용정책팀	
31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규칙	"	노사협력복지팀	
3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안전보건정책과	
3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	
3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	산재보험혁신팀	
35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산업보건환경팀	
36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37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기후대기정책과	
38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물환경정책과	
39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	자원순환정책과	
4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자원재활용과	
4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4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43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재정부	법인세제과	
44	법인세법 시행령	"	"	
45	법인세법 시행규칙	"	"	
46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	"	
4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부가가치세과	
48	농축산임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	"	

49	관세법 시행규칙	재정부	관세제도과	
50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국제조세제도과	
5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5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	재산세제과	
53	소득세법 시행령	"	소득세제과	
54	소득세법 시행규칙	"	소득세제과	
55	조세특례제한법	"	조세특례제도과	
5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	
57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	출자관리과	
58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위	금융정책과	
59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	"	
60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중소서민금융과	
61	은행법 시행령	"	은행과	
62	전자금융거래법	"	"	
6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자본시장과	
6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거위	경쟁정책총괄과	
65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소비자정책과	
66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행안부	회계공기업과	
67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	"	
68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 별법 시행령	"	지역발전과	
69	지방세법	"	지방세정책과	
70	지방세법 시행령	"	"	
71	지방세법 시행규칙	"	"	
72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부	건축기획과	
73	경비업법 시행령	경찰청	생활안정과	
7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훈처	보상급여과	
75	어업협정체결에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시행령	농식품 부	어업정책과	
76	주한미군기지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방부	이전사업단 총괄기획팀	
77	학교기업의설치운영에관한규정	교과부	규제개혁법무 담당관	

STATISTICS



Ⅱ. 준용법령 세부 내용



지식경제부 소관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9.8.7] [대통령령 제21665호, 2009.8.5, 일부개정] 지식경제부
(입지총괄과), 02-2110-5303

□ 제2조 (공장의 범위)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제조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
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8.5]

□ 제36조의3 (분양공고안 승인의 제외대상) ① 법 제28조의4제2항제1호에
따라 아파트형공장의 입주자를 비공개로 모집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해당 아파트형공장의 유치 등을 위하여 미리 입주할 대상자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

2. 특정 업종(「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의 집단유치

[전문개정 2009.8.5]

[별표 4] <신설 2009.8.5>

해당 업종(제34조 제2호 관련)

분류번호	업종명
26110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26120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 반도체소자 제조업
26211	액정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업
26294	전자카드 제조업
26296	전자접속카드 제조업
26322	컴퓨터 모니터 제조업
26323	컴퓨터 프린터 제조업
26329	기타 주변기기 제조업
26410	유선통신장비 제조업
26421	방송장비 제조업
26422	이동전화기 제조업
26429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26511	텔레비전 제조업
26519	비디오 및 기타 영상기기 제조업
26521	라디오, 녹음 및 재생기기 제조업
26529	기타 음향기기 제조업
27329	기타공학기기 제조업
31310	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09.8.7] [지식경제부령 제91호, 2009.8.7, 일부개정] 지식경제부 (입지총괄과), 02-2110-5303

□ 제2조의2 (운동시설 운영업의 범위) 영 제6조제6항제7호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기타 스포츠시설운영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2. 수영장 운영업
3. 볼링장 운영업
4. 당구장 운영업
5.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6. 골프연습장 운영업
7.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전문개정 2009.8.7]

□ 제7조의2 (공장설립등의 변경신고) ①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법 제8조에 따라 고시된 공장입지기준고시에 따른 업종분류 내에서의 업종(「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의 변경(이하 "세부업종변경사항"이라 한다)

[별표 1의2] <개정 2009.8.7>

농·수·축·임산물 가공 업종(제13조제1항 관련)

분류번호	업종	분류번호	업종
10110	도축업	10501	액상시유 및 기타 낙농제품 제조업
10121	가금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611	곡물 도정업
10129	기타 육류 가공 및 저장처리업	10612	곡물 제분업
		10613	제과용 혼합분말 및 반죽 제조업
10211	수산동물 훈제, 조리 및 유사 조제식품 제조업	10619	기타 곡물가공품 제조업
10213	수산동물 냉동품 제조업	10620	전분제품 및 당류 제조업
10212	수산동물 건조 및 염장품 제조업	10800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단미사료보조사료제조만 해당함)
10220	수산식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219	기타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	10712	빵류 제조업
		10711	떡류 제조업
10301	과실 및 채소 절임식품 제조업	10713	코코아 제품 및 과자류 제조업
		10742	천연 및 혼합조제 조미료 제조업 (천연조미료 제조업)
10309	기타 과실·채소 가공 및 저장처리업		
10401	동물성유지 제조업	10743	장류 제조업
10402	식물성유지 제조업	10749	기타 식품 첨가물 제조업 (천연식품 첨가물 제조업)
10403	식용 정제유 및 가공유 제조업		
		10792	차류 가공업
		10794	두부 및 유사식품 제조업
10796	건강보조용 액화식품 제조업 (동물고기에 한약재를 혼합하여 조제한 액화식품 제조)	10795	인삼식품 제조업
		10798	도시락 및 식사용 조리식품 제조업
10797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16221	목재문 및 관련 제품 제조업
10799	그 외 기타 식료품 제조업	16229	기타 건축용 나무제품 제조업
11129	기타 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 (과실 및 곡물 증류주와 가향조제주 제조업)	16232	목재 포장용 상자, 드럼 및 유사용기 제조업 (목재상자 제조업)
11111	탁주 및 약주 제조업	16301	코르크 제품 제조업
11112	청주 제조업	16302	뚝자리 및 기타 조물제품 제조업
11119	기타 발효주 제조업	16291	목재도구 및 기구 제조업
11113	맥아 및 맥주 제조업(맥아제조업)	16292	주방용 및 식탁용 목제품 제조업
12001	담배 재건조업	16293	장식용 목제품 제조업
16101	일반 제재업	16299	그 외 기타 나무제품 제조업
16102	표면가공 목재 및 특정 목 적용 제재목 제조업	20209	기타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
		20493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 (젤라틴 캡슐 제조업)

[별표 2] <개정 2003.7.19>

자원재활용업종(제13조제2항관련)

분류번호	업종	분류번호	업종
37100	재생용 금속가공원료 생산업	37200	재생용 비금속가공원료 생산업

[별표 3] <개정 2009.8.7>

생활소비재 관련 업종(제13조제3항 관련)

1. 과밀억제지역 및 성장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이 허용되는 생활소비재 관련 업종

분류번호	업종	분류번호	업종
11201	얼음제조업	22299	그 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13104	연사 및 가공사 제조업	33110	귀금속 및 관련 제품 제조업
13109	기타 방적업		
13310	편조원단 제조업	33401	인형 및 장난감 제조업
14411	스타킹 및 기타 양말 제조업		
14300	편조 의복 제조업	33910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
13320	편조제품 제조업	13403	날염 가공업
14419	기타 편조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13229	기타 직물제품 제조업	13221	침구 및 관련 제품 제조업
13921	끈 및 로프 제조업	13222	지수제품 및 지수용 재료 제조업
13991	세폭직물 제조업	13223	커튼 및 유사제품 제조업
13999	그 외 기타 분류되지 않은 섬유제품 제조업(제면업)	13224	천막 및 기타 캔버스제품 제조업
		17909	그 외 기타 종이 및 판지제품 제조업
14111	남자용 정장 제조업		
14112	여자용 정장 제조업		
14120	내의 및 잠옷 제조업		
14130	한복 제조업		

14191	셔츠 및 체육복 제조업		
14192	근무복, 작업복 및 유사의복 제조업	18111	경 인쇄업
14193	가족의복 제조업	18112	스크린 인쇄업
14194	유아용 의복 제조업	18119	기타 인쇄업
14199	그 외 기타 봉제의복 제조업	18121	제판 및 조판업
14491	모자 제조업	18122	제책업
14499	그 외 기타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18129	기타 인쇄 관련 산업
14202	천연 모피제품 제조업	18200	기록매체 복제업
14203	인조모피 및 인조모피 제품 제조업	20303	가공 및 재생플라스틱 원료 생산업
15219	기타 신발 제조업	20499	그 외 기타 분류되지 않은 화학제품 제조업
15220	신발 부분품 제조업	22199	그 외 기타 고무제품 제조업 (경화고무 및 그 제품 제외)
17210	골판지 및 골판지상자 제조업	22232	포장용 플라스틱 성형용기 제조업(일반 성형용기 제외)
17221	종이 포대 및 가방 제조업	22240	기계장비 조립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17223	식품위생용 종이상자 및 용기 제조업	22291	플라스틱 적층, 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 제품 제조업
17222	판지상자 및 용기 제조업	33920	사무 및 회화용품 제조업
17229	기타 종이상자 및 용기 제조업	33120	모조 귀금속 및 모조 장신용품 제조업
17901	문구용 종이제품 제조업	33931	가발 및 유사 제품 제조업
17902	위생용 종이제품 제조업 타 표면도포제품 제조업	33991	우산 및 지팡이 제조업
		33992	단추 및 유사 파스너 제조업
		33994	비 및 솔 제조업

2. 자연보전지역 안에서의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이 허용되는 생활 소비재 관련 업종: 제1호에 따른 생활소비재 관련 업종 중 얼음 제조업, 의류 제조업 또는 인쇄업

[별표 4] <개정 2009.8.7>

건축자재 업종(제14조 관련)

분류번호	업종	분류번호	업종
23231	점토벽돌, 블록 및 유사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23326	콘크리트관 및 기타 구조용 콘크리트제품 제조업(토목 공사용 콘크리트제품 제조업)
23232	타일 및 유사 비내화요업제품 제조업	23911	건설용 석제품 제조업
23321	비내화 모르타르 제조업	23919	기타 석제품 제조업
23322	레미콘 제조업		
23325	콘크리트 타일, 기와, 벽돌 및 블록 제조업		

[별표 5] <개정 2009.8.7>

첨단 업종(제15조 관련)

분류번호	업종명	적용 범위
20119	기타 기초 유기화합물질 제조업	○ 고분자신소재 ○ 나노기술, 나노소재 및 이를 이용한 화합물
20121	산업용 가스제조업	○ 초고순도 수소가스(순도 99.999% 이상인 것을 말한다)
20129	기타 기초 무기화합물 제조업	○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재료 (Process Chemical)
2110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 바이오의약품 - 항생제, 항암제, 백신, 호르몬제 - 면역제제, 혈액제제, 성장인자 - 신개념 치료제(유전자치료제, 세포치료제, 치료용 항체 등)
20132	합성염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업	○ 신 염료 - 키녹살린계 반응성 염료 - 복합관능형 반응성 염료 - 안트라퀴논계 염료 및 고견뢰 도금속착염 염료 ○ 고급 유기안료 - 키나크리돈계 - 폴리아조계 - 디옥사진계

<p>20301 합성고무제조업 21210 완제 의약품 제조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페닐톤계 - 페닐렌계 - 이소인도리논계 및 디오인디고계 ○ 특수 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리콘탄성방수도료 - 불소수지도료 - 전기절연수지도료 - 세라믹도료 및 탄성우레탄도료 ○ 고분자 화합물 (CR, NBR, EPDM, IIR) ○ 저분자 화합물 의약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양계 치료제(항암제) - 순환기계 질환 치료제(고혈압, 고지혈증, 혈전) - 감염계 질환 치료제(항생제, 항바이러스제, 항진균제) - 신경계 질환 치료제(치매, 뇌졸중, 간질, 우울증, 정신분열증, 파킨슨씨병) - 내분비계 질환 치료제(골다공증, 당뇨, 비만) - 소화기계 질환 치료제(궤양) - 면역계 질환 치료제(면역기능 조절, 천식, 알러지, 염증/관절염) - 호르몬제
<p>2130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 제품 제조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이오칩(바이오센서 포함) ○ 약물전달시스템 응용제품 ○ 자가조절형 의료용 약물투입기 ○ 생물 농약
<p>20412 농약 제조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재료(Photo Resist)
<p>20421 일반용 도료 및 관련 제품 제조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arrow-Range Ethoxylate계 계면활성제 ○ 바이오계 계면활성제 ○ 실리콘계·불소계 계면활성제 ○ end-capped 계면활성제 ○ 제미니형 계면활성제 ○ 고분자형 계면활성제
<p>20431 계면활성제 제조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토레지스트용 소재
<p>20491 사진용 화학제품 및 감광재료 제조업</p>		
<p>20493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전자용 기능성 접착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도성 접착제 - 광섬유용 접착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도체용 접착제 ○ 의료용 접착제 - 연조직(피부 등)용 접착제 - 경조직(치아·뼈 등)용 접착제 ○ 투명 도전성 필름
22291	플라스틱 적층, 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 제품 제조업	
23121	유리 섬유 및 광학용 유리 제조업	○ 정밀 광학용 소재(광학유리 생지)
23129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 제조업	○ 평판디스플레이용 유리
23213	산업용 도자기 제조업	○ 파인 세라믹스
23999	그 외 기타 분류되지 않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고강도 고탄성 탄소섬유, 고기능 탄소섬유제품
24121	열간 압연 및 압출제품 제조업	○ 나노섬유, 나노섬유 제품
		○ TWIP 강, Trip강, DP(Dual Phase)강
		○ 극한지용, 내식성 고강도 API용 소재
		○ 나노 석출물을 이용한 초세립 강재 (Nano steel)
24122	냉간 압연 및 압출제품 제조업	○ 철계 극박판(두께 0.2mm 이하인 것)
		○ 고Al, 고 Mn 첨가 등 고합금강
		○ 100kg급 이상 고장력강 냉간압연 제품
24123	철강선 제조업	○ 철계 극세선(지름 0.05mm 이하인 것)
		- 고탄소강선재, 비정질와이어
24191	도금, 착색 및 기타 표면 처리강재 제조업	○ 고속용융 도금강판
24221	동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 무산소동판, 전해동박, 리드프레임 소재, 본딩와이어 소재, 커넥터용 소재
24222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 제품 제조업	○ 알루미늄박판(전자재료용만 해당한다)
24290	기타 1차 비철금속 제조업	○ 비철금속분말업(분말가공/성형업은 제외한다)
25911	분말야금제품 제조업	○ 철계, 비철계 분말야금제품 (충진율 95% 이상 업체만 해당한다)
25934	톱 및 호환성 공구 제조업	○ 초경합금공구, 다이아몬드공구, 물리 증착 또는 화학증착공구, 서메트 공구, 입방질화붕소공구, 고속도강 공구
29111	내연기관 제조업	○ 내연기관(지게차, 굴삭기, 트랙터용 엔진)
29119	기타 기관 및 터빈 제조업	○ 증기 및 가스터빈
29120	유압기기 제조업	○ 진공펌프
(29132)	(기체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	- 터보펌프, 이온펌프, 티타늄승화펌프,

		<p>터보분자펌프, 유확산펌프, 저온펌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공압펌프 ○ 유공압 액츄에이터(모터, 실린더 등) ○ 기체 압축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기압축기(스크루식 또는 터보식인 것) - 가스압축기(사용압력이 10kg/cm² 이상인 것, 터보압축기는 10kg/cm² 이하인 것도 포함한다)
29133	탭, 밸브 및 유사장치 제조업	○ 유공압 자동제어 밸브
29141	볼베어링 및 롤러베어링 제조업	○ 볼·롤러 베어링(KS P6급 이상) 및 그 핵심부품[리테이너, 케이지(cage), 강구(steel ball)]
29142 (29120)	기어 및 동력전달 장치 제조업 (유압기기 제조업)	○ 감속기
		○ 동력전달장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압 및 전자식 클러치 - 전후진 셔틀시스템, 등속조인트 - 동력전달축(차동기어가 포함된 것만 해당한다)
		○ 제동장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공압·제동력배분 브레이크 - 구동력 조절장치
29150	산업용 오븐, 노(爐) 및 노용 버너 제조업	○ 신소재(신금속 및 고분자 소재) 가공용 전기로
29172	공기조화장치 제조업	○ 초청정 Clean Room(한국산업규격에 따른 청정도 1등급만 해당한다)
		○ 시스템에어컨(고효율EHP) 및 핵심 부품(압축기, 모터, 열교환기)[한국산업규격에 따른 COP 냉난방 평균 3.5 이상, APF 4.0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 고효율 지열히트펌프시스템 및 핵심 부품(압축기, 모터, 열교환기)[「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3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심사기준에 따른 냉방 EER 4.1 이상, 난방 COP 3.3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29174	기체 여과기 제조업	○ 환경시설

(29175)	(액체 여과기 제조업)	
29221	전자응용용 공작기계 제조업	○ 수치제어장치가 장착된 공작기계 및 부품
29222	금속 절삭기계 제조업	○ 수치제어장치가 장착된 공작기계 및 부품(CNC, 서보모터 및 드라이버, 볼스크류, 리니어베어링, 리니어모터, ATC, APC, 터렛 공구대, 커빅커플링, 오일쿨러, 킬팅테이블, 킬팅헤드, 리니어스케일, 공구 또는 공작물 홀더류, 유공압 밸브류)
29223	금속 성형기계 제조업	○ 1분당 450 스트로크 이상의 고속 프레스, 트랜스퍼프레스 및 부품(자동 소재 이송 장치, 언코일러, 레벨러, 피더, 클러치 브레이크, 다이 쿠션)
28909	그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 자동화용 전기용접설비 및 절단기(레이저, 플라즈마, 초음파, 고주파, 인버터방식의 용접기 및 절단기, 고속전철용 궤도용접설비, 이중금속용 브레이징 용접기)
29250	음·식료품 및 담배가공기계 제조업	○ 음·식료품 가공기계
29261	산업용 섬유세척, 염색, 정리 및 가공기계 제조업	○ 컴퓨터자수기(4색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 방사니플(노즐)
29269	기타 섬유, 의복 및 가죽 가공 기계 제조업	○ 고성능직기 - 전자제어 위사공급장치, 전자송출, 전자권취장치 및 정지단 방지장치를 갖춘 직기 · 레피어직기 : 분당 600회전 이상 · 워터젯트직기 : 분당 800회전 이상 · 에어젯트직기 : 분당 800회전 이상
29271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 반도체장비 및 장비부품(반도체 설계·조립 및 검사용, 포토마스크 제조용, 웨이퍼 제조 및 가공용만 해당한다) 제조업
29272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	○ 디스플레이장비 및 장비부품 제조업
29292	고무, 화학섬유 및 플라스틱 성형기 제조업	○ 사출성형기 ○ 압출성형기 ○ 블로몰딩기

29293	인쇄 및 제책용 기계 제조업	○ 재료가공기 - 레이저마킹기
29294	주형 및 금형 제조업	○ 프레스용 금형 ○ 다이캐스팅 금형 ○ 플라스틱성형용 금형 ○ 금형용 부품
29280	산업용 로봇 제조업	○ 제조업용 로봇 - 이적재용, 공작물 착탈용, 용접용, 표면처리용, 조립·분해용, 가공용, 공정용, 시험·검사용, 기타 제조용 로봇 ○ 전문서비스용 로봇 - 빌딩 관련 서비스용, 극한작업용, 의료복지용, 사회 인프라 공사용, 군사용, 생물생산용, 기타 전문 서비스용 로봇 ○ 네트워크기반 로봇 ○ 지능형 로봇 부품 - 로봇용 구조부품, 로봇용 구동부품, 로봇용 센싱부품, 로봇용 제어부품, 로봇용 통신부품, 기타 로봇용 부품
29299	그 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 개인지원용 로봇 - 가사용, 생활지원용, 여가지원용, 교육 및 연구지원용
26310	컴퓨터 제조업	○ 휴대용 컴퓨터 ○ 홈 서버, 홈 플랫폼
26321	기억장치 제조업	○ 광정보기기(광디스크, 광디스크 드라이브 및 바코드리더)
26329	기타 주변기기 제조업	○ 자기헤드(컴퓨터 자기헤드)
29180	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레이저 복합기, 레이저 프린트
28111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 AC/DC 서보모터, 스테핑모터 (200W이하, 전력효율 75% 이상) ○ BLDC모터, 리니어모터 (200W이하, 전력효율 75% 이상)
28113	방전램프용 안정기 제조업	○ 전자식 안정기
28119	기타 발전기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 리액터, Nuero-Fuzzy 인버터, 스위칭 신호방식의 전력변환장치 차단기
28121	전기회로 개폐, 보호 및 접속장치 제조업	○ 전기회로 개폐, 보호 및 접속장치
28122	배전반 및 전기자동제어반 제조업	○ PLC(프로그램 내장 컨트롤러) 제조

28202	축전지 제조업	○ 전기기기용 리튬이온 이차전지, 리튬이온폴리머 전지, 리튬폴리머 전지, 니켈수소 전지, 슈퍼커패시터 전지, 연료 전지, 모듈화 전지(BMS 포함) 및 이러한 제품의 부품, 소재, 장비
28410	전구 및 램프 제조업	○ LED, OLED, CNT 이용 램프, 초고주파 무전극 방전등, 세라믹 메탈 헬라이드 램프
28422 (28421)	일반용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 (운송장비용 조명장치 제조업)	○ LED, OLED, CNT를 이용한 조명장치, 초고주파 무전극 방전형 조명장치
28423 28903	전시 및 광고용 조명장치 제조업 교통신호장치 제조업	○ LED를 이용한 조명장치 ○ 교통통제용 전기장치 ○ LED를 이용한 교통통제용 전기장치
28909	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 멀티플렉스 와이어 하네스 ○ 센서류 및 액츄에이터
26120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 반도체소자 제조업	○ 태양전지, 반도체 소자 제조업, LED, PD, LD
26110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 시스템 반도체, 지능형 센서 IC, 시스템 IC, 고전압/RF IC, 3차원 패키지 IC, 메모리 (EEPROM, PRAM, FRAM, 차세대 비휘발성 메모리 등)
26221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 인쇄회로기판
26293	전자저항기 제조업	○ 전자저항기, 써머스터, 가변저항기
26294	전자카드 제조업	○ 칩 내장 카드
26211	액정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업	○ LCD
26219	플라즈마 및 기타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업	○ PDP, OLED ○ 차세대 디스플레이(EL, VFD, FED) ○ E-Paper (Flexible Panel)
26299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 리드프레임, 포토마스크, 센서, 새도우 마스크, RFID/USN(u-센서 네트워크), Color Filter, Back Light, 편광판, 위상 보상 필름, 투명 전극, 드라이브 IC, 액정
26410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	○ 광섬유 전송 시스템 ○ 광통신 부품
26421	방송장비 제조업	○ 위성방송 통신기기 제조업 - 정보통신기기 부분품[고체 촬상 소자 (CCD), 변·복조기(MODEM), 감열

		기록소자(TPH), 발광 소자(LPH) 프린터 헤드만 해당한다] 제조업, 유선방송 텔레비전시스템(양방향 컨버터, 양방향 헤드-엔드 및 간선증폭기만 해당한다) 제조업
26422 (26429)	이동전화기 제조업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 이동통신시스템 및 단말기 - 텔레매틱스시스템 - 무선 홈네트워크, 무선BcN, TPEG
26511	텔레비전 제조업	○ 액정텔레비전 제조업 ○ DTV 수상기
27111	방사선장치 제조업	○ DMB 송수신기 ○ 영상진단기기 및 단층촬영장치(방사성 동위원소, 자력선, 엑스선 또는 초음파를 이용한 것만 해당한다) 제조업 ○ 수술 및 치료용 기기(방사성 동위원소, 자력선, 엑스선, 레이저, 초음파 또는 마이크로웨이브를 이용한 것만 해당한다) 제조업
27112	전기식 진단 및 요법기기 제조업	○ 생체 계측기기(심전계·뇌파계·근전계·안진계 또는 심음계만 해당한다) 제조업 ○ 의료용 실험기기(자동 생화학분석기기 및 전자현미경만 해당한다) 제조업 ○ 원격조정 환자종합감시장치 제조업
27192	정형외과용 및 신체보정용 기기 제조업	○ 정형외과용 및 신체보정용 기기
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 의료용 레이저기기 ○ 의약품 주입기
27211	항행용 무선기기 및 측량기구 제조업	○ 레이더 및 항행용 무선기기
27212	전자기측정, 시험 및 분석기구 제조업	○ 전자파·광신호파를 응용하거나 마이크로프로세서를 내장한 것만 해당함 - 파형현시기 제조업 - 전자분석기기 제조업 - 디스플레이 및 반도체 특성 측정기기 제조업 - 회로소자측정기기 제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전체 및 자성체 측정기기 제조업 - 전송특성 측정기기 제조업 - 데이터회선 측정기기 제조업 - 전파 및 공중선 측정기기 제조업 - 음향특성 측정기기 제조업 - 광 측정기기 제조업 - 측정 보조기기(증폭기·검파기 및 신호 발생기만 해당한다) - 전자식 물리 및 화학량 측정·분석 기기 제조업 - 대기오염환경 측정·분석기기 제조업
27214	속도계 및 적산계기 제조업	○ 기체 및 액체용 적산계기
27215	기기용 자동 측정 및 제어 장치 제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 광 측정기(goniometer) 시스템 ○ 적분구(intergrating sphere) 시스템 ○ 전자파, 광 신호, 초음파, 레이저를 응용한 분석·관측, 발생 계측기 및 이에 준하는 계측 시스템 ○ 화학, 물성 시험 및 분석 기기와 방사성 측정기 ○ 질량·온도·습도·압력·열량·유량 계측기 및 계측 시스템 ○ 회로, 전기적 특성 시험, 검사 측정기 및 자동 측정 시스템 ○ 무선 원격 자동 계측 및 제어 시스템 ○ 산업용 제어 기기, 자동 제어 시스템(PLS·DCS·철도차량 자동 제어 장치를 포함한다)
27219	기타 측정, 시험, 항해 및 정밀 기기 제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 및 군사, 의료, 농업 등의 화상, 영상, 기상, 위성 등 각종 계측 데이터를 획득하여 이를 가공, 분석, 해석 등을 하기 위한 계측기 및 계측 시스템 - 대역폭 30GHz 이상 스펙트럼 분석기 - 대역폭 3GHz 이상 디지털 오실로스코프 - 대역폭 60GHz 이상 주파수 카운터 - 대역폭 60GHz 이상 신호 발생기 - Digit 6 이상 디지털 멀티미디어 - 대역폭 2.5GHz 이상 모듈레이션

27216	산업처리공정 제어장비 제조업	○ 산업처리공정 제어장비
27321	광학렌즈 및 광학요소 제조업	○ 광섬유 및 편광판
28301	광섬유 케이블 제조업	○ 광케이블 제조업
27322	사진기, 영사기 및 관련 장비 제조업	○ 광학소자(DSP 내장) 고정밀 촬영기 · 상재생기
27329	기타 광학기기 제조업	○ 상관측기기(고분해용 현미경만 해당한다) 제조업 ○ 광학기기용 렌즈 또는 프리즘 ○ 레이저발진장치 제조업
30110	자동차용 엔진 제조업	○ 하이브리드 엔진, 전자제어식 엔진, 신소재 엔진 및 대체연료 엔진
30121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	○ 하이브리드차, 지능형차, 연료전지차
30310	자동차 엔진용 부품 제조업	○ 자동제어 및 조절장치 - 전자제어장치(ECU) - 전기자동차용 급속충전장치 - 배기가스저감 및 자기진단 장치 - 전기자동차용 전력변환 및 제어장치 ○ 동력발생장치 - 연료분사장치 - 분말단조 생산방식에 따른 부품 - 연료전지 및 연료변환시스템
30320	자동차 차체용 부품 제조업	○ 현가장치 - 감응력 가변식 및 전자제어식 현가장치 - 연속감쇠력 가변식 현가장치 - 능동형 차체제어 현가장치 - 감응형 댐퍼
30391	자동차용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 동력전달장치 - 유압 및 전자식 클러치 - 자동·반자동·무단변속기 및 부품(정밀냉간단조 및 분말야금단조) - 전후진 셔틀시스템, 등속조인트(C.V JOINT) - 동력전달축(차동기어가 포함된 것) - 상시 물림식 변속기
30399	그 외 기타 자동차 부품 제조업	○ 제동장치 - 유공압·제동력 배분 브레이크 - 전자제어식 제동장치(ABS) - 구동력 조절장치(TC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 안정성 제어장치(ESP) - 전자유압 제동장치(EHP) ○ 조향장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압식·4륜·전자제어식 조향장치 - 전동식 조향장치(EPS) ○ 냉·난방장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냉매·전기자동차용 냉방장치 ○ 주행안전·정보장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행안전장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어백(Wheel을 포함한다) · 안전벨트 - 주행정보장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간거리유지 정보시스템 · 음성정보·자동운행·입체식 계기(HUD) 장치 - 운전자위치 자동제어장치
31310	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 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부품은 제외한다)
31321	항공기용 엔진 제조업	○ 항공기용 엔진
31322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 항공기용 부품

[서식 2] 입지기준확인신청서

[서식 2의2] 사업계획서

[서식 3] 입지기준확인통보

[서식 5] 공장 신설 등 신청서

[서식 5의2] 공장설립승인사항 등 변경신고서

[서식 6] 공장 설립 대 장

[서식 7]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

[서식 7의2] 사업개시 신고(확인)서

[서식 8] 공장등록대장

[서식 8의2] 공장등록증명(신청)서

[서식 9] 공장등록 등 신청서

[서식 13] 공장이전(예정) 확인(신청)서

[서식 14] 기존공장폐쇄확인(신청)서

- [서식 17] 유치지역지정 등 신청서
- [서식 19] 아파트형공장 신설 등 신청서
- [서식 20] 아파트형공장설립완료(변경완료) 신고서
- [서식 20의2] 아파트형공장등록대장
- [서식 25] 산업단지입주신청(확인)서
- [서식 28] 처분신고서
- [서식 29] 임대신고서
- [서식 34] 매각협의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9.7.31] [대통령령 제21641호, 2009.7.27, 일부개정] 지식경제부
(입지총괄과), (02) 2110 - 5304~7

□ 제8조 (허가사항의 변경 등) ② 법 제11조제1항 후단에서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라 함은 업종(「통계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세분류단위를 기준으로 한다) 또는 면적의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05.11.30, 2007.10.2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08.3.3] [지식경제부령 제1호, 2008.3.3, 타법개정] 지식경제부
(입지총괄과), 02-2110-5306

- [서식 1] 자유무역지역 입주(변경)허가 신청서
- [서식 2] 입주확인서(발급신청서)

산업발전법

[시행 2009.5.8] [법률 제9584호, 2009.4.1, 전부개정] 지식경제부 (산업경제정책과), 02-2110-5113

□ 제21조(구조조정 대상기업의 범위) 구조조정 대상기업이란 금융업 및 보험업(「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업 및 보험업을 말한다)을 제외한 업종의 영업을 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한다.

산업발전법 시행령

[시행 2009.5.8] [대통령령 제21480호, 2009.5.6, 전부개정] 지식경제부 (산업경제정책과), 02-2110-5113

[별표 1]

산업의 범위(제2조 관련)

해 당 업 종	한국표준산업분류 번호
○제조업	10~33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석유화학공업 단지에 전기 및 증기를 공급하는 사업만 해당한다)	35
○수도사업(석유화학공업단지에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사업만 해당한다)	36
○환경 정화 및 복원업	39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370
○폐기물 수집운반업	381

○폐기물 처리업	382
○폐기물처리 및 오염방지시설 건설업	41224
○산업플랜트 건설업	41225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	42201
○소방시설 공사업	42204
○전기 공사업	4231
○도매 및 소매업	45~47
○철도운송업(화물을 운송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9100
○도시철도 운송업(화물을 운송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9211
○도로 화물 운송업	493
○소화물 전문 운송업	494
○파이프라인 운송업	495
○외항 화물 운송업	50112
○내항 화물 운송업	50122
○내륙 수상 화물 운송업	50202
○항만내 운송업	50203
○정기 항공 운송업(화물을 운송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511
○부정기 항공 운송업(화물을 운송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512
○보관 및 창고업	5210
○육상 운송지원 서비스업	5291
○항구 및 기타 해상 터미널 운영업(화물처리시설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52921
○공항 운영업(화물처리시설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52931
○화물 취급업	5294
○화물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서비스업	52991
○화물포장, 검수 및 형량 서비스업	5299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5911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59120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59201
○방송업	60
○전기통신업	61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2
○정보서비스업	63
○운송장비 임대업	691
○연구개발업	70
○전문서비스업	71
○전문디자인업	732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73902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73903
○물품감정, 계량 및 견본 추출업	73904
○그외 기타 분류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3909
○건물·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 서비스업	742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751
○경비, 경호 및 탐정업	753
○사무지원 서비스업	7591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75991
○전시 및 행사 대행업	75992
○신용조사 및 추심 대행업	75993
○포장 및 충전업	75994
○온라인 교육 학원	85504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8565
○병원	861

○의원	862
○기타 보건업(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의료 서비스 및 요양서비스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869
○기계 및 장비 수리업	951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952
○산업용 세탁업	96911

[별표 2]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제3조제1항 관련)

해 당 업 종	한국표준산업분류 번호
○환경 정화 및 복원업	39
○도매 및 상품중개업	46
○전자상거래업	47911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5911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5912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59201
○전기통신업	61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2
○정보서비스업	63
○연구개발업	70
○법무관련 서비스업	711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712
○광고업	713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714
○경영컨설팅업	71531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72
○전문디자인업	732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73902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73903
○물품감정, 계량 및 견본 추출업	73904
○그외 기타 분류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3909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74100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75320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75991
○전시 및 행사 대행업	75992
○신용조사 및 추심 대행업(신용정보를 수집·제공하는 사업만 해당한다)	75993
○포장 및 충전업	75994
○온라인 교육 학원(기술 및 직업훈련 교육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85504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8565
○병원	861
○의원	862
○기타 보건업(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의료 및 요양 서비스만 해당한다)	869

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시행 2009.5.8] [지식경제부령 제71호, 2009.5.8, 전부개정] 지식경제부 (산업경제정책과), 02-2110-5113

□ 제3조 (업종별 평균 부채비율 등) 영 제12조제2호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이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기업경영분석에

따른 해당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채비율을 말한다. 다만, 기업경영분석에 해당 업종의 부채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전체 업종의 평균 부채비율로 한다.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시행 2008.6.3] [지식경제부령 제11호, 2008.6.3, 타법개정] 지식경제부 (유통물류과), 02-2110-5142

□ 제7조의2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건립지원의 대상 업종) 영 제7조의 2제2호에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업"이라 함은 「통계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521(종합소매업)에 해당하는 업을 말한다. <개정 2008.3.3>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08. 9.29] [지식경제부령 제33호, 2008. 9.29, 전부개정] 지식경제부 (산업환경과), 02-2110-5134

□ 제2조(실태조사의 대상 등) ①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증기업과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산업환경경쟁력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을 대상으로 한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시행 2009.7.31] [대통령령 제21657호, 2009.7.30, 일부개정] 지식경제부
(투자정책과), 02-2110-5353

□ 제19조 (국유·공유재산의 임대 등)

③ 법 제1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새로 공장시설[「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제조업 외의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는 기업을 말한다.

1. 고용증대 등 국민경제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다.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 이상으로서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경영하려는 사업

[별표 1] <개정 2009.7.30>

부품·소재산업 대상 업종(제20조의2제 2 항 관련)

한국표준 산업분류	업종명
17	섬유제품 제조업
21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24	화학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25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6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27	제1차 금속산업

28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29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0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제조업
31	그 밖의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32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3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3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5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36	가구 및 기타 제품 제조업

[별표 2] <신설 2009.7.30>

업종별 현금지원 대상 신규고용 상시 근로자 수(제20조의2제3항 관련)

한국표준 산업분류	업종	상시 근로자 수
C	제조업	300명
B	광업	
F	건설업	
H	운수업	
J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A	농업, 임업 및 어업	200명
D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G	도매 및 소매업	
I	숙박 및 음식점업	
K	금융 및 보험업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E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100명
P	교육 서비스업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50명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규칙

[시행 2009.7.31] [지식경제부령 제89호, 2009.7.31, 일부개정] 지식경제부 (투자정책과), 02-2110-5353

[서식 1] 신주 등의 취득 또는 출연 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서

[서식 3] 기존주식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 투자

[서식 5]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신고서

[서식 12] 공장 신설 등 신청서

[서식 13] 사업계획 승인 등 신청서

[서식 16의6] 공장등록 신청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 2008.10.20] [대통령령 제21087호, 2008.10.20, 타법개정] 지식경제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2-2110-5222

□ 제12조 (안전관리자의 범위등)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등을 채용하여야 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분야가 있는 때에는 그 분야를 당해 사업장의 주된 영업분야 등으로 본다. <개정 1999.6.30, 2004.3.29, 2005.7.27, 2007.9.10, 2008.8.26>

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제조업(「통계법」에 의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대분류에 의한 제조업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연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을 관리하는 분야 그 밖의 사업의 경우에는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을 관리하는 분야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시행 2005.7.11] [산업자원부령 제292호, 2005.7.11, 일부개정] 지식경제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2-2110-5222

□ 제2조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의 종류)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업종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개정 1995.4.10, 1999.5.21, 2005.7.11>

1. 컨테이너임대업
2. 건설 및 토목공사용 기계장비임대업
3. 사무용 기계장비임대업

4.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임대업
5. 건축·엔지니어링 기타 기술서비스업
6. 패션디자인업
7. 폐기물수집 및 처리업
8. 폐수처리업

[서식 1] 공동사업계획승인신청서

[서식 2] 공동공장설립승인신청서

[서식 4] 공장증설신고서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 2009.6.26] [대통령령 제21566호, 2009.6.26, 타법개정] 지식경제부
(부품소재총괄과), 02-2110-5615

[별표 1]

부품·소재산업 대상업종(제2조관련)

한국표준산업분류	업종명
17	섬유제품 제조업
21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24	화학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25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6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27	제1차 금속산업
28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0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제조업
31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32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3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3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5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6	가구 및 기타 제품 제조업

전기사업법 시행령

[시행 2009.8.7] [대통령령 제21676호, 2009.8.6, 타법개정] 지식경제부 (전력산업과), 02-2110-4898

□ 제42조의2 (전기판매사업자가 사용전점검을 하는 전기설비) ① 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판매사업자가 사용전점검을 하는 전기설비는 법 제2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용전기설비중에서 다음 각 호의 설비 또는 시설(그 부속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설치한 전기설비의 전기설비로 한다. <개정 2006.10.26, 2007.3.27, 2007.6.15, 2007.10.23>

3. 「통계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하수처리·폐기물처리 및 청소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기 위한 설비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09. 1. 1] [지식경제부령 제41호, 2008.12.31, 타법개정] 지식경제부 (전력산업과), 02-2110-4898

□ 제35조의2 (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 시기 및 절차 등) ① 안전공사는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이하 "정기점검"이라 한다)을 사용전점검 또는 정기점검을 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전후 2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전점검 후 최초의 정기점검은 해당 전기설비가 설치된 장소와 같은 읍·면·동 내에 설치된 다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과 같은 시기에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4.8.9, 2005.5.17, 2007.7.11>

1. 다음 각 목의 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는 1년이 되는 날
차. 「통계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 처리 및 청소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기 위한 설비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09. 1. 1] [대통령령 제21182호, 2008.12.24, 전부개정] 지식경제부 (제품안전정책과), 02-509-7412

□ 제2조(안전인증의 면제) ①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을 하는 자가 연구개발을 위한 시료(시료)로 사용하는 것

□ 제4조(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면제) ①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을 하는 자가 연구개발을 위한 시료로 사용하는 것

열사용기자재 관리규칙

[시행 2008. 8.28] [지식경제부령 제25호, 2008. 8.28, 일부개정] 지식경제부 (에너지관리과), 02-2110-5423

□ 제35조 (검사의 면제) ① 법 제39조제6항에 따라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되는 검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8.28>

3. 「통계법」 제22조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의 사업장에 설치된 다음 각 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검사대상기기의 계속사용검사

가. 검사신청일 현재 최근 3년간 사업장안에서의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없는 업체에 설치된 검사대상기기

나. 최초 설치 후 5년 이내이고 연속하여 2회 이상 합격한 검사대상기기

중소기업청 소관법령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09.3.27] [대통령령 제21368호, 2009.3.25, 일부개정] 중소기업청
(정책총괄과), (042) 481 - 4541

[별표 1] <개정 2009.3.25>

중소기업의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기준
(제3조제1호 관련)

해 당 업 종	분류부호	규모기준
제조업	C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광업	B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건설업	F	
운수업	H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J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N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Q	
농업, 임업 및 어업	A	상시 근로자 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D	
도매 및 소매업	G	
숙박 및 음식점업	I	
금융 및 보험업	K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산업	R	
하수처리, 폐기물 처리 및 환경 복원업	E	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
교육 서비스업	P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S	
부동산업 및 임대업	L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 해당 업종의 분류 및 분류부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9.7.31] [대통령령 제21641호, 2009.7.27, 일부개정] 중소기업청
(정책총괄과), 042-481-4541

□ 제2조 (정의) ⑥ 법 제2조제10호 후단에 따른 동일성 유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8.4.10>

1. 가업승계를 한 자는 승계 전과 같은 업종(「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에 종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같은 업종에 종사한 것으로 본다.

□ 제25조 (공동상표 지원기준 및 절차 등) ① 중소기업청장은 5개 이상의 중소기업자가 공동상표를 도입하여 이용하려고 하면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무도장(舞蹈場)·골프장·스키장·도박장·주점(酒店) 또는 욕탕(浴湯)을 운영하는 것으로 분류되는 영업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시행 2009.7.31] [대통령령 제21644호, 2009.7.27, 일부개정] 중소기업청
(기술정책과), 042-481-4437

□ 제5조의2 (중소기업기술통계 작성대상 범위 등)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기술통계 작성대상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및 사업서비스업으로 하고, 그 조사대상은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개정 2007.10.23>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09.3.1] [대통령령 제21343호, 2009.2.27, 일부개정] 중소기업청
(사업전환과), 042-481-4536

□ 제2조 (사업전환의 범위) ② 이 영에서 사용하는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제8조 (사업전환계획의 승인기준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전환에 관한 계획(이하 "사업전환계획"이라 한다)의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전환계획이 사업전환의 범위에 해당할 것
2. 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자가 법 제3조의 적용범위에 해당할 것
3. 새로 운영하거나 추가하려는 업종이 제조업 및 서비스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과 건설업을 제외한 업종을 말한다)에 포함되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사업전환계획의 이행방법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할 것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09.4.21] [대통령령 제21445호, 2009.4.21, 타법개정] 중소기업청
(인력지원과), 042-481-4512

□ 제2조 (적용범위)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식기반서비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분류되는 업종 및 그 밖에 제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업종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06.5.30>

1. 부가통신업
2.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3.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4.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5. 전문디자인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시행 2009.7.31] [대통령령 제21641호, 2009.7.27, 일부개정]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 042-481-4409

□ 제2조 (창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9>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0.23>

□ 제4조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법 제3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이 경우 업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08.5.9>

1. 숙박 및 음식점업
2. 금융 및 보험업
3. 부동산업
4. 무도장운영업
5.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6. 기타 gambling 및 베팅업
7. 기타 개인 서비스업(산업용 세탁업은 제외한다)
8. 그 밖에 제조업이 아닌 업종으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시행 2008.9.14] [대통령령 제20998호, 2008.9.10, 일부개정] 중소기업청
(기업협력과), 042-471-4586

□ 제3조 (업종의 분류) ①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조합 또는 업종의 명칭을 붙인 연합회(이하 "업종연합회"라 한다)에 관한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의 세세분류에 따른다. 다만,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0.23>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도매업이나 소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에 따른 도매업이나 소매업의 구분 없이 세분류에 따를 수 있다.

□ 제15조 (조합의 분할)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조합을 분할할 수 있는 경우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에 따른 업종이 둘 이상인 경우로 한다.

노동부 소관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 2009.7.7] [대통령령 제21626호, 2009.7.7, 타법개정] 노동부 (고용보험정책팀), 02-2110-7204

□ 제2조 (적용 범위)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법 또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라 한다)에 따른다.

□ 제12조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

④ 제1항에 따라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경우 그 기준이 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3.12>

2. 제1항 각 호의 산업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대분류(제1항제4호의 통신업은 중분류)를 기준으로 적용할 것. 다만, 하나의 사업주가 둘 이상의 산업의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산업을 기준으로 하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같은 경우에는 임금 총액, 매출액 순으로 그 기준을 적용한다.

□ 제19조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대상)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그 사업에서 고용하는 피보험자(일용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가 예고된 자와 경영상 이유에 따른 사업주의 권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고용유지조치"라 한다)를 취하여 그 고용유지조치(제4호의 경우는 제외한다)기간 동안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원금(이하 "고용유지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개정 2008.4.30, 2009.3.12, 2009.5.28>

4.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소분류의 범주에서 다른 소분류의 범주에 속하는 새로운 업종으로 사업을 전환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나 설비를 설치하거나 정비하고, 제20조제2항에 따른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 당시 피보험자의 100분의 50 이상을 새로운 사업에 재배치하는 경우. 다만,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받아 사업전환을 하는 경우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세분류 또는 세세분류의 범주에서 다른 세분류 또는 세세분류의 범주에 속하는 새로운 업종으로 사업을 전환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09.5.28] [노동부령 제325호, 2009.5.28, 일부개정] 노동부 (고용보험 정책팀), 02-2110-7204

- [서식 27] 년 분기 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 장려금 신청서
- [서식 28] 년 중소기업 신규업종진출 계획(변경) 신고서
- [서식 43] 년 월(분기) 재고용장려금 신청서
- [서식 47] 년 분기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신청서(다수고용)
- [서식 56의4] 고용유지자금대부신청서 등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8. 7. 1] [대통령령 제20874호, 2008. 6.25, 일부개정] 노동부 (보험운영지원팀), 02-2110-7231

□ 제4조 (건설업 등의 범위) 이 영에서 규정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다. <개정 2005.12.3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08. 7. 1] [노동부령 제305호, 2008. 7. 1, 일부개정] 노동부 (보험 운영지원팀), 02-2110-7231

[서식 11]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 등 개시필] 통지서

[서식 14] 우선지원 대상기업 신고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8. 1.28] [대통령령 제20565호, 2008. 1.25, 전부개정] 노동부 (고용정책팀), 02-2110-7161

제2조 (건설업의 정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업"이란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설업을 말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규칙

[시행 2008. 2.14] [노동부령 제295호, 2008. 2.14, 일부개정] 노동부 (노사 협력복지팀), 02-2110-7360

[서식 8] 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상황보고서(년도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2009.8.7] [대통령령 제21653호, 2009.7.30, 일부개정] 노동부 (안전보건정책과), 02-6922 -0923

□ 제2조의2 (적용범위 등) ① 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범위 및 해당 사업에 적용되는 법 규정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② 이 영에서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7.30]

[별표 1] <개정 2009.7.30>

법의 일부적용 대상 사업 및 일부적용 규정의 구분표
(제2조의2제1항 관련)

대상 사업	적용 규정
1. 임대업(부동산 제외), 출판업(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제외),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뉴스 제공업 제외), 전문서비스업,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사진 처리업 제외), 광업 지원 서비스업(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 관련 서비스업 제외), 환경 정화 및 복원업, 건물·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 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사업(제3호·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법 제1장, 제23조부터 제28조까지, 제33조, 제34조,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4까지, 제35조,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4까지, 제36조, 제36조의2, 제36조의3, 제37조, 제38조, 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5까지, 제39조, 제39조의2, 제40조, 제41조, 제5장, 제6장, 제6장의2 및 제8장, 제9장

<p>2. 농업, 어업, 봉제의복 제조업, 가발 및 유사 제품 제조업에 해당하는 사업(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p>	<p>법 제1장, 제14조, 제23조부터 제28조까지, 제31조(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에 대한 교육만 해당한다), 제33조, 제34조,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4까지, 제35조,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4까지, 제36조, 제36조의2, 제36조의3, 제37조, 제38조, 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5까지, 제39조, 제39조의2, 제40조, 제41조, 제5장, 제6장, 제6장의2 및 제8장, 제9장</p>
<p>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p> <p>가. 「광산보안법」 적용 사업(광업 중 광물의 채광·채굴·선광 또는 제련 등의 공정으로 한정하며, 제조공정은 제외한다)</p> <p>나. 「원자력법」 적용 사업(발전업 중 원자력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한다)</p> <p>다. 「항공법」 적용 사업(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제조업과 여행알선, 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종 중 항공 관련 사업은 제외한다)</p> <p>라. 「선박안전법」 적용 사업(선박 및 보트 건조업은 제외한다)</p>	<p>법 제1장, 제16조, 제17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보건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제27조, 제31조(보건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4까지, 제35조,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4까지, 제36조, 제36조의2, 제36조의3, 제37조, 제38조, 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5까지, 제40조, 제41조, 제5장, 제6장, 제6장의2, 제8장 및 제9장</p>

<p>4.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업, 연구개발업,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폐수처리업 제외),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지정 폐기물 수집운반업, 지정 폐기물 처리업, 금속 및 비금속 원료재생업 제외)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세탁업 제외),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영화, 비디오물,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녹음시설 운영업, 방송업, 뉴스 제공업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p> <p>가. 최고사용압력이 제공센티미터당 7킬로그램 미만인 증기보일러를 사용하는 사업</p> <p>나. 연간 1백만킬로와트시 미만의 전기를 사용하는 사업</p> <p>다. 전기사용설비의 정격용량의 합계 또는 계약용량이 300킬로와트 미만인 사업</p> <p>라. 연간 석유 250톤 미만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p> <p>마. 월평균 4천세제곱미터 미만의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사업</p> <p>바. 저장능력 250킬로그램 미만의 고압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사업</p>	<p>법 제1장, 제23조부터 제28조까지, 제33조, 제34조,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4까지, 제35조,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4까지, 제36조, 제36조의2, 제36조의3, 제37조, 제38조, 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5까지, 제39조, 제39조의2, 제40조, 제41조, 제5장, 제6장, 제6장의2, 제8장 및 제9장</p>
<p>5. 금융 및 보험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병원 제외), 국제 및 외국기관(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p>	

<p>6. 사무직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사업장이 분리된 경우로서 사무직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포함하며, 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p>	
<p>7.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p>	<p>법 제1장,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 제30조, 제33조, 제34조,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4까지, 제35조,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4까지, 제36조, 제36조의2, 제36조의3, 제37조, 제38조, 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5까지, 제39조, 제39조의2, 제40조, 제41조, 제5장, 제51조, 제52조, 제8장 및 제9장</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09.8.7] [노동부령 제330호, 2009.8.7, 일부개정] 노동부 (안전보건정책과), 02-6922-0923

[서식 3의2] 안전·보건관리대행계약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시행 2009.7.1] [대통령령 제21588호, 2009.6.30, 일부개정] 노동부 (산재보험혁신팀), 02-2110-7222

□ 제2조 (법의 적용 제외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9.8.7] [대통령령 제21654호, 2009.7.30, 일부개정] 노동부 (근로자 건강보호과), 02-6922-0959

[별표 1]

적용 광업의 범위(제2조제1호 관련)

산업표준분류에 따른 광업의 분류	적용 광업
석탄광업	석탄광업(연탄과 그 밖의 응집 연료 생산업은 제외한다)
철광업	철광업
그 밖의 비철금속 광업	텅스텐 광업
금·은 및 백금광업	금·은광업
연·아연광업	연·아연광업
건설용 석재 채굴업	규석채굴광업
그 밖의 비금속광물 광업	흑연광업, 활석광업

비고 : 산업표준분류란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를 말한다.

환경부 소관법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09.7.1] [환경부령 제336호, 2009.6.30, 타법개정]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02-2110-6932

[서식 7] 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변경계획서]

[서식 14] 건설폐기물처리시설설치(변경)승인 신청서

[서식 18] 건설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변경신고]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09.7.14] [환경부령 제342호, 2009.7.14, 일부개정]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과), 02-2110-6783

[별표 3] <개정 2009.7.14>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제5조 관련)

1.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가. 금속의 용융·제련 또는 열처리시설

- 1) 시간당 300킬로와트 이상인 전기아크로(유도로를 포함한다)
- 2) 노상면적이 4.5제곱미터 이상인 반사로

∫

나. 금속의 표면처리시설

- 1)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가) 도금시설

나) 탈지시설

∫

다. 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시설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 가) 증착(蒸着)시설
- 나) 식각(蝕刻)시설

라.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시설

1) 기초화합물 제조시설,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물질 제조시설

가) 용적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 (1) 반응시설
- (2) 흡수시설

∫

마.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시설

1) 라목1)의 각 시설의 규모 이상인 시설

2)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10마력 이상인 다음의 시설

- 가) 혼합시설(소련시설을 포함한다)

∫

바. 석유정제품제조시설

1) 라목1)의 각 시설의 규모 이상인 시설

2)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인 다음의 시설

- 가) 촉매재생시설
- 나) 황 회수장치의 연소시설

사. 코크스 및 관련제품 제조시설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kg 이상인 코크스로

아.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시설

1)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 가) 소성시설(나무를 연료로 사용하는 도자기 제조시설은 제외한다)

∫

자. 가죽·모피 가공시설 및 모피제품 제조시설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가) 석회적시설

나) 건조시설(도장마무리용 시설만 해당한다)

차. 제재 및 목재가공시설

1) 동력이 20마력 이상인 목재가공연마시설(자동대패기·밀링기·샌딩기·그라인딩기·몰더기만 해당한다)

∫

카.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시설과 인쇄 및 각종 기록매체 제조 (복제) 시설

1)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시설

가)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증해(蒸解)시설

∫

타. 담배 제조시설

1)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가) 건조시설

∫

파. 음식료품 제조시설, 단백질 및 배합사료 제조시설(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을 포함한다)

1)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6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5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가) 산·알칼리 처리시설

∫

하. 섬유제품제조시설

1) 동력이 3마력 이상인 선별(혼타)시설

∫

거. 공통시설

1) 화력발전시설, 열병합발전시설, 120킬로와트 이상인 발전용 내연기관(도서지방용·비상용 및 수송용은 제외한다) 및 120킬로와트 이상인 발전용 매립·바이오가스 사용시설

2) 이동식 시설, 가스 또는 경질유[경유·등유·부생연료유1호(등유형)·휘발유·

나프타·정제연료유(「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생처리한 정제연료유만 해당한다)만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설을 제외한 시간당 증발량이 0.5톤 이상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309,500킬로칼로리 이상인 보일러. 다만, 환경부장관이 고체연료 사용금지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에서는 시간당 증발량이 0.2톤 이상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123,800킬로칼로리 이상인 보일러로 한다.

3) 소각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가) 소각능력이 시간당 25킬로그램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폐기물소각시설

(2) 폐수소각시설

나) 소각능력이 시간당 100킬로그램 이상인 폐가스소각시설(별표 16의 기준에 맞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방지시설과 폐기물매립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소각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다) 삭제 <2009.7.14>

4) 고형(固形)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이고 사용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인 시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에 따른 시설만 해당한다)

5) 동력이 10마력 이상인 다음의 시설. 다만, 습식 및 이동식은 제외한다.

가) 연마시설[차목 1)의 목재가공연마시설은 제외한다]

나) 선별시설

다) 탈사시설

라) 탈청시설

6) 동력이 20마력 이상인 분쇄시설. 다만, 습식 및 이동식은 제외한다.

7) 용적이 50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가) 유·무기산 저장시설

나) 유기화합물(원유·휘발유·나프타·알켄족·알킨족·방향족·알데히드류·케톤류가 50퍼센트 이상 함유된 것만 해당한다) 저장시설

다) 고체입자상물질 저장시설

8) 용적이 5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3마력 이상인 도장시설

9) 포장능력이 시간당 100킬로그램 이상인 고체입자상물질 포장시설

10) 시간당 연료사용량이 5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2세제곱미터 이상인 그 밖의 로(爐)

11) 시간당 처리능력이 0.5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과 시간당 처리능력

<p>0.15세제 공급미터 이상인 폐수·폐기물 건조시설</p> <p>가) 폐수·폐기물 증발시설</p> <p>나) 폐수·폐기물 농축시설</p>
<p>12. 배출시설의 분류 및 제조업의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위의 거목의 공통시설 중 5)부터 11)까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광업, 제조업, 자동차수리업, 운수업, 폐기물수집 및 처리업, 폐수처리업의 시설에만 적용한다.</p>

2.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대기오염배출시설

나. 배출시설의 분류

배출시설	대상 배출시설	적용범위
1) 섬유제품 제조시설	<p>가) 동력이 3마력 이상인 선별(혼타)시설</p> <p>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6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5세제공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p> <p>① 다림질(텐트)시설</p> <p>② 코팅시설(실리콘·불소수지 외의 유연제 또는 방수용 수지를 사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p> <p>다) 연료사용량이 일일 2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공미터 이상인 모소시설(모직물만 해당한다)</p> <p>라) 동력이 10마력 이상인 기모(식모)시설</p>	<p>한국표준 산업분류 1700</p>
2) 가죽·모피 가공시설 및 모피제품·신발 제조시설	<p>용적이 3세제공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p> <p>가) 도장시설</p> <p>나) 염색시설</p> <p>다) 접착시설</p> <p>라) 건조시설(유기용제를 사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p>	<p>한국표준 산업분류 1800부터 1900까지</p>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p>가)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시설</p> <p>① 용적이 3세제공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p>	<p>한국표준 산업분류</p>

<p>제조시설과 인쇄 및 각종 기록매체 제조 (복제) 시설</p>	<p>㉠ 증해(蒸解)시설 ㉡ 표백(漂白)시설 ②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인 다음의 시설 ㉢ 석회로시설 ㉣ 가열시설</p>	<p>2100부터 2200까지</p>
<p>4) 코크스 제조시설 및 관련제품 저장시설</p>	<p>나) 인쇄 및 각종 기록매체 제조 (복제)시설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합계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인쇄·건조시설(유기용제류를 사용하는 그라비아 인쇄시설과 이 시설과 연계되어 유기용제류를 사용하는 코팅시설만 해당한다)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인 석탄 코크스 제조시설(코크스로·인출시설·냉각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석탄 장입시설 및 코크스 오븐 가스 방산시설은 제외한다), 석유 코크스 제조시설 및 저장시설</p>	<p>한국표준 산업분류 2310</p>
<p>5) 석유제품 제조 시설</p>	<p>가)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반응(反應)시설 ② 흡수(吸收)시설 ③ 응축시설 ④ 정제(精製)시설[분리(分離)시설, 증류(蒸溜)시설, 추출(抽出)시설 및 여과(濾過)시설을 포함한다] ⑤ 농축(濃縮)시설 ⑥ 표백시설 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용융·용해시설 ② 소성(燒成)시설 ③ 가열시설 ④ 건조시설 ⑤ 회수(回收)시설 ⑥ 연소(燃燒)시설(석유제품의 연소시설, 중질유</p>	<p>한국표준 산업분류 2320</p>

	<p>분해시설의 일산화탄소 소각시설 및 황 회수 장치의 부산물 연소시설만 해당한다)</p> <p>⑦ 촉매재생시설 ⑧ 탈황(脫黃)시설</p>	
<p>6) 기초유기화합물 제조 시설</p>	<p>가)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p> <p>① 반응시설 ② 흡수시설 ③ 응축시설 ④ 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시설을 포함한다) ⑤ 농축시설 ⑥ 표백시설</p> <p>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인 다음의 시설</p> <p>① 용융·용해시설 ② 소성시설 ③ 가열시설 ④ 건조시설 ⑤ 회수시설 ⑥ 연소시설(기초유기화합물의 연소시설, 중질유 분해시설의 일산화탄소 소각시설 및 황 회수 장치의 부산물 연소시설만 해당한다) ⑦ 촉매재생시설 ⑧ 탈황시설</p> <p>다) 50마력 이상인 성형(成形)시설[압출(壓出)방법, 압연(壓延)방법 또는 사출(射出)방법에 의한 시설을 포함한다]</p>	<p>한국표준 산업분류 2411</p>
<p>7) 기초무기화합물 제조 시설</p>	<p>가)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p> <p>① 반응시설 ② 흡수시설 ③ 응축시설 ④ 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시설을 포함한다)</p>	<p>한국표준 산업분류 2412</p>

	<p>⑤ 농축시설</p> <p>⑥ 표백시설</p> <p>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인 다음의 시설</p> <p>① 용융·용해시설</p> <p>② 소성시설</p> <p>③ 가열시설</p> <p>④ 건조시설</p> <p>⑤ 회수시설</p> <p>⑥ 연소시설(기초무기화합물의 연소시설만 해당한다)</p> <p>⑦ 촉매재생시설</p> <p>⑧ 탈황시설</p> <p>다) 염산제조시설 및 폐염산정제시설(염화수소 회수시설을 포함한다)</p> <p>라) 황산제조시설</p> <p>마) 형석의 용융·용해시설 및 소성시설, 불소화합물 제조시설</p> <p>바) 과인산암모늄 제조시설</p> <p>사) 인광석의 용융·용해시설 및 소성시설, 인산제조시설</p>	
<p>8) 무기안료·염료·유연제 제조시설 및 기타 착색제 제조시설</p>	<p>가)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p> <p>① 반응시설</p> <p>② 흡수시설</p> <p>③ 응축시설</p> <p>④ 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시설을 포함한다)</p> <p>⑤ 농축시설</p> <p>⑥ 표백시설</p> <p>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p>	<p>한국표준 산업분류 2413</p>

<p>9) 화학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p>	<p>① 연소시설(무기안료·염료·유연제 연소시설과 그 밖의 착색제 연소시설만 해당한다) ② 용융·용해시설 ③ 소성시설 ④ 가열시설 ⑤ 건조시설 ⑥ 회수시설</p> <p>가)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반응시설 ② 흡수시설 ③ 응축시설 ④ 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시설을 포함한다) ⑤ 농축시설 ⑥ 표백시설</p> <p>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연소시설 ② 용융·용해시설 ③ 소성시설 ④ 가열시설 ⑤ 건조시설 ⑥ 회수시설</p> <p>다)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10마력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혼합시설 ② 반응시설 ③ 정제시설 ④ 농축시설 ⑤ 입자상물질 계량시설</p> <p>라) 질소화합물 및 질산 제조시설</p>	<p>한국표준 산업분류 2414</p>
-----------------------------	--	------------------------------------

<p>10) 의약품 제조 시설</p>	<p>가)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반응시설 ② 흡수시설 ③ 응축시설 ④ 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시설을 포함한다) ⑤ 농축시설 ⑥ 표백시설 <p>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연소시설(의약품의 연소시설만 해당한다) ② 용융·용해시설 ③ 소성시설 ④ 가열시설 ⑤ 건조시설 ⑥ 회수시설 	<p>한국표준 산업분류 2420</p>
<p>11) 기타 화학제품 제조시설</p>	<p>가)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반응시설 ② 흡수시설 ③ 응축시설 ④ 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시설을 포함한다) ⑤ 농축시설 ⑥ 표백시설 <p>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연소시설(화학제품의 연소시설만 해당한다) ② 용융·용해시설 ③ 소성시설 ④ 가열시설 ⑤ 건조시설 ⑥ 회수시설 <p>다) 용적이 30세제곱미터 이상인 탄화(炭火)시설</p>	<p>한국표준 산업분류 2430</p>

<p>12) 화학석유 제조시설</p>	<p>가)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반응시설 ② 흡수시설 ③ 응축시설 ④ 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시설을 포함한다) ⑤ 농축시설 ⑥ 표백시설 <p>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연소시설(화학석유의 연소시설만 해당한다) ② 용융·용해시설 ③ 소성시설 ④ 건조시설 ⑤ 회수시설 ⑥ 가열시설 	<p>한국표준 산업분류 2440</p>
<p>13) 고무 및 고무 제품 제조시설</p>	<p>가)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반응시설 ② 흡수시설 ③ 응축시설 ④ 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시설을 포함한다) ⑤ 농축시설 ⑥ 표백시설 <p>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연소시설(고무제품의 연소시설만 해당한다) ② 용융·용해시설 ③ 소성시설 ④ 가열시설 ⑤ 건조시설 ⑥ 회수시설 	<p>한국표준 산업분류 2510</p>

<p>14) 합성고무, 플라스틱물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시설</p>	<p>다)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10마력 이상인 다음의 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소련시설 ② 분리시설 ③ 정련시설 ④ 접착시설 <p>라)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20마력 이상인 가황시설(열과 압력을 가하여 제품을 성형하는 시설을 포함한다)</p> <p>가)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반응시설 ② 흡수시설 ③ 응축시설 ④ 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시설을 포함한다) ⑤ 농축시설 ⑥ 표백시설 <p>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연소시설(플라스틱제품의 연소시설만 해당한다) ② 용융·용해시설 ③ 소성시설 ④ 가열시설 ⑤ 건조시설 ⑥ 회수시설 <p>다)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10마력 이상인 다음의 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소련(蘇鍊)시설 ② 분리시설 ③ 정련시설 <p>라) 폴리프로필렌 또는 폴리에틸렌 외의 물질을 원료로 사용하는 동력이 250마력 이상인 성형 시설(압출방법, 압연방법 또는 사출방법에 의한 시설을 포함한다)</p>	<p>한국표준 산업분류 2415, 2520</p>
---------------------------------------	---	-------------------------------------

<p>15) 유리 및 유리 제품 제조시설 [재생(再生)용 원료가공시설을 포함한다]</p>	<p>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혼합시설 ② 용융·용해시설 ③ 소성시설 ④ 유리제품 산처리시설(부식시설을 포함한다) ⑤ 입자상물질 계량시설 	<p>한국표준 산업분류 2610</p>
<p>16) 도자기·요업(窯業)제품 제조 시설(재생용 원료가공시설을 포함한다)</p>	<p>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혼합시설 ② 용융·용해시설 ③ 소성시설(예열시설을 포함하되, 나무를 연료로 사용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④ 건조시설 ⑤ 입자상물질 계량시설 	<p>한국표준 산업분류 2620</p>
<p>17)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p>	<p>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혼합시설(습식은 제외한다) ② 소성(燒成)시설(예열시설을 포함한다) ③ 건조시설(시멘트 양생시설은 제외한다) ④ 용융·용해시설 ⑤ 냉각시설 ⑥ 입자상물질 계량시설 	<p>한국표준 산업분류 2630</p>
<p>18)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 시설(아스팔트 제품 제조시설은 제외한다)</p>	<p>가)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혼합시설(습식은 제외한다) ② 용융·용해시설 ③ 소성시설(예열시설을 포함한다) ④ 건조시설 ⑤ 입자상물질 계량시설 <p>나) 석면 및 암면제품 제조시설의 권취(卷取)시설,</p>	<p>한국표준 산업분류 2690</p>

<p>19) 아스팔트제품 제조시설</p>	<p>압착시설, 탈판시설, 방사(紡絲)시설, 집면(集綿)시설, 절단(切斷)시설</p> <p>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p> <p>① 건조시설 ② 선별(選別)시설 ③ 혼합시설 ④ 용융·용해시설</p> <p>가) 금속의 용융·용해 또는 열처리시설</p>	<p>한국표준 산업분류 2692</p> <p>한국표준 산업분류 2700</p>
<p>20) 제1차금속 제조시설</p>	<p>① 시간당 300킬로와트 이상인 전기아크로[유도로 (誘導爐)를 포함한다]</p> <p>② 노상면적이 4.5제곱미터 이상인 반사로(反射爐)</p> <p>③ 1회 주입 연료 및 원료량의 합계가 0.5톤 이상 이거나 풍구(노복)면의 횡단면적이 0.2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p> <p>㉠ 용선로(鎔銑爐) 또는 제선로</p> <p>㉡ 용광로 및 관련시설[원료처리시설, 열풍로 및 용선출탕시설을 포함하되, 고로(高爐) 슬래그 냉각시설은 제외한다]</p> <p>④ 1회 주입 원료량이 0.5톤 이상이거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인 도가니로</p> <p>⑤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p> <p>㉢ 전로</p> <p>㉣ 정련로</p> <p>㉤ 배소로(焙燒爐)</p> <p>㉥ 소결로(燒結爐) 및 관련시설(원료 장입, 소결광 후처리시설을 포함한다)</p> <p>㉦ 환형로(環形爐)</p> <p>㉧ 가열로</p> <p>㉨ 용융·용해로</p> <p>㉩ 열처리로[소둔로(燒鈍爐), 소려로(燒戾爐)를 포함한다]</p>	<p>한국표준 산업분류 2700</p>

<p>21) 조립금속제품 · 기계 · 기기 · 장비 · 운송장비 · 가구 제조시설</p>	<p>㉔ 전해로(電解爐) ㉓ 건조로</p> <p>나) 금속 표면처리시설</p> <p>①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p> <p>㉔ 도금시설 ㉓ 탈지시설 ㉒ 산 · 알칼리 처리시설 ㉑ 화성처리시설</p> <p>②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금속의 표면처리용 건조시설[수세(水洗) 후 건조시설은 제외한다]</p> <p>③ 시간당 처리능력이 0.1톤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주물사(鑄物砂) 처리시설 [저장시설, 혼합시설, 코어(Core) 제조시설 및 건조(乾燥)시설, 주형 장입 및 해체시설, 주물사 재생시설을 포함한다]</p> <p>가) 금속의 용융 · 용해 또는 열처리시설</p> <p>① 시간당 300킬로와트 이상인 전기아크로(유도로를 포함한다)</p> <p>② 노상면적이 4.5제곱미터 이상인 반사로</p> <p>③ 1회 주입 원료량이 0.5톤 이상이거나 연료 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인 도가니로</p> <p>④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p> <p>㉔ 전로 ㉓ 정련로 ㉒ 용융 · 용해로 ㉑ 가열로 ㉐ 열처리로(소둔로 · 소려로를 포함한다) ㉏ 전해로 ㉎ 건조로</p>	<p>한국표준 산업분류 2800 부터 3600까지</p>
---	--	---

f	<p>나) 표면 처리시설</p> <p>①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p> <p>㉠ 도금시설</p> <p>㉡ 탈지시설</p> <p>㉢ 산·알칼리 처리시설</p> <p>㉣ 화성처리시설</p> <p>② 용적이 5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3마력 이상인 도장시설(분무·분체·침지도장시설, 건조시설을 포함한다)</p> <p>③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금속 또는 가구의 표면처리용 건조시설[수세(水洗) 후 건조시설은 제외한다]</p> <p>④ 시간당 처리능력이 0.1톤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주물사 처리시설[저장시설, 혼합시설, 코어(Core) 제조시설 및 건조시설, 주형 장입 및 해체시설, 주물사 재생시설을 포함한다]</p> <p>⑤ 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시설 중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p> <p>㉠ 증착(蒸着)시설</p> <p>㉡ 식각(蝕刻)시설</p>	f
---	---	---

[별표 16] <개정 2008.4.17>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방지시설 설치 등에 관한 기준(제61조 관련)

구 분(업종)	배출시설	기 준
1. 석유정제 및 석유 화학제품 제조업	가. 제조시설	1) 제조공정 중의 펌프·압축기(공기압축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압력완화장치·개방식밸브 및 배관등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누출가능성이 있는 시설에 대하여 매월 액체의 누출 여부를 검사하고, 이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
∫		

비고

7. “석유화학제품제조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석유화학계 기초화합물 제조업, 합성섬유제조업, 합성고무제조업, 합성수지 및 그 밖의 플라스틱물질 제조업을 말한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09.7.1] [환경부령 제336호, 2009.6.30, 타법개정]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02-2110-6825

[별표 4]

폐수배출시설(제6조 관련)

1. 폐수배출시설의 적용기준

가. 폐수배출시설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시설로 한다.

- 1) 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이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의 경우 : 1일 최대 폐수량이 0.01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다만, 출판·인쇄시설, 자동식 사진처리시설, X-Ray시설과 귀금속 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

시설은 모두 폐수배출시설로 하고, 제2호의 2) 금속광업시설과 82) 그 밖의 폐수배출시설은 시간당 최대 폐수량이 0.1세제곱미터 이상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이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서는 1일 최대 폐수량이 0.2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을 폐수배출시설로 한다.

∫

2. 폐수배출시설의 분류

폐수배출시설	표준산업 분류	포함 또는 제외시설
1) 석탄 광업시설	101	○채탄능력 8천 톤/월 미만의 시설은 제외한다.
2) 금속 광업시설(채광된 광물의 가공처리시설)	11	○103 우라늄 및 토륨광업시설을 포함한다.
3) 비금속 광물 광업시설	12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광업 및 채석업 시설을 포함한다. ○연료용 광물 광업시설과 121 토사석 광업(채취·가공)시설로서 폐수를 해당 채취지점 또는 가공시설의 외부로 유출하지 아니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4) 도축, 고기·수산물 가공 및 저장·처리 시설	1511 1512	○1511 각종 육지동물을 자영 또는 임가공 방식으로 도축하여 신선·냉장 또는 냉동상태의 고기를 생산하는 시설로서 가축·가금·조류·고래 및 수렵물 등의 도축시설을 포함한다. ○1512 수산물 가공·처리시설 중 해상에서 작업하는 시설과 별표 1에 따른 기타 수질오염원에 해당되는 시설을 제외한다.
5) 과실·채소 가공 및 저장·처리시설	1513	○단순 물세척만 하거나 수송·보관을 위하여 소금절임만 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6) 동·식물성 유지제조 시설	1514	

7) 낙농제품 및 아이스 크림 제조시설	1520	<p>○조류의 알 세척시설은 제외한다.</p> <p>○두부 및 그 유사식품, 빵, 곡분과자, 국수 및 그 유사식품, 코코아 및 설탕 과자제품, 커피·차류 및 조제 스프, 인삼제품, 건강식품,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식료품제조시설을 포함한다.</p> <p>○국수 및 유사식품제조시설 중 자체 조리 판매용시설은 제외한다.</p> <p>○1541 빵 및 곡분과자 제조시설 중 100 제곱미터 미만의 제과점·방앗간은 제외한다.</p> <p>○증류주·합성주, 발효주, 맥아 및 맥주 제조시설을 포함한다.</p> <p>○직물직조 및 편조시설을 포함한다.</p> <p>○18201, 19101 원모피·원피가공시설을 포함한다.</p>
8) 곡물 가공품 제조시설	1531	
9) 전분 및 당류 제조시설	1532	
10) 사료 제조시설	1533	
11) 설탕 제조시설	1542	
12) 조미료 및 식품첨가물 제조시설	1545	
13) 기타 식품 제조시설	1541 1543 1544 1549	
14) 주정제조 및 주조 시설	1551 1552 1553	
15) 비알콜성 음료 및 얼음 제조시설	1554	
16) 담배 제조시설	16	
17) 제사 및 방적시설	171 172 173	
18) 섬유염색 및 가공시설	174	
19) 기타 섬유제품 제조 시설	179	
20) 가죽·모피가공 및 제품제조시설	182 191 192	
21) 신발 제조시설	19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시설	20	○202 가구제조시설, 코르크 제조시설을 포함한다. ○치과용 X-Ray, 수표촬영용 마이크로 필름 처리시설 및 별표 1에 따른 기타 수질오염원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석유저장, 석유증류(상압·감압), 석유 전화(분해·개질) 석유정제, 윤활유 및 그리스제조,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석유정제 및 석유정제 부산물 재처리 시설을 포함한다. ○석유저장시설은 석유정제·저유소로 한정한다. ○가스회수·탈염·탈황·탈납·스트리핑·스테빌라이즈·개질·접촉분해·수침분해·이성화·알킬화·중합시설을 포함한다. ○에틸렌 및 프로필렌계, 부틸렌계, 부타디엔계, 사이크로펜타디엔계, 이소프렌계, 방향족탄화수소계, 사이크로핵산계, 아세틸렌계,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시설을 포함한다.
23) 펄프·종이 및 종이 제품 제조시설	21	
24) 출판·인쇄·사진처리 및 기록매체 복제시설	22 7491	
25) 코크스 및 관련제품 제조시설	231	
26) 석유정제품 제조시설	232	
27) 석유화학계 기초화합물 제조시설	24111	
28) 석탄화합물 제조시설	24112	
29) 천연수지 및 나무 화합물 제조시설	24113	
30) 기타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	24119	
31) 기초무기화합물 제조 시설	2412	○황산, 질산, 염산, 소다회, 가성소다 및 알칼리, 암모니아 합성 및 유도제품, 무기안료, 금속의 산화물, 수산화물 및

		염, 화학원소 단체물질, 인산, 비금속의 산화물, 황화물, 할로겐화합물,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기초무기화학물질 제조시설을 포함한다.
32) 산업용가스 제조시설	24121	○4020 가스 제조시설을 포함한다.
33) 합성염료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시설	24132	○식물성 염료염기스 제조시설을 포함한다.
34)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	2414	
35) 합성고무 제조시설	24151	○재생섬유소 및 그 유도체 제조시설을 포함한다.
36)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 시설	24152 24153	○재생섬유소 및 그 유도체 제조시설을 포함한다.
37) 의약품 제조시설	242	○의료용 화합물 및 생약제제 제조시설을 포함한다.
38) 살충제 및 기타 농약 제조시설	2431	
39) 도료·인쇄잉크 및 유사제품 제조시설	2432	
40) 계면활성제·치약·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시설	24331 24332	
41) 화장품 제조시설	24333	
42) 표면광택제 및 실내 방향제 제조시설	24334	○왁스 제조시설을 포함한다.
43) 비감광성 기록용 매체, 사진용 화학제품 및 감광재료 제조시설	24341 24342	○32195 전자카드 제조시설을 포함한다.
44) 가공염 및 정제염 제조 시설	24391	
45) 방향유 및 관련제품 제조시설	24392	
46)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시설	24393	

47)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시설	24394	
48) 기타 분류되지 아니한 화학제품 제조시설	24399	
49) 화학섬유 제조시설	244	
50)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시설	25	
51)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시설	261	
52) 도자기 및 기타 요업 제품 제조시설	262	
53)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	263	○ 레미콘차량은 관련 시설로 포함한다. ○ 수증기 양생공정만 있는 경우는 제외 한다.
54) 기타 비금속 광물 제품 제조시설	269	○ 석제품,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비금속 광물 제조시설을 포함한다.
55) 제1차 철강산업시설	271	○ 제철, 제강, 열간압연, 냉간압연, 압출 및 인발제품, 철강선, 강관, 철강압연, 주철강관, 연신 및 제관시설을 포함한다.
56) 합금철 제조시설	27112	
57)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시설	2721	○ 구리·알루미늄·납·아연과 달리 분류 되지 아니하는 비철금속 제련 및 정련 시설을 포함한다.
58) 동 압연·압출 및 연신 제품 제조시설	27221	
59) 알루미늄 압연·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시설	27222	
60) 기타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시설	27229	
61) 기타 제1차 비철금 속 산업시설	2729	

62) 금속주조시설	273	
63) 조립금속제품 제조시설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표준산업분류 28부터 35까지의 제조시설)	28	○ 주된 공정의 일부로서 공통시설의 도금 시설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
64)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시설	313	
65) 축전지 및 1차 전지 제조시설	314	
66) 전구 및 조명장치 제조시설	315	
67) 반도체 및 기타 전자 부품 제조시설	321	○ 32195 전자카드 제조시설은 제외한다.
68) 방송수신기 및 기타 영상·음향기기 제조 시설	323	
69) 기타 제품 제조시설	36	○ 가구, 악기, 운동 및 경기용구, 귀금속 (별표 1 제6호에 해당하는 금은 판매점의 세공시설은 제외한다)·장신구 및 관련 제품,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장난감, 장식품 및 일용품 제조시설을 포함한다.
70) 발전시설	4011	○ 화력발전시설로 한정한다. ○ 10만 킬로와트/시간 미만의 시설을 제외 한다.
71) 수도사업시설	410	○ 역세(逆洗)를 하지 아니하고 물리적으로만 처리하는 수도사업시설은 제외한다. ○ 정수능력 1천 세제곱미터/일 미만의 시설은 제외한다.
72) 먹는샘물 제조시설	410	○ 세병 및 세척시설이 없는 먹는샘물 제조 시설은 제외한다. ○ 취수능력 10세제곱미터/일 미만의 시설은 제외한다.

73) 수산물 판매장(면적 700제곱미터 이상)	51313 52213	○건어물·젓갈류를 판매하는 곳이 별도로 구획된 경우 또는 활어를 판매하는 시설, 수산물소매시설로서 발생하는 폐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74) 병원시설(병상의 수가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규모 이상인 시설)	8511	○수술실·처치실 및 병리실이 없는 병원과 한약을 끓이는 시설이 없는 한방병원은 제외한다.
75) 폐수처리업의 폐수 저장 시설 및 폐기물 처리업의 폐수발생시설	9021 9022	○폐기물처리업의 폐수발생시설의 경우에는 당해 폐기물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6) 세탁시설(용적 2세제곱미터 이상 또는 용수 시간당 1세제곱미터 이상)	9391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세탁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업장 안에 설치한 시설로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아니한 폐수를 오수처리시설로 유입시키는 시설은 제외한다.
77) 산업시설의 폐가스·분진, 세정·응축 시설(분무량 또는 응축량이 시간당 0.01세제곱미터 이상)	공통 시설	○「하수도법」 제2조제9호, 제10호 및 제13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폐기물처리업소의 시설로서 세정·응축수를 당해 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8) 산업시설의 정수시설(정수능력이 1일 당 100세제곱미터 이상)	공통 시설	○역세를 하지 아니하고 물리적으로만 처리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수영장의 정수시설은 제외한다.
79) 이화학 시험시설(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	공통 시설	○「하수도법」 제2조제9호, 제10호 및 제13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

80) 도금시설	공통 시설	<p>시설, 폐기물처리업소의 시설로서 실험 폐수를 당해 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경우와 초등학교·중학교의 실험실은 제외한다.</p> <p>○ 실험생산시설을 포함한다.</p> <p>○ 주공정이 도금공정인 시설을 말하며 다른 공정의 일부로서 28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81) 운수장비 수선 및 세차 또는 세척시설	공통 시설	<p>○ 자동차·건설기계·열차·항공기 등 운송장비를 수선·세차 또는 세척하는 시설을 포함한다.</p> <p>○ 별표 1의 기타 수질오염원과 「하수도법」 제2조제9호, 제10호 및 제13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업소에서 분뇨 및 폐기물 등을 운반하는 차량의 세척 과정 중 배출되는 폐수를 당해 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 건설현장에 한시적으로 설치되는 세륜(洗輪)시설은 제외한다.</p>
82) 제1호부터 제81호까지의 분류에 속하지 아니하는 시설	공통 시설	<p>○ 임가공시설과 37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 시설은 원 생산 제품제조시설 분류와 같이 분류하되 별표 1의 기타 수질오염원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p>

비고 : 포함 또는 제외시설란의 숫자는 특별한 설명이 없는 경우 표준 산업분류에 따른 분류번호를 말한다.

[서식 12]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신청서(신고서)

[서식 14]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증(신고증명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시행 2009.7.7] [대통령령 제21626호, 2009.7.7, 타법개정] 환경부 (자원순환 정책과), 02-2110-6914

[별표 5]

폐기물 발생 억제 지침 준수 의무 대상 배출자의 업종 및 규모(제9조 관련)

1. 업종 : 「통계법」 제22조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중분류업종** 중 다음 각 목의 업종

- 가. 섬유제품 제조업(봉제 의복 제외)
- 나. 코크스(cokes), 석유 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 다.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 라.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마.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바. 제1차 금속산업
- 사. 조립금속제품 제조업(기계와 가구 제외)
- 아.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자. 그 밖의 전기기계 및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 차.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 장비 제조업
- 카. 의료, 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타.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파.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하. 전기·가스업

2. 규 모

- 가. 최근 3년간의 연평균 배출량을 기준으로 지정폐기물을 200톤 이상

배출하는 자

나. 최근 3년간의 연평균 배출량을 기준으로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1천톤 이상 배출하는 자

비 고 : 제2호 나목의 경우 2005년은 2004년 배출량, 2006년은 2004년 및 2005년 배출량의 평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09.5.8] [법률 제9584호, 2009.4.1, 타법개정]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02-2110-6950

□ 제15조의2 (비용기보증금 및 취급수수료) ③ 제1항에 따라 비용기보증금이 가격에 포함된 제품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매업자나 소매업자(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종합소매업·음식료품 및 담배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한정한다)에게 비용기의 보관과 운반에 드는 비용(이하 "취급수수료"라 한다)을 지급하여야 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9.8.7] [대통령령 제21676호, 2009.8.6, 타법개정]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02-2110-6950

□ 제8조 (1회용품 사용 억제 대상업종 및 준수사항) ① 법 제10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음식점, 목욕장, 백화점, 그 밖의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09.6.30, 2009.8.6>

6.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도·소매업(제5호에 따른 업종 및 환경부장관이

1회용품의 사용량, 1회용품 사용의 불가피성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7.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 제18조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포장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다만,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포장재,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가 수입하는 연구용 제품·포장재의 견본품 및 반품되어 폐기된 제품·포장재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제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종이팩[합성수지 또는 알루미늄 박이 첩합(貼合)·도포(塗布)된 종이팩만 해당한다],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용기류, 필름·시트형 포장재 및 트레이(tray)를 포함한다]

다. 세제류(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의 제조 대상이 되는 비누 및 세제를 말한다)

사. 살충·살균제(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가정용 살균 및 살충제 제조업의 제조 대상이 되는 살충제·살균제를 말하며,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은 제외한다)

[별표 1의2] <개정 2009.4.6>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업종(제10조제1항제6호 관련)

업종의 구분	부과대상 업종의 구체적 범위
1.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C13)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C139)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C15)	가. 가죽, 가방 및 유사제품 제조업(C151)
	나. 신발 및 신발부분품 제조업(C152)
3.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C18)	기록매체 복제업(C182)
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C20)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C204)
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C22)	플라스틱제품 제조업(C222)
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C25)	기타 금속가공제품 제조업(C259)
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C26)	가. 반도체 제조업(C261)
	나. 전자부품 제조업(C262)
	다. 컴퓨터 및 주변장치 제조업(C263)
	라. 통신 및 방송 장비 제조업(C264)
	마. 영상 및 음향기기 제조업(C265)
	바. 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 제조업(C266)
8.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C27)	가. 의료용 기기 제조업(C271)
	나.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 기기 제조업; 광학기기 제외(C272)
	다. 안경, 사진장비 및 기타 광학기기 제조업(C273)
	라. 시계 및 시계부품 제조업(C274)
9. 전기장비 제조업(C28)	가.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C283)
	나. 전구 및 조명장치 제조업(C284)
	다. 가정용 기기 제조업(C285)
	라.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C289)
10.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가.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C291)
	나.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C292)
11.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가.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C301)
	나.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2)
	다. 자동차 부품 제조업(C303)

12.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C31)	가. 선박 및 보트 건조업(C311)
	나. 철도장비 제조업(C312)
	다. 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 제조업(C313)
	라. 그외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C319)
13. 가구 제조업(C32)	가구 제조업(C320)
14. 기타 제품 제조업(C33)	가. 귀금속 및 장신용품 제조업(C331)
	나. 악기 제조업(C332)
	다.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C333)
	라. 인형, 장난감 및 오락용품 제조업(C334)
	마. 그외 기타 제품 제조업(C339)

※ 비고

1.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를 따르고, 부과대상 업종의 구체적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소분류를 따른다.
2. 괄호 부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해당 분류번호를 말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09.7.13] [환경부령 제340호, 2009.7.13, 일부개정]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02-2110-6950

[별표 2] <개정 2009.6.30>

업종별 사용억제·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 및 세부 준수사항
(제4조 관련)

업종	준수사항	적용대상 1회용품
f	f	f
4.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도매·소매업(제3호에 따른 업종 및 영 제8조제1항 제6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무상제공금지 나.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1회용 봉투, 쇼핑백(종이로 된 것은 제외한다) 1회용 광고선전물
f	f	f
6.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대행업, 교육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 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 시설 운영업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1회용 광고선전물
f	f	f

※ 비고

- 제3호가목 및 제4호가목의 적용대상 1회용품 중 생선, 정육, 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거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하여 사용하는 합성수지재질의 봉투는 무상제공금지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3호 및 제4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제3호가목 및 제4호가목에 따라 1회용 봉투, 쇼핑백을 유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고객이 사용한 1회용 봉투, 쇼핑백을 되가져올 때 판매금액을 환불하거나, 장바구니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일정금액을 할인하여 주는 방법 또는 사은품을 제공

하는 방법 등으로 혜택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러한 내용의 안내문을 매장 안에 게시하거나 1회용 봉투, 쇼핑백에 인쇄하는 방법으로 고객이 이 사실을 알기 쉽게 하여야 한다.

6. 제4호가목의 경우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인 도매·소매업소는 1회용 봉투, 쇼핑백의 무상제공금지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매장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인 도매·소매업소에 대하여도 1회용 봉투, 쇼핑백의 무상제공금지를 적용할 수 있다.

8. 다음의 사업장에 대하여는 1회용품 사용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가. 매장면적 150제곱미터 미만인 사업장으로서 회수설비를 설치하여 사업장에서 사용된 1회용품을 90퍼센트 이상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사업장

나. 매장면적 150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으로서 환경부장관과 1회용품을 스스로 줄이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는 사업장

기획재정부 소관법령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09.7.31] [기획재정부령 제93호, 2009.7.31, 타법개정]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02-2150-4174

[서식 46] 주식등의취득에의한외국인투자[변경]신고자료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 2009.6.26] [대통령령 제21566호, 2009.6.26, 타법개정]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02-2150-4171

□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0.12.29, 2006.2.9, 2007.2.28, 2008.2.22, 2008.2.29, 2009.2.4>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66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금액은 금융기관의 정기에금이자율을 참작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하 "정기에금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제17조의2(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②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자회사"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3.12.30, 2005.2.19, 2006.2.9, 2008.2.22, 2009.2.4>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일 것

나. 당해 내국법인의 지주회사가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외의 지주회사인 경우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법인

□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2.12.30, 2005.2.19, 2006.2.9, 2007.2.28, 2008.2.22, 2008.2.29, 2009.2.4>

□ 13의2.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음·식료품의 제조업·도매업 또는 소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잉여식품을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제공자 또는 제공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그 기증한 잉여식품의 장부가액(이 경우 그 금액은 제35조제1호에 따른 기부금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제56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자소득금액은 법 제29조제1항제1호의 금액으로 본다. <개정 2007.2.28, 2008.2.22>

1.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일시적으로 자금을 예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금액

□ 제70조(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자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1.12.31, 2005.2.19, 2009.2.4>

1.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이하 "이자등"이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실제로 수입된 날로 하되, 선수입 이자등을 제외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등(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이자등은 제외한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③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입하는 보험료·부금·보증료 또는 수수료(이하 이 항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보험료등이 실제로 수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되, 선수입보험료등을 제외한다.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보험료상당액 등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정형화된 거래방식으로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이하 이 조에서 "증권"이라 한다)을 매매하는 경우 그 수수료의 귀속사업연도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개정 2001.12.31, 2005.2.19, 2009.2.4>

□ 제74조(재고자산의 평가)

② 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자산을 제73조제1호 각목의 자산별로 구분하여 종류별·영업장별로 각각 다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익과 비용을 영업의 종목(한국표준

산업분류에 의한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의한다)별 또는 영업장별로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고, 종목별·영업장별로 제조원가보고서와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80조(합병평가차의상당액의 손금산입)

③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승계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4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승계받은 사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세분류를 기준으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사업"이라 한다)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판정하며, 같은 호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의 자산에 한정하여 제2항을 적용한다. <개정 2009.2.4>

□ 제92조의8(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⑦ 법 제55조의2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업종의 분류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5.12.31]

□ 제111조(원천징수 <개정 2009.2.4>) ① 법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을 말한다. <개정 1999.12.31, 2000.3.28, 2000.12.29, 2001.12.31, 2003.11.29, 2003.12.30, 2005.2.19, 2007.2.28, 2008.2.22, 2008.2.29, 2009.2.4>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의 조합원인 법인(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해당 조합의 규약에 따라 조합원 공동으로 예탁한 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가. 상장유가증권에 대한 투자를 통한 증권시장의 안정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조합

나. 채권시장의 안정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조합

□ 제120조의10(수입금액증가 세액공제) 법 제76조의6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2.4>

2.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할 때 다른 대분류로 구분되는 업종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다른 대분류에 속하는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 제156조(구분경리) ② 법 제113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른 중소기업의 판정은 합병 또는 분할합병 전의 현황에 따르고,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분할법인의 경우 승계된 사업분에 한정한다)의 판정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세분류에 따른다. 이 경우 합병법인 또는 피합병법인이나 분할법인(승계된 사업분에 한정한다)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2 이상의 세세분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중 동일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09.2.4>

□ 제158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② 법 제1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3.12.30, 2005.2.19, 2006.2.9, 2007.2.28, 2008.2.29, 2009.2.4>

2. 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중 작물재배업·축산업·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시행 2009.6.8] [기획재정부령 제84호, 2009.6.8,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02-2150-4171

□ 제26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개정 2000.3.9>)

① 영 제49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1.3.28, 2005.2.28, 2006.3.14, 2008.3.31, 2009.3.30>

2.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묘지 분양업을 포함한다) 및 건물 건설업(자영건설업에 한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부동산 : 취득일 부터 5년

⑤ 영 제49조제1항제1호 각목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개정 2000.3.9, 2000.12.30, 2001.3.28, 2002.3.30, 2003.3.26, 2003.12.15, 2005.2.28, 2006.3.14, 2007.12.5, 2008.3.31, 2009.3.30>

18.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이 신축한 건물로서 사용검사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건물과 그 부속토지

가. 주택신축판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주거용 건물공급업 및 주거용 건물건설업(자영건설업에 한한다)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법인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의 설치자

다.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

제75조 (구분경리의 범위)

② 법률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1항과 제76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6조제6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소분류에 의하되, 소분류에 해당업종이 없는 경우에는 중분류에 의한다.

[별표 6] <개정 2006.8.11>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제15조제3항 관련)

구분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 (하한~상한)	적용대상자산(다음에 규정된 한국표준 산업분류상 해당업종에 사용되는 자산)	
		대 분 류	중 분 류
1	5년 (4년~6년)	농업 및 임업	01. 농업. 다만, 과수의 경우는 구분 5(15년~25년)를 적용한다. 02. 임업, 벌목 및 관련 서비스업
		광업	10. 석탄, 원유 및 우라늄 광업. 다만, 우라늄 및 토륨 광업(103)을 제외한다.
		제조업	22.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복제업 26.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26129.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제조업 중 평판디스플레이용 유리의 제조업과 브라운관용 벌브유리의 제조업에 한한다) 32.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건설업	45. 종합건설업 46. 전문직별 공사업
		도매 및 소매업	50. 자동차판매 및 차량연료 소매업 51. 도매 및 상품중개업 52. 소매업(자동차를 제외한다)

		운수업	60.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철도운송업(601) 및 도시철도 운송업(60211)은 구분 5(15년~25년)를 적용한다.
		금융 및 보험업	65. 금융업 66. 보험 및 연금업 67.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부동산 및 임대업	70. 부동산업 71.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
		사업서비스업	72.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용관련업 73. 연구 및 개발업 74.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75. 사업지원 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76.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80.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85. 보건업 86. 사회복지사업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산업	87. 영화, 방송 및 공연산업 88. 기타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산업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90.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 91. 회원단체 92. 수리업 93. 기타 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95. 가사서비스업
		국제 및 외국기관	99. 국제 및 외국기관
2	8년 (6년~10년)	제조업	18.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23. 코크스, 석유 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24.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다만, 의약품 제조업(242)과 살충제 및 기타 농업 제조업(2431)은 구분 1(4년~6년)을 적용한다.
		숙박 및 음식점업	55.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 창고 및 통신업	63. 여행알선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64. 통신업
3	10년	어업	05. 일반어업, 양식업 및 관련서비스업

	(8년 ~ 12년)	광업	<p>10. 석탄, 원유 및 우라늄 광업. 다만, 우라늄 및 토륨 광업(103)에 한한다.</p> <p>11. 금속광업</p> <p>12. 비금속 광물광업(연료용을 제외한다)</p>
		제조업	<p>15. 음식료품 제조업</p> <p>17. 섬유제품 제조업(봉제의복을 제외한다) 다만, 섬유 염색 및 가공업(1740)은 구분 2(6년 ~ 10년)를 적용한다.</p> <p>19.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업. 다만, 가죽제조업(1910)은 구분2(6년 ~ 10년)를 적용한다.</p> <p>20. 목재 및 나무제품제조업(가구를 제외한다)</p> <p>21.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p> <p>25.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p> <p>26.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평판 디스플레이용 유리의 제조업과 브라운관용 벌브유리의 제조업을 제외한다)</p> <p>27. 제1차 금속산업</p> <p>28. 조립금속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를 제외한다)</p> <p>29.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p> <p>30.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제조업. 다만, 컴퓨터 및 그 주변기기 제조업(3001)은 구분 1(4년 ~ 6년)을 적용한다.</p> <p>31.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p> <p>3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p> <p>3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p> <p>35.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p> <p>36. 가구 및 기타 제품 제조업</p> <p>37.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업</p>
4	12년 (9년 ~ 15년)	제조업	16. 담배제조업
		운수업	<p>61. 수상 운송업. 다만, 외항화물운송업(61112)은 구분 5(15년 ~ 25년)를 적용한다.</p> <p>62. 항공 운송업</p>
5	20년 (15년 ~ 25년)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p>40. 전기, 가스 및 증기업</p> <p>41. 수도사업</p>

비 고

1. 이 표는 별표 3이나 별표 5의 적용을 받는 자산을 제외한 모든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2 이상의 업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이나 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사용비율이 큰 업종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

[서식 3의2] 표준대차대조표(일반법인용)

[서식 70] 자산교환명세서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시행 2008.2.29] [대통령령 제20720호, 2008.2.29, 타법개정]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02-2150-4171

□ 제1조 (재평가자산의 범위) ① 자산재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개정 1998.5.23>

1. 부동산매매업(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부동산분양 공급업 및 건축물자영건설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보유하는 자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09.7.23] [대통령령 제21634호, 2009.7.22, 타법개정]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02-2150-4231

□ 제1조 (재화의 범위)

③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신설 1977.9.12, 1992.12.31, 2003.12.30>

□ 제2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1. 건설업
2. 숙박 및 음식점업
3. 운수업
4. 통신업
5. 금융 및 보험업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다만,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또는 염전 임대업을 제외한다.
7. 사업서비스업
8.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9. 교육서비스업
10.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11.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12.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13. 가사서비스업
14. 국제 및 외국기관의 사업

③ 제1항의 사업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되,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불구하고 동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3.12.30>

□ 제62조 (의제매입세액계산) ④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농·어민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중 작물재배업, 축산업,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거나 어업에 종사하는 개인을 말한다. <신설 2001.12.31, 2003.12.30, 2004.12.31>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 2009.2.4] [대통령령 제21306호, 2009.2.4,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02-2150-4232

□ 제2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등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농민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시설작물재배업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다. <개정 2002.12.30, 2005.2.19, 2006.2.9, 2007.10.23, 2008.2.29, 2008.6.20, 2009.2.4>

1. 개인

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3.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을 기준으로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3분의 2 이상을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하고 있는 법인. 이 경우 사업연도중에 출자지분의 변경으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지분이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3분의 2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당해 출자지분변경일을 기준으로 한다.

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나. 당해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서 상시 근무하고 있는 자

4.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중앙회. 다만, 가축용 사료를 공급 받거나 농작업대행 또는 임대용으로 제3조제3항에 따른 농업기계를 공급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민에게 위탁하여 가축을 사육(이하 이 호에서 "위탁사육"이라 한다)하거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민과 계약을 체결하여 가축 및 사료를 공급하여 가축을 사육(이하 이 호에서 "계약사육"이라 한다)하는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계열화사업자. 다만, 계열화사업자가 위탁 사육 또는 계약사육에 사용하기 위하여 가축용 사료를 공급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축산법」에 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비영리가축검정기관. 다만, 가축검정용 사료를 공급받는 경우에 한한다.

7.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다만, 사립학교의 축산실습농장에 가축용 사료를 공급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법 제105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임업에 종사하는 자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임업 중 영림업 또는 별목업에 종사하는 자(법인을 제외하며, 이하 이 장에서 "임업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08.2.22, 2009.2.4>

④ 법 제105조제1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민"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어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어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07.2.28, 2007.10.31, 2009.2.4>

1. 개인

2. 「수산업법」 제10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어촌계. 다만, 양어용사료를 공급받는 경우에 한한다.

4.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을 기준으로 해당 법인의 총 발행주식 또는 총 출자지분의 3분의 2 이상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하 "어업주업법인"이라 한다). 이 경우 사업연도 중에 출자지분의 변경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지분이 총 발행주식 또는 총 출자지분의 3분의 2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출자지분 변경일을 기준으로 한다.

가.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다만, 제3호 중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제외한다.

나.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서 상시 근무하고 있는 자

□ 제14조 (농·임·어업용 면세석유류 적용대상 농·어민등의 범위 <개정 2002.12.30>) 법 제106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어민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2.12.30, 2005.2.19, 2007.9.20, 2007.10.31, 2008.2.22, 2008.2.29, 2008.6.20, 2009.2.4>

1.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축산업·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 또는 농산물건조장운영업에 종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민"이라 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시설작물재배업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다.

가. 개인

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중앙회

2.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임업 중 영림업 또는 벌목업에 종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임업인"이라 한다)

가. 개인

나.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3.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어업 또는 수산물 자숙(煮熟)·건조장운영업에 종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이하 이 장에서 "어민"이라 한다)

가. 개인

나. 「수산업법」 제10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과 어촌계

라. 어업주업법인

⑤ 법 제106조의2제5항제2호에서 "생산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3.12.30, 2008.2.22>

1. 농·어업생산의 개시를 증명할 수 있는 종묘·치어 등의 구입서류 사본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 중 시설작물재배업 및 어업 중 양식어업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2. 삭제 <2008.2.22>
3. 농·수산물 판매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도매·소매 및 중개업자 등에 대한 판매·출하량 등 판매서류 사본
4. 생산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사실을 기록한 국제청장이 고시하는 생산실적신고서(이하 "생산실적신고서"라 한다)
5. 농·어업용 전기요금청구서 사본

□ 제17조 (면세유 사용실적 확인장치 부착 농기계등 및 서류 등 <개정 2008.2.22>) ① 법 제106조의2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및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2>

⑤ 법 제106조의2제5항제2호에서 "생산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3.12.30, 2008.2.22>

1. 농·어업생산의 개시를 증명할 수 있는 종묘·치어 등의 구입서류 사본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 중 시설작물재배업 및 어업 중 양식어업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관세법 시행규칙

[시행 2009.3.26] [기획재정부령 제61호, 2009.3.26,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02-2150-4411

□ 제59조 (관세분할납부의 요건) ③ 법 제107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분할납부의 승인을 얻을 수 있는 중소기업업체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업체에 한한다. <개정 2002.5.10, 2005.2.1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 2008.12.26] [법률 제9266호, 2008.12.26,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02-2150-4331

□ 제18조 (적용범위) ① 특정외국법인이 조세피난처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소·점포·공장등의 고정된 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시설을 통하여 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특정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2.18, 2006.5.24>

1. 도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임대업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특정외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 <신설 2000.12.29 법6304, 2007.4.2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9.7.23] [대통령령 제21634호, 2009.7.22, 타법개정]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02-2150-4331

제26조 (업종별 배수) 국외지배주주의 출자지분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업의 경우에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6배를 적용한다.

[본조신설 2008.10.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시행 2009.7.31] [대통령령 제21641호, 2009.7.27,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2-2150-4214

□ 제15조 (가업상속) ① 법 제18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전 과세연도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할 때 다음 제1호의 사업은 제외하고 제2호의 사업은 포함한다.

2.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음식점업. 다만,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는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09.6.26] [대통령령 제21565호, 2009.6.26, 타법개정]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2-2150-4151

□ 제17조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 수당 등의 범위)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범위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다.

□ 제29조 (사업의 범위) 법 제1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4.1, 2008.2.29>

□ 제30조 (작물재배업의 범위 <개정 2000.12.29>)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서 "작물재배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작물재배업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2.12.30>

□ 제33조 (사업서비스업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서비스업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연구 및 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8.12.31>

□ 제34조 (부동산매매업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제외한다. <개정 2000.12.29>

□ 제37조 (오락, 문화 및 운동 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 <개정 2008.2.22>) ① 법 제19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오락, 문화 및 운동 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회원단체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회원단체가 특정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내용에 따라 분류한다. <개정 2008.2.22>

□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개정 1997.12.31, 1998.4.1, 1998.12.31, 2002.12.30, 2003.12.30, 2008.2.22, 2008.2.29, 2009.2.4>

10의3.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금융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할인액 실제로 수입된 날

□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⑥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음식료품제조업·도매업 또는 소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잉여식품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잉여식품활용사업자로 등록한 자(이하 이 항에서 "잉여식품활용사업자"라 한다) 또는 잉여식품활용사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그 기증한 잉여식품의 장부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은 제 7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29>

□ 제123조 (중간예납세액의 납부) 법 제6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개정 1995.12.30, 1998.4.1, 2000.12.29, 2007.2.28, 2008.2.29>

1. 이자소득·배당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
2. 사업소득중 속기·타자등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무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제150조의9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

② 법 제87조의6제2항에서 "사업장의 이전 또는 업종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를 때 다른 대분류로 구분되는 업종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다른 대분류에 속하는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8.2.22]

□ 제168조의11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⑦ 법 제104조의3제1항을 적용할 때 업종의 분류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개정 2009.2.4>

[본조신설 2005.12.31]

□ 제214조 (지급명세서 제출의 면제 등 <개정 2008.2.22>)

③ 법 제164조제4항에서 "일정 업종 또는 일정 규모 이하에 해당되는 자"라 함은 직전년도에 제출한 지급명세서의 매수가 50매 미만인 자 또는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매월 말일의 현황에 의한 평균인원수를 말한다)가 10인 이하인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개정 2003.12.30, 2008.2.22>

1.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금융보험업자

□ 제224조 (용역제공자 및 사업장제공자 등의 범위) ①법 제17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1. 대리운전용역
2. 소포배달용역
3. 간병용역
4. 골프장경기보조용역
5. 파출용역
6. 제1호 내지 제5호의 용역과 유사한 용역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 또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대인 서비스와 관련된 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가 직접 제공하는 용역

[별표 3의2] <개정 2008.2.22>

소비자상대업종(제210조의3 관련)

구 분	업 종
소매업	복권소매업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제외한 소매업 전체업종
음식업 및 숙박업	음식업 및 숙박업 전체 업종
제조업	양복점업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도매업	자동차중개업
부동산 및 임대업	부동산중개업, 부동산감정업(감정평가사업을 포함한다), 신부 드레스임대업
운수업	전세버스 운송업, 이사집센터, 장의차량 운영업, 주차장운영업, 일반 및 국제여행사업, 국내여행사업, 매표대리 등 그 밖의 여행지원 서비스업, 여객자동차터미널운영업, 소포송달업
사업서비스업	변호사업, 변리사업, 공증인, 법무사업, 행정사, 노무사업, 공인 회계사업(기장대리를 포함한다), 세무사업(기장대리를 포함한다), 건축설계 및 관련서비스업, 기술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 사업, 기술지도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인물사진촬영업, 사진처리업

교육서비스업	컴퓨터학원, 속기학원 등 그 밖의 사무 관련 교육기관, 운전학원, 자동차정비학원 등 그 밖의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일반입시학원, 언어학원, 방문 및 통신교육학원, 예술학원, 웅변학원 등 그 밖에 분류되지 아니한 교육기관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과, 피부과, 비뇨기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기타의원(마취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병과),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오락, 문화 및 운동 관련 서비스업	영화관운영업, 비디오물 감상실운영업, 독서실운영업, 박물관 운영업, 식물원 및 동물원, 실내경기장운영업, 실외경기장 운영업, 경마 및 경주장운영업, 골프장운영업, 스키장운영업, 체력단련시설운영업, 수영장운영업, 볼링장운영업, 당구장 운영업, 종합오락운동시설 운영업, 골프연습장 등 그 밖의 운동 시설 운영업, 컴퓨터게임방 운영업, 노래방운영업, 오락사격장 등 그 밖의 오락장운영업, 수상오락 서비스업, 유료 낚시터운영 등 그 밖의 수상오락서비스업, 무도장운영업,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기원운영업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건설 및 광업용 기계장비 외의 일반기계수리업,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수리업, 통신장비수리업, 전기 및 정밀기기 수리업, 자동차종합수리업, 자동차전문수리업, 자동차세차업, 이륜자동차수리업, 가전제품수리업, 신발·의복 그 밖의 가정용 직물 제품수리업, 시계·귀금속 및 악기수리업, 보일러수리 등 그 밖의 개인 및 가정용품수리업, 이용업, 미용업, 욕탕업, 마사지업, 비만 관리 등 그 밖의 미용관련 서비스업, 가정용세탁업, 세탁물공급업, 장례식장 및 장의업, 묘지 및 화장업, 예식장업, 점술업, 산후 조리원, 결혼상담소
가사서비스업	놀이방·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라 설치·인가된 경우를 제외한다)

※ 비고 :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위 표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시행 2009.6.8] [기획재정부령 제83호, 2009.6.8,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2-2150-4151

□ 제15조 (교육서비스업의 범위) 영 제35조에서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8.8.11, 1999.5.7, 2005.3.19, 2007.4.17, 2008.4.29>

3.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교육기관중 노인 학교

□ 제16조의2 (점포임차인의 지위양도시 과세제외되는 사업소득의 범위) 영 제41조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개정 1997.4.23, 1998.8.11, 1999.5.7, 2005.3.19, 2007.4.17, 2008.4.29>

1.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서비스업 중 연구 및 개발업, 기타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

2.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교육서비스업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제15조에서 규정하는 사업

3.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중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3의2.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오락, 문화 및 운동 관련 서비스업(자영 예술가 및 기타 경기전문종사업 중 자영경기업에 한한다)

4.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중 회원단체, 기타 서비스업(세탁업, 이용 및 미용업, 장의사 및 묘지관리업, 예식장업, 육탕업을 제외한다)

5.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운수업 중 여행알선 및 운수 관련 서비스업
(수상운송지원서비스업에 한한다)

□ 제51조 (재고자산의 평가등) ①영 제9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류별·사업장별로 재고자산을 평가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종목별(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의한다)·사업장별로 제조원가명세서 또는 매출원가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83조의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영 제168조의14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4.1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09.8.23] [법률 제9708호, 2009.5.22, 타법개정]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02-2150-4131

□ 제2조 (정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신설 2001.12.29, 2007.4.27, 2007.12.31>

□ 제6조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 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1999.8.31, 2000.1.21, 2002.12.11, 2003.12.30, 2004.10.5, 2005.12.31, 2006.12.26, 2006.12.30, 2007.4.11>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개정 2008.12.26>

1. 광업
2. 제조업
3. 건설업
4. 음식점업
5. 출판업
6.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7. 방송업
8. 전기통신업
9.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10. 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은 제외한다)
11. 연구개발업
12. 광고업
13.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14. 전문디자인업

15. 전시 및 행대행업

16.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

□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개정 2000.12.29>) ① 중소기업중 다음 제1호의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제2호에서 규정하는 감면비율을 적용한다. <개정 2002.12.11, 2003.12.30, 2004.12.31, 2005.7.13, 2005.12.31, 2007.4.11, 2007.5.17, 2007.12.31, 2008.12.26>

1. 감면업종

가. 작물재배업

나. 축산업

다. 어업

라. 광업

마. 제조업

바. 하수·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사. 건설업

아. 도매 및 소매업

자.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차. 출판업

카.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녹음업

타. 방송업

파. 전기통신업

하.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거. 정보서비스업

너. 연구개발업

- 더. 광고업
- 러.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 머. 포장 및 충전업
- 버. 전문디자인업
- 서.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J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09.8.7] [대통령령 제21676호, 2009.8.6, 타법개정]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02-2150-4131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⑫ 법 제6조제4항을 적용할 때 동종의 사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따른다. <신설 2009.2.4>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개정 2000.12.29, 2002.12.30>)

①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07.2.28, 2008.2.29>

7.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제30조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⑩ 법 제33조를 적용하는 경우 사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따른다. <신설 2007.2.28>

□ 제30조의2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⑤ 법 제33조의2를 적용하는 경우 사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세분류를 따른다

□ 제43조 (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법 제46조제3항제1호에 따른 업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소분류에 따른다.

□ 제54조 (공장의 범위등 <개정 1999.10.30>) ① 법 제60조·법 제63조 및 법 제63조의2에서 "공장"이라 함은 제조장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동차 정비공장으로서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한다. <개정 1999.10.30, 2000.1.10, 2001.12.31, 2003.12.30, 2008.2.29>

② 법 제60조·법 제63조 및 법 제6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장이전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이전전의 공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후의 공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동일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30, 2000.1.10, 2001.12.31, 2003.12.30>

□ 제54조 (공장의 범위등 <개정 1999.10.30>) ① 법 제60조·법 제63조 및 법 제63조의2에서 "공장"이라 함은 제조장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동차 정비공장으로서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한다. <개정 1999.10.30, 2000.1.10, 2001.12.31, 2003.12.30, 2008.2.29>

② 법 제60조·법 제63조 및 법 제6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장이전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이전전의 공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후의 공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동일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30, 2000.1.10, 2001.12.31, 2003.12.30>

□ 제116조의2 (조세감면의 기준등) ①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연 1회 이상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7조에 따른 외국인 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외의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05.1.5, 2005.2.19, 2008.2.29, 2009.2.4>

1. 산업지원서비스업 : 부가가치가 높고 제조업지원등 다른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효과가 큰 서비스업으로서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2.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 국내에서의 개발수준이 낮거나 개발이 되지 아니한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연구 및 개발업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다음 각호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개정 2005.2.19>

1. 국민경제에 대한 경제적 또는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산업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기술
2. 국내에 최초로 도입된 날(「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당해기술을 수반하는 외국인투자의 신고 또는 기술도입계약의 신고를 한날을 말한다)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술이거나 3년이 경과한 기술로서 이미 도입된 기술보다 경제적 효과 또는 기술적 성능이 뛰어난 기술
3. 당해기술이 소요되는 공정이 주로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기술

⑮ 법 제121조의2제12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사업의 양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식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라 함은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 또는 부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1.12.31>

<17>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6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불 이상(제4호의

경우에는 미화 2백만불 이상이며, 제9호의 경우에는 미화 5백만불 이상을 말한다)으로서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이 조에서 "기업도시개발구역"이라 한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를 말하며, 법 제121조의2제2항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기업도시개발구역 안에 설치된 시설로부터 직접 발생한 소득에 한한다.
<신설 2005.2.19, 2008.2.22, 2009.2.4>

1. 제조업
2. 엔지니어링사업
3. 전기통신업
4. 연구개발업
5. 컴퓨터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 정보서비스업
7.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8.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 가.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 나.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관련 서비스업
 - 다. 공연시설 운영업
 - 라. 녹음시설 운영업
 - 마. 공연단체
 - 바.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 사. 음반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 아.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9. 제116조의2제3항제3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사업
10. 제116조의15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

제117조의3 (사업자에 대한 의료비등 공제)

③ 법 제122조의3제1항제4호 단서에서 "사업장의 이전 또는 업종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장의 면적이 직전 과세기간보다 100분의 50(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
2.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다른 대분류로 구분되는 업종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다른 대분류에 속하는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08.1.14] [재정경제부령 제600호, 2008.1.14,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 02-2150-5173

[별표 2] <개정 2004.6.29>

소매인의 지정기준(제 7 조제 1 항관련)

1. 일반소매인

- 가. 군청, 읍·면사무소가 소재하는 리 또는 동지역의 경우 : 소매인 영업소간에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 나. 가목외의 지역의 경우 : 50호를 단위로 지정하되, 소매인 영업소간에 100 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다만, 차량의 왕래가 빈번한 도로변 또는 독립부락은 50호 미만이라도 담배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매인을 지정할수 있다.

비 고

- 1)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방법 : 특정 영업소의 벽과 다른 영업소의 벽 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 2) 구내소매인의 영업소와 일반소매인의 영업소간에는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3) 구내소매인이 지정된 건축물 등에는 일반소매인을 지정할 수 없다.

2. 구내소매인

가. 지정대상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장소

- 1) 역·공항·버스터미널·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선박 등의 교통수단
- 2)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 3)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 4)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5) 백화점·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
- 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나. 소매인의 수 :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소매인이 지정된 장소가 구내소매인 지정대상이 된 때에는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안에 지정된 일반소매인은 구내소매인으로 본다.

3. 자동판매기운영인

가. 지정기준 : 일반소매인 또는 구매소매인으로 보아 소매인 지정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지정소매인이 지정을 받은 영업소의 내부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지정을 받지 아니한다.

나. 설치의 제한 :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는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4. 임시소매인

가. 지정기준 : 나목의 지정대상에 해당하는 장소중 일반소매인 지정 기준을 충족시키는 곳에 대하여 기한을 정하여 지정함

나. 지정대상

- 1) 출장판매의 실시가 어려운 임시정류장·임시개설장·흥행장·공사장 또는 계절적으로 일시 다중이 집합하는 관광지·유원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장소
- 2) 건축물의 신축·개축으로 인하여 소매인이 6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 그 인근장소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 2009.6.1] [법률 제9741호, 2009.5.27,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02-2156-9713

□ 제24조 (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⑥ 금융위원회는 제1항·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동일계열 금융기관에 대하여 승인을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요건(이하 "초과소유요건"이라 한다)을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해당 금융기관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7.1.26, 2008.2.29, 2009.5.27>

1. 당해 주식소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기 위한 것이 아닐 것

가. 금융업(「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회사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시행 2009.6.1] [대통령령 제21518호, 2009.5.29, 타법개정]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02-2156-9713

□ 제2조 (금융업의 범위 등) ① 「금융지주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제1호에서 "금융업"이라 함은 「통계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을 말한다. <개정 2005.5.26, 2007.10.23>

금융위원회 소관법령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9.6.1] [대통령령 제21518호, 2009.5.29, 타법개정]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과), 02-2156-9853

□ 제4조의2 (허가의 세부요건 등) ①법 제4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정보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인력 및 물적 시설의 세부요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01.6.30, 2006.6.22, 2007.10.23, 2008.2.29, 2008.7.29>

3. 업무의 종류에 신용평가업무가 포함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인력 및 물적 시설을 갖추는 것

가. 공인회계사 5인 및 증권분석·평가업무경력자(제2조제2항제1호 내지 제6호, 제8호, 제10호 내지 제15호, 제17호 내지 제19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3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 법 제9조의2에 따른 신용평가업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외국 신용평가기관에서 증권 분석·평가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5인을 포함한 20인 이상의 상시고용 신용평가전문인력을 갖추는 것. 다만, 분석·평가하려는 증권(제2조제3항에 따른 증권 중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유동화증권이 아닌 것을 말한다)의 발행인들이 영위하고 있는 업종(「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에 해당되는 업종을 말한다)이 3개 이하이거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유동화증권만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공인회계사 5인 및 증권분석·평가업무경력자 5인 이상의 상시고용 신용평가전문인력을 갖추는 것

은행법 시행령

[시행 2009.6.1] [대통령령 제21518호, 2009.5.29, 타법개정] 금융위원회 (은행과), 02-2156-9812

□ 제1조의5 (금융업의 범위 등) ① 법 제2조제1항제9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7.10.23>

1. 통계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이하 "금융업"이라 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시행 2009.4.1] [법률 제9325호, 2008.12.31,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은행과), 02-2156-9816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4.27, 2008.2.29>

14.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다만, 전자화폐를 제외한다.

가. 발행인(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될 것

나.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2개 업종(「통계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상의 업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상일 것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9.7.1] [대통령령 제21611호, 2009.7.1,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02-2156-9878

□ 제6조 (집합투자의 적용배제)

④ 법 제6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9.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등의 사업을 하는 자가 직접 임직원, 영업소, 그 밖에 그 사업을 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필요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등으로 해당 사업을 하여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경우. 다만, 사업자가 해당 사업을 특정하고 그 특정된 사업의 결과를 배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2009. 3.25] [법률 제9554호, 2009. 3.25,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총괄과), 02-2023-4224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2.12.8, 1996.12.30, 1999.2.5, 2001.1.16, 2004.12.31, 2007.4.27, 2007.8.3>

10. "금융업 또는 보험업"이라 함은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을 말한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9.2.4] [대통령령 제20947호, 2008.7.29, 타법개정]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과), 02-2023-4299

□ 제2조 (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목적물) 법 제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목적물을 말한다. <개정 2007.10.23, 2008.7.29>

1. 농·수·축·임·광산물로서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제조업에 의하여 생산되지 아니한 것

행정안전부 소관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09.7.31] [대통령령 제21641호, 2009.7.27,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회계공기업과), 02-2100-3933

□ 제30조 (대부기간)

② 법 제31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연구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용으로 설치되고 사용되는 생산시설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시행 2008.3.4] [행정안전부령 제1호, 2008.3.4, 타법개정] 행정안전부
(회계공기업과), 02-2100-3933

[별표 3] <개정 2003.9.19>

업종별자산의 내용연수표(제19조제1항제1호관련)

구분	내용연수	적용대상자산(다음에 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해당업종에 사용되는 자산)	
		대분류	중분류

1	5년	농업, 수렵업 및 임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 수렵업 및 관련서비스업. 다만, 과수의 경우는 구분 6(20년)을 적용한다. • 임업, 벌목 및 관련서비스업
		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탄광업 • 원유, 천연가스채취 및 관련서비스업
		제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복제업 •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그 밖의 산업용 유리제품 제조업중 액정표시장치의 부품으로 사용되는 정밀평판유리의 제조업에 한한다) •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건설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판매·수리 및 차량연료 소매업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소매 및 소비용품 수산업(자동차를 제외한다)
		운수, 창고 및 통신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운송업. 다만, 도시간 철도운송업 및 구역내 철도운송업은 구분 6(20년)을 적용한다.
		금융 및 보험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업 • 보험 및 연금업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업 •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 •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용관련업 • 연구 및 개발업 • 그 밖의 사업관련 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그 밖의 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 회원단체 • 오락, 문화 및 운동 관련산업 • 그 밖의 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사서비스업
		국제 및 그 밖의 외국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 및 그 밖의 외국기관
2	8년	제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 코크스, 석유 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다만, 살균, 살충제 및 그 밖의 농업용 화학제품 제조업과 의약품, 의료용 화학물 및 생약제 제조업은 구분 1(5년)을 적용한다.
		숙박 및 음식점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 창고 및 통신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행알선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 • 통신업
3	10년	어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어업, 양식업 및 관련서비스업
		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라늄 및 토륨 광업 • 금속광업 • 그 밖의 광업 및 채석업
		제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식료품 제조업 • 섬유제품 제조업. 다만, 섬유표백, 염색 및 가공업은 구분 2(8년)를 적용한다. • 가죽, 가방, 마구류 및 신발제조업. 다만, 가죽제조업은 구분 2(8년)를 적용한다.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를 제외한다)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액정표시장치의 부품으로 사용되는 정밀평판유리의 제조업을 제외한다) • 제 1 차 금속산업 • 조립금속제품 제조업(기계 및 장비를 제외한다) •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사무, 계산 및 회계용 기계 제조업. 다만, 컴퓨터 및 그 주변기기 제조업은 구분 1(5년)을 적용한다. •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전기기계 및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 가구 및 그 밖의 제조업 • 재생재료 가공 처리업
4	12년	제조업 운수, 창고 및 통신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배제조업 • 수상 운송업. 다만, 외항화물운송업은 구분6(20년)을 적용한다. • 항공 운송업
5	15년	수도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하수도사업
6	20년	전기, 가스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 가스 및 증기업. 다만,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가스제조 및 공급업은 구분 3(10년)을 적용한다.

1. 이 내용연수표는 별표 2 및 별표 5의 적용을 받는 자산을 제외한 모든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내용연수가 서로 다른 2 이상의 업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 또는 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사용비율이 큰 업종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08.12.31] [대통령령 제21215호, 2008.12.31, 타법개정] 행정안전부
(지역발전과), 02-2100-3852

[별표 4] <개정 2008.12.17>

공장신설 허용업종(제15조 관련)

분류번호	업종명
10501	액상시유(液狀市乳) 및 그 밖의 낙농제품 제조업
21292	위생용 종이제품 제조업
24119	그 밖의 기초 유기화합물 제조업
24121	산업용 가스 제조업(순도 99.99퍼센트 이상인 고순도의 산업용 가스의 제조업만 해당한다)
24129	그 밖의 기초 무기화합물 제조업
24132	합성염료, 유연제 및 그 밖의 착색제 제조업
24151	합성고무제조업
24211	의약품 화합물 및 향생물질 제조업
2421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4221	의약품 약제품 제조업
24230	의료용품 및 그 밖의 의약 관련 제품 제조업
24312	농약 제조업
24321	일반용 도료 및 관련 제품 제조업
24331	계면활성제 제조업
24342	사진용 화학제품 및 감광재료 제조업
24393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
25292	플라스틱 접착테이프 및 그 밖의 표면도포제품 제조업
26121	유리 섬유 및 광학용 유리 제조업
26129	그 밖의 산업용 유리제품 제조업
26191	가정용 유리제품 제조업

26213	산업용 도자기 제조업
26322	레미콘 제조업
26325	콘크리트 타일, 기와, 벽돌 및 블록 제조업
26911	석재 성형가공품 제조업
26921	아스콘 제조업
26994	탄소섬유 및 그 밖의 탄소제품 제조업
27121	열간 압연 및 압출제품 제조업
27122	냉간 압연 및 압출제품 제조업
27123	철강선 제조업
27191	절단가공 및 표면처리 강재 생산업
27221	동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7222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7290	그 밖의 제1차 비철금속산업
28121	중앙난방보일러 및 방열기 제조업
28911	분말야금제품 제조업
28932	일반철물 제조업
28934	톱 및 호환성 공구 제조업
29111	내연기관 제조업
29119	그 밖의 기관 및 터빈 제조업
29122	액체 펌프 제조업
29123	기체 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
29130	탭, 밸브 및 유사장치 제조업
29141	볼 및 롤러 베어링 제조업
29142	기어 및 동력전달 장치 제조업
29150	산업용 오븐, 노(爐) 및 노용 버너 제조업
29171	산업용 냉장 및 냉동장비 제조업
29172	공기조화장치 제조업
29174	기체 여과기 제조업
29175	액체 여과기 제조업

29193	자동판매기 및 화폐교환기 제조업
29211	전자응용 가공공작기계 제조업
29212	금속 절삭가공기계 제조업
29213	금속 성형기계 제조업
29291	용접기 제조업
29331	토목공사 및 유사용 기계장비 제조업
29340	음·식료품 및 담배가공기계 제조업
29352	산업용 섬유세척, 염색, 정리 및 가공기계 제조업
29359	그 밖의 섬유, 의복 및 가죽생산용 기계 제조업
29360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29392	고무, 화학섬유 및 플라스틱 성형기 제조업
29393	인쇄 및 제책용 기계 제조업
29394	주형 및 금형 제조업
29395	산업용 로봇 제조업
29399	그 밖의 분류 안 된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29511	가정용 전열기기 제조업
29520	가정용 비전기식 조리 및 난방기구 제조업
30011	컴퓨터 제조업
30012	컴퓨터 기억장치 제조업
30013	컴퓨터 입·출력장치 및 그 밖의 주변기기 제조업
30021	복사기 제조업
31101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31103	전자코일, 변성기 및 그 밖의 전자 유도자 제조업
31104	방전램프용 안정기 제조업
31109	그 밖의 발전기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31201	전기회로 개폐, 보호 및 접속장치 제조업
31202	배전반 및 전기자동제어반 제조업
31402	축전지 제조업

31510	전구 및 램프 제조업
31521	일반용 조명장치 제조업
31522	광고용 조명장치 제조업
31992	자석 및 자석제품 제조업
31994	교통통제용 전기장치 제조업
31999	그 밖의 분류 안 된 전기장비 제조업
32111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반도체 제조업
32112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32191	전자관 제조업
32192	인쇄회로판 제조업
32193	전자축전기 제조업
32194	전자저항기 제조업
32195	전자카드 제조업
32196	액정표시장치 제조업
32199	그 밖의 전자부품 제조업
32201	유선통신기기 제조업
32202	방송 및 무선통신기기 제조업
32300	방송수신기 및 그 밖의 영상, 음향기기 제조업
33111	방사선장치 제조업
33112	전기식 진단 및 요법기기(療法器機) 제조업
33192	정형외과용 및 신체보정용 기기 제조업
33199	그 밖의 의료용 기기 제조업
33211	항행용 무선기기 및 측량기구 제조업
33213	전자기 측정, 시험 및 분석기구 제조업
33215	속도계 및 적산계기 제조업
33216	기기용 자동측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
33219	그 밖의 측정, 시험, 항해 및 정밀기기 제조업
33220	산업처리공정 제어장비 제조업

33321	광섬유 및 광학요소 제조업
33322	사진기, 영사기 및 관련 장비 제조업
33329	그 밖의 광학기기 제조업
34110	자동차용 엔진 제조업
34121	승용차 및 그 밖의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
34122	화물자동차 및 그 밖의 특수목적용 자동차 제조업
34201	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
34301	자동차 엔진용 부품 제조업
34302	자동차 차체용 부품 제조업
34309	그 밖의 자동차부품 제조업
35310	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35321	항공기용 엔진 제조업
35322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36129	그 밖의 목재가구 제조업

※ 분류번호는 통계청 고시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지방세법

[시행 2009.5.13] [법률 제9669호, 2009.5.13,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지방세운영과), 02-2100-1775

□ 제197조 (정의) 이 절에서 "농업소득"이라 함은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물(이하 이 절에서 "작물"이라 한다)의 재배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개정 2005.12.31, 2007.4.27>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09.7.31] [대통령령 제21656호, 2009.7.30, 타법개정]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02-2100-1775

□ 제101조 (대도시내 법인 중과세의 예외) ①법 제1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개정 1977.9.20, 1979.12.31, 1981.12.31, 1984.4.6, 1986.12.31,
1987.7.1, 1988.5.7, 1988.12.31, 1990.6.29, 1993.3.6, 1994.12.23, 1994.12.31,
1995.12.30, 1996.12.31, 1997.10.1, 1997.12.31, 1998.6.24, 1998.7.16, 1998.12.31,
1999.12.31, 2000.3.13, 2000.12.29, 2001.12.31, 2002.12.30, 2003.6.30,
2003.11.29, 2003.12.30, 2004.2.25, 2005.1.5, 2005.3.8, 2005.10.7, 2005.12.31,
2006.4.27, 2007.3.27, 2007.9.10, 2007.10.23, 2008.2.29, 2008.9.30, 2009.5.6,
2009.5.21>

28.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
산업분류**에 의한 실내경기장운영업·운동장운영업 및 야구장운영업

지방세법 시행규칙

[시행 2009.5.14] [행정안전부령 제78호, 2009.5.14,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02-2100-1775

[별표 3] <개정 1995.4.28, 1995.12.30, 1996.12.31, 1997.10.4, 1998.2.23,
2002.12.31, 2005.2.1>

공장의 종류(6차코드임에 주의)

1. 음식료품 제조업

- | | |
|-------|---------------------|
| 151 | 고기, 과일, 채소 및 유지 가공업 |
| 1511 | 육지동물고기 가공 및 저장처리업 |
| 15111 | 도축업 |

- 15112 가금 도살업
- 1511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육지동물고기 가공 및 저장처리업
- 1512 수생동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
- 15121 어육 및 유사제품 제조업
- 15122 어묵 및 유사제품 제조업
- 15123 수생동물 훈제·조리 및 유사 조제식품 제조업
- 15124 수생동물 냉동품 제조업
- 15125 수생동물 건제품 제조업
- 15126 수생동물 염장품 제조업
- 1512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수생동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
- 1513 과실, 채소가공 및 저장처리업
- 15131 과실 통조림 및 유사 조제식품 제조업
- 15132 과실 및 채소 절임식품 제조업
- 1513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처리업
- 1514 동식물성 유지 제조업
- 15141 동물성 유지 제조업
- 15142 식물성 유지 제조업
- 15143 식용정제 및 가공유 제조업
- 152 낙농품 제조업
- 1520 낙농품 제조업
- 15201 액상시유 제조업
- 15202 연유, 분유 및 가당유 제조업
- 15203 발효유 제품 제조업
- 15204 아이스크림 및 식용 빙과류 제조업
- 15205 버터 및 치즈제조업
- 1520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낙농품 제조업
- 153 곡물가공품, 전분 및 사료제조업
- 1531 곡물 가공업
- 15311 곡물 도정업
- 15312 곡물 제분업
- 15313 혼합조제분말 제조업
- 15314 곡물조리식품 제조업
- 1531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곡물 가공업

- 1532 전분 및 당류 제조업
- 15321 전분 및 전분제품 제조업
- 15322 당류 제조업
- 1533 조제동물사료 제조업
- 15330 조제동물사료 제조업
- 154 기타 식품 제조업
- 1541 빵 및 곡분과자 제조업
- 15411 빵 제조업
- 15412 떡 제조업
- 15413 곡분과자 제조업
- 1541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빵 및 곡분과자 제조업
- 1542 설탕 제조업
- 15421 원당 제조업
- 15422 설탕 정제업
- 1542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설탕 제조업
- 1543 코코아제품 및 설탕과자 제조업
- 15430 코코아제품 및 설탕과자 제조업
- 1544 국수 및 유사제품 제조업
- 15440 국수 및 유사식품 제조업
- 1545 조미료 및 식품 첨가물 제조업
- 15451 천연조미료 제조업
- 15452 정제 및 발효조미료 제조업
- 15453 혼합 조제조미료 제조업
- 15454 장류 제조업
- 15455 누룩 및 증국 제조업
- 1545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조미료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
- 1548 식료품 임가공업
- 15481 임가공 도정업
- 15482 임가공 제분업
- 15483 임가공 식품 냉동업
- 1548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식료품 임가공업
- 15312 곡물 제분업
- 15313 혼합조제분말 제조업

- 15314 곡물조리식품 제조업
- 1531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곡물 가공업
- 1532 전분 및 당류 제조업
- 15321 전분 및 전분제품 제조업
- 15322 당류 제조업
- 1533 조제동물사료 제조업
- 15330 조제동물사료 제조업
- 154 기타 식품 제조업
- 1541 빵 및 곡분과자 제조업
- 15411 빵 제조업
- 15412 떡 제조업
- 15413 곡분과자 제조업
- 1541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빵 및 곡분과자 제조업
- 1542 설탕 제조업
- 15421 원당 제조업
- 15422 설탕 정제업
- 1542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설탕 제조업
- 1543 코코아제품 및 설탕과자 제조업
- 15430 코코아제품 및 설탕과자 제조업
- 1544 국수 및 유사제품 제조업
- 15440 국수 및 유사식품 제조업
- 1545 조미료 및 식품 첨가물 제조업
- 15451 천연조미료 제조업
- 15452 정제 및 발효조미료 제조업
- 15453 혼합 조제조미료 제조업
- 15454 장류 제조업
- 15455 누룩 및 증국 제조업
- 1545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조미료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
- 1548 식료품 임가공업
- 15481 임가공 도정업
- 15482 임가공 제분업
- 15483 임가공 식품 냉동업
- 1548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식료품 임가공업

- 154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식료품 제조업
- 15491 커피 가공업
- 15492 차류 가공업
- 15493 조제수프 및 균질화 식품 제조업
- 15494 두부 및 유사식품 제조업
- 15495 인삼식품 제조업
- 15496 맥아엑스 및 음료용 조제품 제조업
- 15497 조제건강식품 제조업
- 15498 해조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 1549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기타 식료품 제조업
- 155 음료제조업
- 1551 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
- 15511 주정 제조업
- 15512 소주 제조업
- 15513 과실 및 곡물 증류주 제조업
- 15514 가향조제주 제조업
- 1551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
- 1552 발효주 제조업
- 15521 탁주 및 약주 제조업
- 15522 청주 제조업
- 15523 과실 발효주 제조업
- 1552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발효주 제조업
- 1553 맥아 및 맥주 제조업
- 15531 맥아 제조업
- 15532 맥주 제조업
- 1554 얼음 및 비알콜성 음료 제조업
- 15541 얼음 제조업
- 15542 탄산음료 제조업
- 1554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얼음 및 비알콜성 음료 제조업

2. 담배 제조업

- 160 담배 제조업
- 1600 담배 제조업

- 16001 담배 재건조업
- 16002 담배제품 제조업

3. 섬유제품 제조업

- 171 방적, 직조 및 섬유 가공업
 - 1711 제사, 방적 및 직조업
 - 17111 제사 및 견 방적업
 - 17112 면 및 마 방적업
 - 17113 모 방적업
 - 17114 인조섬유 방적업
 - 17115 연사 제조 및 기타 방적업
 - 17116 견 및 인조섬유직물 직조업
 - 17117 면 및 마직물 직조업
 - 17118 모직물 직조업
 - 1711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직조업
 - 1712 섬유표백, 염색 및 가공업
 - 17121 섬유 및 사 염색 가공업
 - 17122 직물 및 편조원단 염색 가공업
 - 17123 나염 가공업
 - 17124 섬유사 및 직물호부 처리업
 - 1712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섬유표백·염색 및 가공업
- 172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
 - 1721 직품제품 제조업(의복 제외)
 - 17211 포대 제조업
 - 17212 침구 및 관련제품 제조업
 - 17213 자수제품 및 자수용 재료 제조업
 - 17214 캔버스제품 제조업
 - 17215 커튼 및 유사제품 제조업
 - 1721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직물제품 제조업
 - 1722 융단 및 유사 마루덮개 제조업
 - 17220 융단 및 유사 마루덮개 제조업
 - 1723 끈, 로프 및 끈 가공품 제조업
 - 17231 끈 및 로프 제조업

17232	어망 제조업
1723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끈, 로프 및 끈가공품 제조업
172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
17291	세폭직물 제조업
17292	제면업
17293	장식포 및 장식용 섬유제품 제조업
17294	위생용 섬유제품 제조업
17295	펠트 및 부직포 제조업
17296	특수사 및 코드직물 제조업
17297	적층 및 도포직물 제조업
1729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별개 이외의 섬유제품 제조업
173	편조업
1730	편조업
17301	원단 편조업
17302	양말 편조업
17303	내의 편조업
17304	외의 편조업
17305	장갑 편조업
1730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편조업

4. 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181	의복제조업
1811	개인 마춤복 제조업
18111	남자용 개인마춤 양복 제조업
18112	여자용 개인마춤 양장 제조업
18113	개인 마춤한복 제조업
1811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개인마춤복 제조업
1812	기성복 제조업
18121	남자용 기성양복 제조업
18122	여자용 기성양장 제조업
18123	소아용 기성외의 제조업
18124	셔츠, 작업복 및 관련 기성복 제조업
18125	내의 제조업

- 18126 가죽 의복제조업
- 18127 모자 제조업
- 18128 장갑 제조업
- 1812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기성복 제조업
- 182 모피가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 1820 모피가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 18201 원모피 처리업
- 18202 천연모피제품 제조업
- 18203 인조모피 및 그 제품 제조업

5. 가죽, 가방, 마구류 및 신발제조업

- 191 가죽, 가방 및 마구류 제조업
- 1911 가죽 제조업
- 19111 원피 가공업
- 19112 재생 및 특수가공 가죽 제조업
- 1912 가방, 핸드백 및 마구류 제조업
- 19121 가방 제조업
- 19122 핸드백 제조업
- 19123 지갑 제조업
- 19124 보호용 케이스 제조업
- 19125 산업용 가죽제품 제조업
- 1912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가방, 핸드백 및 마구류 제조업
- 192 신발 제조업
- 1920 신발 제조업
- 19201 가죽갑피 신발 제조업
- 19202 직물갑피 신발 제조업
- 19203 플라스틱 및 고무갑피 신발 제조업
- 19204 고무 및 플라스틱 성형신발 제조업
- 19205 경기용 및 기타 특수용 신발 제조업
- 19206 가정용 슬리퍼 및 유사신발 제조업
- 19207 신발 재단물 제조업
- 1920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신발 제조업

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외)

- 201 제재 및 목재 가공업
- 2010 제재 및 목재 가공업
 - 20101 일반 제재업
 - 20102 가공목재 생산업
 - 20103 목재 표면처리 및 방부 처리업
 - 2010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제재 및 목재 가공업
- 202 나무, 콜크 및 조물제품 제조업
 - 2021 단판, 합판 및 관련 나무판 제조업
 - 20211 박판 제조업
 - 20212 합판 및 관련 나무판 제조업
 - 20213 강화 및 재생목재 제조업
 - 2022 건축용 목제품 제조업
 - 20221 셀룰라우드 패널 및 유사패널 제조업
 - 20222 기타 건축용 목제품 제조업
 - 2023 목제 용기 제조업
 - 20231 통 제조업
 - 20232 목제 절목상자 제조업
 - 2023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목제 용기 제조업
 - 2029 기타 나무 및 콜크제품 제조업
 - 20291 콜크 및 콜크제품 제조업
 - 20292 돛자리 및 유사조물제품 제조업
 - 20293 조물세공 용기 및 유사제품 제조업
 - 20294 목재 도구 및 기구 제조업
 - 20295 주방 및 식탁용 목제품 제조업
 - 20296 장식용 목제품 제조업
 - 20297 목함 제조업
 - 20298 고공품 제조업
 - 2029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기타 나무 및 콜크제품 제조업

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210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2101 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업

- 21011 펄프 제조업
- 21012 한지 제조업
- 21013 신문용지 제조업
- 21014 인쇄 및 필지용지 제조업
- 21015 크라프트지 제조업
- 21016 상자용 판지 제조업
- 21017 가공지 제조업
- 2101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업
- 2102 골판지 및 종이용기 제조업
- 21021 골판지 제조업
- 21022 종이가방 및 포대 제조업
- 21023 위생용 종이용기 제조업
- 21024 포장용 판지상자 및 관련품 제조업
- 2102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골판지 및 종이용기 제조업
- 2109 기타 종이 및 판지제품 제조업
- 21091 문구용지 제조업
- 21092 노트, 앨범 및 유사제품 제조업
- 21093 위생용 종이제품 제조업
- 21094 벽지 및 장판지 제조업
- 21095 펄프 성형제품 제조업
- 21096 자동기록 기계용 종이제품 제조업
- 21097 종이라벨 제조업
- 2109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기타 종이 및 판지제품 제조업

8.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221 출판업
- 2211 서적 출판업
- 22110 서적 출판업
- 2212 신문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 22121 신문 발행업
- 22122 정기 간행물 발행업
- 2213 기록매체 출판업
- 22130 기록매체 출판업

2219	기타 출판업
22190	기타 출판업
222	상업인쇄 및 인쇄관련 서비스업
2221	상업 인쇄업
22211	옵셋 인쇄업
22212	경 인쇄업
22213	스크린 인쇄업
22214	그라비아 인쇄업
2221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상업 인쇄업
2222	인쇄관련 서비스업
22221	제 판 및 조판업
22222	제책업
2222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인쇄관련 서비스업
223	기록매체 복제업
2230	기록매체 복제업
22301	오디오 기록매체 복제업
22302	비디오 기록매체 복제업
2230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기록매체 복제업

9. 코크스, 석유 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231	코크스 및 관련제품 제조업
2310	코크스 및 관련제품 제조업
23100	코크스 및 관련제품 제조업
232	석유 정제품 제조업
2321	원유정제 처리업
23210	원유정제 처리업
2322	석유정제 분획물 재처리업
23221	윤활유 및 그리스 제조업
2322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석유정제 분획물 재처리업
233	핵연료 가공업
2330	핵연료 가공업
23300	핵연료 가공업

10.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 241 기초화합물 제조업
- 2411 기초화합물 제조업(비료 제외)
 - 24111 산업용 가스 제조업
 - 24112 기초 무기화합물 제조업
 - 24113 유연제 및 염료 엑스 제조업
 - 24114 염료 및 기타 착색제 제조업
 - 24115 석탄화합물 제조업
 - 24116 석유화학계 기초 유기화합물 제조업
 - 24117 검 및 나무화합물 제조업
 - 2411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기초화합물 제조업
- 2412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
 - 24121 질소질 비료 제조업
 - 24122 인산질 비료 제조업
 - 24123 칼리질 비료 제조업
 - 24124 복합비료 제조업
 - 2412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
- 2413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 24131 합성고무 제조업
 - 24132 합성수지 제조업
 - 24133 재생섬유소 및 그 유도체 제조업
- 242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 2421 살균, 살충제 및 기타 농업용 화학제품 제조업
 - 24211 가정용 살균 및 살충제 제조업
 - 24212 농약 제조업
 - 2422 도료, 인쇄잉크 및 유사제품 제조업
 - 24221 일반용 도료 및 유사제품 제조업
 - 24222 요업용 유약 및 관련제품 제조업
 - 24223 회화용 물감 제조업
 - 24224 인쇄잉크 제조업
 - 24225 도료관련 제품 제조업
 - 24226 옷칠 제조업
 - 2422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도료, 인쇄잉크 및 관련제품 제조업

- 2423 의약품, 의료용 화합물 및 생약제제 제조업
- 24231 의료 화합물 제조업
- 24232 향생 의약품제조업
- 24233 생물화학제제 제조업
- 24234 의약품제제 제조업
- 24235 동물약품제제 제조업
- 2423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의약품, 의료용 화합물 및 생약제제 제조업

- 2424 비누, 세정광택제 및 화장품 제조업
- 24241 유기계면활성제 제조업
- 24242 비누 제조업
- 24243 조제계면활성제 및 합성세제 제조업
- 24244 치약 제조업
- 24245 화장품 제조업
- 24246 왁스 및 표면광택제 제조업
- 2424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비누, 세정광택제 및 화장품 제조업
- 242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화학제품 제조업
- 24291 필기용 잉크 제조업
- 24292 방향유 및 관련제품 제조업
- 24293 접착제 및 젤라킨 제조업
- 24294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 24295 비감광성 기록매체 제조업
- 24296 사진용 화학물 및 감광재료 제조업
- 24297 조제윤활유 및 윤활조제품 제조업
- 24298 가공 및 정제염 제조업
- 2429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 243 화학섬유 제조업
- 2430 화학섬유 제조업
- 24301 합성섬유 제조업
- 24302 재생섬유 제조업

11.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251 고무제품 제조업

- 2511 고무타이어 및 튜브 생산업
- 25111 타이어 및 튜브 제조업
- 25112 타이어 재생업
- 2519 기타 고무제품 제조업
- 25191 산업용 비경화고무제품 제조업
- 25192 비경화 가황고무관, 호스 및 벨트 제조업
- 25193 고무의류 및 기타 위생용 고무제품 제조업
- 25194 경화고무 및 그 제품 제조업
- 2519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기타 고무제품 제조업
- 252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2521 일반성형 제1차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25211 일반 플라스틱 선, 봉, 관 및 호스 제조업
- 25212 일반 플라스틱 필름, 시트 및 판 제조업
- 25213 일반 플라스틱 벽 및 바닥 피복제품 제조업
- 25214 플라스틱 합성피혁 제조업
- 2521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일반 성형 제1차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 2522 플라스틱 발포성형제품 제조업
- 25221 연성 플라스틱 발포성형제품 제조업
- 25222 경성 플라스틱 발포성형제품 제조업
- 2523 강화 플라스틱 성형제품 제조업
- 25231 건축용 강화 플라스틱 성형제품 제조업
- 25232 산업용 강화 플라스틱 성형제품 제조업
- 2523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강화 플라스틱 성형제품 제조업
- 2524 제1차 플라스틱 가공품 제조업
- 25241 플라스틱 표면 가공품 제조업
- 25242 플라스틱 포대 및 유사제품 제조업
- 25243 플라스틱 조립건구 제조업
- 2524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제1차 플라스틱 가공품 제조업
- 2529 기타 플라스틱 일반성형제품 제조업
- 25291 산업용 플라스틱 일반성형제품 제조업
- 25292 가정용 플라스틱 일반성형제품 제조업
- 25293 플라스틱 일반 성형용지 제조업

2529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일반성형제품 제조업

12.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261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업
- 2610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업
 - 26101 제1차 유리 제조업
 - 26102 제1차 유리 가공품 제조업
 - 26103 유리섬유 및 그 제품 제조업
 - 26104 포장용 유리용기 제조업
 - 26105 이화학 및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 제조업
 - 26106 가정용 유리제품 제조업
 - 26107 광학유리 생지 제조업
 - 2610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업
- 269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2691 일반 도자기 제조업
 - 26911 토지 제조업
 - 26912 가정용 도자기 제조업
 - 26913 위생용 도자기 제조업
 - 26914 이화학 및 기타 산업용 도자기 제조업
 - 26915 전기 및 전자용 도자기 제조업
 - 26916 장식용 도자기 제조업
 - 2691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일반 도자기 제조업
 - 2692 내화요업제품 제조업
 - 26921 내화벽돌 및 유사구조용 내화제품 제조업
 - 26922 내화도가니 및 기타 정형내화 제품 제조업
 - 2692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내화요업제품 제조업
 - 2693 구조용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 26931 벽돌 및 유사제품 제조업
 - 26932 기와 및 관련제품 제조업
 - 26933 타일 및 유사제품 제조업
 - 2693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구조용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 2694 시멘트, 석회 및 프라스터 제조업
 - 26941 시멘트 제조업

- 26942 석회 제조업
- 26943 프라스터 제조업
- 2695 콘크리트, 시멘트 및 프라스틱 제조업
- 26951 비내화 모르타르 제조업
- 26952 레미콘 제조업
- 26953 프라스터 제품 제조업
- 26954 건축용 섬유시멘트 제품 제조업
- 26955 콘크리트 타일, 기와, 벽돌 및 블록 제조업
- 26956 기포 콘크리트제품 제조업
- 26957 콘크리트 조립 구조제 및 기타 토목공사용 콘크리트제품 제조업
- 2695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콘크리트, 시멘트 및 프라스터제품 제조업
- 2696 석제품 제조업
- 26961 성형 가공석재 및 석제품 제조업
- 26962 착색 가공석재 생산업
- 269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26991 석면제품 제조업
- 26992 연마재 제조업
- 26993 아스팔트 제품 제조업
- 26994 암면 및 기타 유사제품 제조업
- 26995 비금속광물 분쇄처리업
- 26996 인조흑연 및 기타 탄소제품 제조업
- 26997 인공경량 골재 제조업
- 2699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3. 제1차 금속 산업

- 271 제1차 철강 산업
- 2711 제철 및 제강업
 - 27111 제철업
 - 27112 합금철강 제조업
 - 27113 제강업
 - 2711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제철 및 제강업

2712	철강압연·압출·연신 및 제관업
27121	열간압연·압출 및 인발제품 제조업
27122	냉간압연·압출 및 인발제품 제조업
27123	철강선 제조업
27124	주철강관 제조업
27125	강관 제조업
2712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철강압연·압출·연신 및 제관업
271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철강산업
27191	표면처리강재 제조업
2719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기타 철강산업
272	제1차 비철금속 산업
2721	비철금속 제1차 관련 및 정련업
27211	동 제1차 제련 및 정련업
27212	알루미늄 제1차 제련 및 정련업
27213	연 제1차 제련 및 정련업
27214	아연 제1차 제련 및 정련업
2721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비철금속 제1차 제련 및 정련업
2722	비철금속 제2차 제련 및 정련업
27221	동 제2차 제련 및 정련업
27222	알루미늄 제2차 제련 및 정련업
2722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비철금속 제2차 제련 및 정련업
2723	비철금속 압연 및 압출업
27231	동 압연 및 압출업
27232	알루미늄 압연 및 압출업
2723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비철금속 압연 및 압출업
2728	기타 제1차 비철금속 산업
27290	기타 제1차 비철금속 산업
273	금속주조업
2731	철강주조업
27311	선철주물 주조업
27312	강주물 주조업
27313	가단주철 주물 주조업
2731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철강 주조업

- 2732 비철금속 주조업
- 27321 알루미늄 주물 주조업
- 27322 동 주물 주조업
- 27323 비철금속 가압 주조업
- 2732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비철금속 주조업

14. 조립금속제품 제조업(기계 및 장비 제외)

- 281 구조금속제품, 탱크 및 증기 발생기 제조업
- 2811 구조금속제품 제조업
 - 28111 철문 및 관련제품 제조업
 - 28112 건물 부착용 금속공작물 제조업
 - 28113 구조용 금속판 제품 제조업
 - 28114 금속조립 구조재 제조업
 - 2811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구조금속제품 제조업
- 2812 금속탱크, 저장조 및 유사용기 제조업
 - 28121 중앙난방 보일러 및 방열기 제조업
 - 28122 설치용 금속탱크 및 가공저장용기 제조업
 - 28123 압축가스 운반용기 제조업
- 2813 핵 반응기 및 증기 발생기 제조업
 - 28131 핵 반응기 제조업
 - 28132 증기발생기 제조업
- 289 기타 조립금속제품 제조 및 금속처리업
 - 2891 금속단조, 압형 및 분말야금제품 제조업
 - 28911 분말야금제품 제조업
 - 28912 금속 단조제품 제조업
 - 28913 금속 압형제품 제조업
 - 2892 금속 처리업
 - 28921 금속 열처리업
 - 28922 도금업
 - 28923 도장 및 기타 피막 처리업
 - 28924 금속 용접 처리업
 - 28925 금속용단 및 유사절단 가공업
 - 2892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금속 처리업

- 2893 날붙이, 수공구 및 일반철물 제조업
- 28931 날붙이 제조업
- 28932 금속제 식탁용품 제조업
- 28933 공작용 수공구 제조업
- 28934 농업용 수공구 제조업
- 28935 톱 및 톱날 제조업
- 28936 호환성 공구 제조업
- 28937 일반철물 제조업
- 2893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날붙이, 수공구 및 철물 제조업
- 289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 28991 금속포장용기 제조업
- 28992 수동식 주방기기 및 금속용품 제조업
- 28993 금속위생용품 제조업
- 28994 금속파스너 및 나사제품 제조업
- 28995 철선제품 제조업
- 28996 금고 제조업
- 28997 금속스프링 제조업
- 28998 금속소상 및 장식용품 제조업
- 2899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기타 조립 금속제품 제조업

15.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291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 2911 엔진 및 터빈 제조업(항공기 및 차량용 제외)
- 29111 내연기관 제조업
- 29112 증기 및 가스터빈 제조업
- 2911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기관 및 터빈 제조업
- 2912 펌프, 압축기, 탭 및 밸브 제조업
- 29121 압축식 기관 및 원동기 제조업
- 29122 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
- 29123 탭, 밸브 및 유사장치 제조업
- 2913 베어링, 기어 및 전동요소 제조업
- 29131 베어링 제조업
- 29132 기어 및 전동요소 제조업

- 2914 산업용 오븐, 노 및 노용버너 제조업
- 29141 노용 연소기 및 관련기기 제조업
- 29142 산업용 노 및 오븐 제조업
- 2915 산업용 트럭 및 물품취득장비 제조업
- 29151 산업용 트럭 및 적하기 제조업
- 29152 물품취급 장비 제조업
- 2919 기타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 29191 일반 저울 제조업
- 29192 산업용 냉장 및 냉동장비 제조업
- 29193 공기조절장치 제조업
- 29194 액체 및 기체 여과청정지 제조업
- 29195 소화기 및 분사기 제조업
- 29196 포장기 및 용기 세척기 제조업
- 29197 산업용 송풍기 및 원심 분리기 제조업
- 29198 증류기 및 가스 발생기 제조업
- 2919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기타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 292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 2921 농업용 기계 제조업
- 29210 농업용 기계 제조업
- 2922 가공공작 기계 제조업
- 29221 전자응용 가공공작 기계 제조업
- 29222 금속절삭 가공기계 제조업
- 29223 금속압형 가공기계 제조업
- 29224 목재, 석재 및 유사 경화물질 가공 기계 제조업
- 29225 수지식 동력 구동공구 제조업
- 29226 용접기 제조업
- 2922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가공공작 기계 제조업
- 2923 금속주조 및 압연기 제조업
- 29230 금속주조 및 압연기 제조업
- 2924 건설 및 광산용 기계장비 제조업
- 29241 토목공사 및 유사용 기계장비 제조업
- 29242 광물처리 및 취급장비 제조업
- 2925 음식품 및 담배가공 기계 제조업

- 29251 낙농품 가공 및 처리기 제조업
- 29252 곡물가공 및 처리기 제조업
- 29253 식품 산업용 가열 및 냉각기 제조업
- 2925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음식품 및 담배가공 기계 제조업
- 2926 섬유, 의복 및 가죽산업용 기계 제조업
- 29261 재봉기 제조업
- 29262 산업용 섬유 세척, 염색, 정리 및 가공 기계 제조업
- 2926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섬유, 의복 및 가죽 산업용 기계
제조업
- 2927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
- 29270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
- 2929 기타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 29291 펄프 및 종이 산업용 기계 제조업
- 29292 고무 및 플라스틱 성형기 제조업
- 29293 인쇄 및 제책용 기계 제조업
- 29294 주형 및 금형 제조업
- 29295 유리 및 요업용 기계 제조업
- 29296 산업용 열식 건조기 제조업
- 29297 원심의류 탈수기 제조업
- 29298 산업용 로봇 제조업
- 2929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기타 특수 산업용 기계 제조업
- 293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가정용 기구 제조업
- 2930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가정용 기구 제조업
- 29301 가정용 냉장 및 냉동고 제조업
- 29302 가정용 세탁기 제조업
- 29303 가정용 선풍기 제조업
- 29304 가정용 전열기기 제조업
- 29305 전기 이·미용 기구 제조업
- 29306 가정용 비전기식 조리 및 난방기구 제조업
- 2930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기타 가정용 기구 제조업

16. 사무, 계산 및 회계용 기계 제조업

- 300 사무, 계산 및 회계용 기계 제조업

- 3001 컴퓨터 및 그 주변기기 제조업
 - 30011 컴퓨터 제조업
 - 30012 컴퓨터 기억장치 제조업
 - 30013 컴퓨터 입출력장치 제조업
 - 3001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컴퓨터 및 그 주변기기 제조업
- 3002 기타 사무, 계산 및 회계용 기계 제조업
 - 30021 타자기 제조업
 - 30022 계산기 및 회계기 제조업
 - 30023 복사기 제조업
 - 3002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사무, 계산 및 회계용 기계 제조업

17.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전기기계 및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 311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 3110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 31101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 31102 변압기 제조업
 - 31103 전자 변성기 제조업
 - 31104 방전관용 안정기 제조업
 - 3110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발전기 및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 312 전기공급 및 제어장치 제조업
 - 3120 전기공급 및 제어장치 제조업
 - 31201 배전용 전기회로 개폐, 보호 및 접속장치 제조업
 - 31202 기기용 전기회로 개폐, 보호 및 접속장치 제조업
 - 31203 배전반 및 자동 제어반 제조업
- 313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 3130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 31301 피복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 31302 가공절연코드 및 코드 세트 제조업
- 314 축전지 및 일차전지 제조업
 - 3140 축전지 및 일차전지 제조업
 - 31401 일차전지 제조업
 - 31402 축전지 제조업
- 315 전구 및 조명장치 제조업

- 3150 전구 및 조명장치 제조업
 - 31501 전구 제조업
 - 31502 조명장치 제조업
 - 31503 광고용 램프 및 유사 조명장치 제조업
- 31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전기장비 제조업
 - 3190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전기장비 제조업
 - 31901 내연기관용 전장품 제조업
 - 31902 전기경보 및 신호장치 제조업
 - 31903 자석 및 자석제품 제조업
 - 31904 차량용 조명 및 전기장치 제조업
 - 31905 전기용 탄소제품 및 절연체 제조업
 - 31906 산업용 접시 세척기 제조업
 - 3190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18.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321 전자관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 3210 전자관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 32101 전자관 제조업
 - 32102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 반도체 제조업
 - 32103 인쇄회로판 제조업
 - 32104 축전기 제조업
 - 32105 전자저항기 제조업
 - 32106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 3210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전자관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 322 통신기기 및 방송장비 제조업
 - 3220 통신기기 및 방송장비 제조업
 - 32201 유선통신장치 제조업
 - 32202 무선통신, 방송 및 응용장치 제조업
- 323 방송 수신기 및 기타 영상, 음향 기기 제조업
 - 3230 방송 수신기 및 기타 영상, 음향 기기 제조업
 - 32300 방송 수신기 및 기타 영상, 음향 기기 제조업

19.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331 의료, 측정, 시험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광학기기 제외)
- 3311 의료용 기기 제조업
- 33111 방사선장치 및 전기진단·요법기기 제조업
- 33112 치과용 기기 제조업
- 33113 기계요법 및 관련기구 제조업
- 33114 정형외과용품 제조업
- 33115 의료용 가구 제조업
- 3311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의료용 기기 제조업
- 3312 측정, 시험, 항해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산업기기제어
 장비 제외)
- 33121 항행 및 측량기구 제조업
- 33122 도안 및 제도기구 제조업
- 33123 전자기 측정, 시험 및 분석기구 제조업
- 33124 이화학용 측정 및 분석기구 제조업
- 33125 물질검사 및 시험기구 제조업
- 33126 기체 및 액체용 적산계기 제조업
- 33127 회전속도계 및 유사 계산정치 제조업
- 33128 자동조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
- 3312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측정, 시험, 항해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
- 3313 산업처리 자동측정 및 제어장비 제조업
- 33130 산업처리 자동측정 및 제어장비 제조업
- 332 사진 및 광학기기 제조업
- 3320 사진 및 광학기기 제조업
- 33201 광섬유 및 광학요소 제조업
- 33202 안경 제조업
- 33203 광학현미경 및 망원경 제조업
- 33204 촬영기 및 영사기 제조업
- 33205 사진실 및 영사실 장비 제조업
- 3320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사진 및 광학기기 제조업
- 333 시계 및 시계부품 제조업
- 3330 시계 및 시계부품 제조업
- 33301 시계 제조업

33302 시계부품 제조업

2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341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
- 3410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
 - 34101 자동차용 엔진 제조업
 - 34102 일반 여객 및 화물 자동차 제조업
 - 34103 특장차 제조업
- 342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 3420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 34201 차체 제조업
 - 34202 트레일러 및 세미트레일러 제조업
 - 34203 운송용 컨테이너 제조업
- 343 자동차부품 제조업
 - 3430 자동차부품 제조업
 - 34300 자동차부품 제조업

2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351 선박, 보트 건조 및 수리업
 - 3511 선박 건조 및 수리업
 - 35111 강선 건조 및 수리업
 - 35112 목선 건조 및 수리업
 - 35113 합성수지선 건조 및 수리업
 - 35114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
 - 35115 선박 해체업
 - 3511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선박건조 및 수리업
 - 3512 오락·경기용 보트 건조 및 수리업
 - 35120 오락·경기용 보트 건조 및 수리업
- 352 철도장비 제조업
 - 3520 철도장비 제조업
 - 35201 기관차 및 자주식 철도차량 제조업
 - 35202 비자주식 철도차량 제조업
 - 35203 철도차량 부품 제조업

- 35204 기계식 교통 통제기 제조업
- 3520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철도장비 제조업
- 353 항공기 및 우주선 제조업
- 3530 항공기 및 우주선 제조업
- 35301 항공기 제조업(부품 제외)
- 35302 항공기용 엔진 제조업
- 35303 항공기 부품 및 보조장치 제조업
- 35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운수장비 제조업
- 3591 이륜자동차 제조업
- 35910 이륜자동차 제조업
- 3592 자전거 및 장애자용 차량 제조업
- 35920 자전거 및 장애자용 차량 제조업
- 359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기타 운수장비 제조업
- 35990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기타 운수장비 제조업

22. 가구 및 기타 제조업

- 361 가구 제조업
- 3610 가구 제조업
- 36101 금속가구 제조업
- 36102 일반 목재가구 제조업
- 36103 나전칠기 가구 제조업
- 36104 매트리스 및 내장가구 제조업
- 36105 등가구 제조업
- 36106 플라스틱 가구 제조업
- 3610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가구 제조업
- 369 기타 제조업
- 3691 귀금속 장신구 및 관련제품 제조업
- 36910 귀금속 장신구 및 관련제품 제조업
- 3692 악기 제조업
- 36921 피아노 및 기타 현건반악기 제조업
- 36922 현악기 제조업
- 36923 건반 관악기 제조업
- 36924 관악기 제조업

- 36925 타악기 제조업
- 36926 전자악기 제조업
- 36927 국악기 제조업
- 3692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악기 제조업
- 3693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 36931 체조, 육상 및 어린이 놀이터용 장비 제조업
- 36932 코드 및 필드게임 장비 제조업
- 36933 낚시 및 수렵용구 제조업
- 3693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 3694 인형, 장난감 및 오락용품 제조업
- 36941 인형 제조업
- 36942 승용 장난감 제조업
- 36943 비승용 장난감 제조업
- 36944 비디오 게임기 제조업
- 3694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인형, 장난감 및 오락용품 제조업
- 3695 모조장식품, 장식품 및 교시용 모형 제조업
- 36951 모조장식품 제조업
- 36952 가발 및 유사 장식품 제조업
- 36953 조화 및 모조장식품 제조업
- 36954 표구 및 표구제품 제조업
- 36955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
- 36956 교시용 기기 및 모형 제조업
- 36957 전사 처리업
- 36958 회전목마 및 기타 흥행장용품 제조업
- 3695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모조장식품, 장식품 및 교시용 모형 제조업
- 369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제조업
- 36991 유모차 제조업
- 36992 사무 및 화학용품 제조업
- 36993 우산 및 지팡이 제조업
- 36994 단추 및 파스너 제조업
- 36995 비 및 솔 제조업
- 36996 라이터, 연소물 및 흡연용품 제조업

- 36997 보온용 및 가정용 진공기 제조업
- 36998 리놀륨 및 경표면 마루덮개 제조업
- 3699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기타 제조업

23. 재생재료 가공처리업

- 371 금속 재생재료 가공 처리업
- 3710 금속 재생재료 가공 처리업
- 37101 고철 가공 처리업
- 37102 비철금속 재생재료 가공 처리업
- 372 비금속 재생재료 가공 처리업
- 3720 비금속 재생재료 가공 처리업
- 37201 섬유 및 종이 재생재료 가공 처리업
- 37202 페프라스틱 및 고무재생재료 가공 처리업
- 3720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비금속 재생재료 가공 처리업

24. 전기, 가스 및 증기업

- 401 전기업
- 4010 전기업
- 40101 발전업
- 4010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전기업(변전소 및 송·배전소에 한한다)
- 402 가스제조 및 공급업
- 4020 가스제조 및 공급업
- 40201 가스제조 및 배관공급업
- 4020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가스제조 및 공급업
- 403 증기 및 온수공급업
- 4030 증기 및 온수공급업
- 40300 증기 및 온수공급업

25. 수도사업

- 410 수도사업
- 4100 수도사업
- 41000 수도사업

26. 기타 광업 및 채석업

- 141 토사석 채취업
- 1410 토사석 채취업
 - 14101 건설용 석재 채취업
 - 14102 석고 및 석회석 광업
 - 14103 건설용 쇄석 생산업
 - 14104 건설용 모래 및 자갈 채취업
 - 14105 공업용 모래 채취업
 - 1410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토사석 채취업
- 142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광업 및 채석업
 - 1421 화학 및 비료 원료용 광물 광업
 - 14210 화학 및 비료 원료용 광물 광업
 - 1422 소금 채취업
 - 14220 소금 채취업
 - 142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기타 광업 및 채석업
 - 14291 활석광업
 - 14292 장식 및 구조토 광업
 - 14293 흑연 광업
 - 1429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별개 이외의 광업 및 채석업

27. 자동차 수리업

- 502 자동차 수리업
 - 5020 자동차 수리업
 - 50201 자동차 종합수리업
 - 50202 자동차 전문수리업
 - 50203 자동차 세차업
- 504 이륜자동차 수리업
 - 5040 이륜자동차 수리업
 - 50402 이륜자동차 및 설상용 차량 수리업

28.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1호 내지 제27호의 공장의 종류에서 제외한다. 다만, 가목 내지 마목 및 아목은 법 제112조제3항 및 규칙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종과세할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의 설치가 금지 또는 제한 되지 아니한 지역에 한하여 공장의 종류에서 이를 제외하고, 법 제188조·영 제139조 및 규칙 제78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종과세하는 경우와 법 제2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경우에는 공장의 종류에서 이를 제외하지 아니한다.

가. 가스를 생산하여 도관에 의하여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스업
나. 음용수나 공업용수를 도관에 의하여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수도업

다. 차량 등의 정비 및 수리를 목적으로 하는 정비·수리업

라. 연탄의 제조·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연탄제조업

마. 얼음제조업

바. 인쇄업. 다만,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신문·통신업에 한한다.

사. 도관에 의하여 증기 또는 온수로 난방열을 공급하는 지역난방사업

아. 전기업(변전소 및 송·배전소를 포함한다)

국토해양부 소관법령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09.7.1] [국토해양부령 제147호, 2009.7.1, 타법개정]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 02-2110-6206

[별표 2] <개정 2009.7.1>

내화구조의 적용이 제외되는 공장의 업종(제20조의2 관련)

분류번호	업종
10301	과일 및 채소 절임식품 제조업
10309	그 밖의 과실·채소 가공 및 저장처리업
11201	얼음 제조업
11202	생수 제조업
11209	그 밖의 비알콜음료 제조업
23110	판유리 제조업
23122	판유리 가공품 제조업
23221	구조용 정형내화제품 제조업
23229	그 밖의 내화요업 제조업
23231	점토벽돌, 블록 및 유사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23232	타일 및 유사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23239	그 밖의 구조용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23911	건설용 석제품 제조업
23919	그 밖의 석제품 제조업
24111	제철업
24112	제강업
24113	합금철 제조업

24119	그 밖의 제철 및 제강업
24211	동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4212	알루미늄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4213	연(납) 및 아연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4219	그 밖의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4311	선천주물 주조업
24312	강주물 주조업
24321	알루미늄 주물 주조업
24322	동 주물 주조업
24329	그 밖의 비철금속 주조업
28421	운송장비용 조명장치 제조업
29172	공기조화장치 제조업
30310	자동차 엔진용 부품 제조업
30320	자동차 차체용 부품 제조업
30391	자동차용 동력전달 장치 제조업
30392	자동차용 전기장치 제조업

주: 분류번호는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분류번호를 말한다.

[별표 3] <신설 2005.7.22>

복합자재 사용이 가능한 공장용도(제24조의2제1항관련)

분류번호	업종
15111	도축업
15119	기타 육지동물고기 가공 및 저장처리업
15121	어육 및 유사제품 제조업
15122	수산동물 훈제, 조리 및 유사 조제식품 제조업

15123	수산동물 냉동품 제조업
15124	수산동물 건조 및 염장품 제조업
15125	식용 해조류 가공 및 저장처리업
15129	기타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
15131	과실 및 채소 주스 제조업
15132	과실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5133	김치 및 유사 채소절임식품 제조업
15139	기타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5201	액상 시유 및 기타 낙농제품 제조업
15202	아이스크림 및 기타 식용 빙과류 제조업
15451	천연 및 혼합조제 조미료 제조업
15452	장류 제조업
15453	식초 및 합성조미료 제조업
15454	식품첨가물 제조업
15541	얼음 제조업
15542	생수 생산업
15549	기타 비알콜성 음료 제조업
26111	판유리 제조업
26112	기타 1차 유리 제조업
26121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 제조업
26122	판유리가공품 제조업
26129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 제조업
26191	가정용 유리제품 제조업
26192	포장용 유리용기 제조업
26199	그 외 기타 유리제품 제조업
26211	가정용 및 장식용 도자기 제조업
26212	위생용 도자기 제조업
26213	산업용 도자기 제조업
26219	기타 일반 도자기 제조업
26221	구조용 정형내화제품 제조업
26229	기타 내화요업제품 제조업
26231	점토벽돌, 블록 및 유사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26232	타일 및 유사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26239	기타 구조용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26311	시멘트 제조업
26312	석회 제조업
26313	플라스터 제조업
26321	비내화 모르타르 제조업
26322	레미콘 제조업
26323	플라스터제품 제조업
26324	섬유시멘트 제품 제조업
26325	콘크리트 타일, 기와, 벽돌 및 블록 제조업
26326	콘크리트 관 및 조립구조재 제조업
26329	그 외 기타 콘크리트 제품 제조업
26911	석재 성형 가공품 제조업
26912	착색골재 생산업
27111	제철 및 제강업
27112	합금철 제조업
27119	기타 제철 및 제강업
27211	동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7212	알루미늄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7213	연 및 아연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7219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7311	선철주물 주조업
27312	강주물 주조업
27321	알루미늄주물 주조업
27322	동주물 주조업
27329	기타 비철금속 주조업
28112	구조용 금속판제품 및 금속공작물 제조업
28113	금속 조립구조재 제조업
28119	기타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주 : 분류번호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분류번호를 말한다.

경찰청 소관법령

경비업법 시행령

[시행 2009.7.1] [대통령령 제21590호, 2009.6.30, 타법개정] 경찰청 (생활안전과), 02-3150-1315

□ 제7조의2 (특수경비업자가 할 수 있는 경비관련업) ① 법 제7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관련업"이라 함은 별표 1의2의 규정에 의한 경비관련업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관련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법 또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다. <개정 2007.10.23>

[본조신설 2003.11.11]

[별표 1의2] <신설 2003.11.11>

특수경비업자가 할 수 있는 경비관련업(제7조의2제1항관련)

1. 경비관련업

분 야	해 당 영 업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일반철물 제조업(자물쇠제조 등 경비관련 제조업에 한한다) ○금고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소화기 및 분사기 제조업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전기경보 및 신호장치 제조업

전자부품·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전자카드 제조업 ○유선통신기기 제조업 ○방송 및 무선통신기기 제조업 ○방송수신기 및 기타 영상·음향기기 제조업
전문직별 공사업	○기타 건물건설관련 전문 공사업(소방시설 공사 등 방재 관련 공사에 한한다)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소방시설 공사 등 방재관련 공사에 한한다) ○내부 전기배선 공사업 ○내부 통신배선 공사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통신·경보 및 탐지용 장비도매업
통신업	○전기통신 회선설비 임대업 ○유선전화 및 기타 유선통신업 ○무선전화업 ○무선호출 및 기타 무선통신업 ○별정통신업 ○부가통신업 ○기타 전기통신업
부동산업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 퓨터 운영 관련업	○컴퓨터시스템설계 및 자문업 ○기타 소프트웨어 자문·개발 및 공급업 ○컴퓨터시설 관리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건축설계 및 관련서비스업(소방시설 설계 등 방재 관련 건축설계에 한한다) ○건물 및 토목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소방공사 감리 등 방재관련 서비스업에 한한다)
사업지원서비스업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인력공급업 ○고용알선업 ○탐정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비업 ○경보시스템 서비스업 ○소독 및 구충 서비스업 ○건축물 일반청소업 ○산업시설 청소업
교육서비스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원 훈련기관 ○기타 사무관련 교육기관(경비관련 교육에 한한다)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경비관련 교육에 한한다)
수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타 일반기계 수리업 ○통신장비 수리업 ○전기 및 정밀기기 수리업

2. 그 밖에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관련업에 부수되는 것으로서 경찰청장이 지정·고시한 경비관련업

국가보훈처 소관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9.7.1] [대통령령 제21574호, 2009.6.26, 일부개정] 국가보훈처
(보상급여과), 02-2020-5174

[별표 9] <개정 2004.3.17, 2005.7.27>

고용비율표(제53조제1항 본문관련)

분류번호	업종	대상업체별 고용비율(%)
01	농업, 수렵업 및 관련서비스업	5
02	임업, 벌목 및 관련서비스업	3
05	일반어업, 양식업 및 관련서비스업	3
10	석탄원유 및 우라늄 광업	3
11	금속광업	5
12	비금속 광물광업(연료용 제외)	4
15	음식료품 제조업	5
16	담배 제조업	7
17	섬유제품 제조업(봉제의복 제외)	4
18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3
19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3
20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외)	3
21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4
22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3
23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6
24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6

25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5
26	비금속 광물 제품 제조업	7
27	제1차 금속산업	6
28	조립금속 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3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5
30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제조업	3
31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6
32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4
3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3
3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4
35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4
36	가구 및 기타 제품 제조업	3
37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업	4
40	전기, 가스 및 증기업	8
41	수도사업	8
45	종합건설업	5
46	전문직별 공사업	5
50	자동차 판매 및 차량연료 소매업	5
51	도매 및 상품 중개업	4
52	소매업(자동차 제외)	4
55	숙박 및 음식점업	4
60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3
60100	철도운송업	5
60211	도시철도 운송업	5
61	수상운송업	4
62	항공운송업	5
63	여행알선, 참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5
64	통신업	5

65	금융업	7
66	보험 및 연금업	7
6601	생명보험업	5
66031	손해보험업	5
67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7
70	부동산업	5
702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4
71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	4
72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용 관련업	4
73	연구 및 개발업	5
74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
75	사업지원 서비스업	3
80	교육서비스업	4
85	보건업	4
86	사회복지사업	4
87	영화, 방송 및 공연사업	3
88	기타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산업	5
90	하수처리, 폐기물 처리 및 청소관련 서비스업	3
91	회원단체	5
92	수리업	5
93	기타 서비스업	3
95	가사 서비스업	3

(주)

1. 위 표의 분류번호는 통계청 고시 제2000-1호(2000.1.7)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분류번호임
2. 업종분류는 위 표의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①세세분류(5단위), ②세분류(4단위), ③소분류(3단위), ④중분류(2단위)의 순서로 적용함

농림수산식품부 소관법령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시행령

[시행 2008.2.29] [대통령령 제20677호, 2008.2.29, 타법개정]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자원관 어업정책과), 02-500-2357~2358

□ 제2조 (관련산업의 범위)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기타 어업과 직접 관련된 산업부문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1.11.24, 2005.6.30, 2007.10.4, 2007.10.23>

3. 「통계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어업관련 서비스업

국방부 소관법령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09.7.31] [대통령령 제21641호, 2009.7.27, 일부개정]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기획총괄팀), 02-748-4512

[별표 1] <개정 2008.12.3>

공장신설 허용업종(제13조 관련)

분류번호	업종명
10501	액상시유 및 기타 낙농제품 제조업
17902	위생용 종이제품 제조업
20119	기타 기초 유기화학물질 제조업(석탄화합물 제조는 제외한다)
20121	산업용 가스 제조업(순도 99.99퍼센트 이상인 고순도의 산업용 가스의 제조에 한한다)
20129	기타 기초 무기화학물질 제조업(핵연료 가공은 제외한다)
20132	합성염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업
20301	합성고무 제조업
20412	농약 제조업
20421	일반용 도료 및 관련 제품 제조업
20431	계면활성제 제조업
20491	사진용 화학제품 및 감광재료 제조업
20493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
21101	의약용 화합물 및 향생물질 제조업
2110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1210	완제 의약품 제조업
2130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 제품 제조업

22199	그 외 기타 고무제품 제조업(고무제 자석 제조에 한한다)
22291	플라스틱 적층, 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 제품 제조업
22299	그 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플라스틱제 자석 제조에 한한다)
23121	유리 섬유 및 광학용 유리 제조업
23129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 제조업
23213	산업용 도자기 제조업
23999	그 외 기타 분류되지 않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탄소섬유 및 기타 탄소제품 제조에 한한다)
24121	열간 압연 및 압출제품 제조업
24122	냉간 압연 및 압출제품 제조업
24123	철강선 제조업
24191	도금, 착색 및 기타 표면처리강재 제조업(표면처리강재 제조에 한한다)
24199	그 외 기타 1차 철강 제조업(절단 가공제품 제조에 한한다)
24221	동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4222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4290	기타 1차 비철금속 제조업
25121	중양난방보일러 및 방열기 제조업
25911	분말야금제품 제조업
25934	톱 및 호환성 공구 제조업
25999	그 외 기타 분류되지 않은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금속제 영구 자석 제조에 한한다)
26110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26120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 반도체소자 제조업
26211	액정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업
26219	플라즈마 및 기타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업
26221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26222	전자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26291	전자관 제조업
26292	전자축전기 제조업
26293	전자저항기 제조업
26294	전자카드 제조업

26295	전자코일, 변성기 및 기타 전자유도자 제조업
26296	전자접속카드 제조업
26299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26310	컴퓨터 제조업
26321	기억장치 제조업
26322	컴퓨터 모니터 제조업
26323	컴퓨터 프린터 제조업
26329	기타 주변기기 제조업
26410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중앙통제실 송신용 침입 및 화재경보용 시스템 제조는 제외한다)
26421	방송장비 제조업
26422	이동전화기 제조업
26429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26511	텔레비전 제조업
26519	비디오 및 기타 영상기기 제조업
26521	라디오, 녹음 및 재생기기 제조업
26529	기타 음향기기 제조업
27111	방사선 장치 제조업
27112	전기식 진단 및 요법기기 제조업
27192	정형외과용 및 신체보정용 기기 제조업
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27211	항행용 무선기기 및 측량기구 제조업
27212	전자기측정, 시험 및 분석기구 제조업
27214	속도계 및 적산계기 제조업
27215	기기용 자동측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
27216	산업처리공정 제어장비 제조업
27219	기타 측정, 시험, 항해 및 정밀기기 제조업(도안 및 제도기구 제조는 제외한다)
27321	광학렌즈 및 광학요소 제조업
27322	사진기, 영사기 및 관련장비 제조업
27329	기타 광학기기 제조업
28111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28113	방전램프용 안정기 제조업
28119	기타 발전기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28121	전기회로 개폐, 보호 및 접속장치 제조업
28122	배전반 및 전기자동제어반 제조업
28202	축전지 제조업
28301	광섬유 케이블 제조업
28410	전구 및 램프 제조업
28421	운송장비용 조명장치 제조업
28422	일반용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
28423	전시 및 광고용 조명장치 제조업
28429	기타 조명장치 제조업
28511	주방용 전기기기 제조업
28512	가정용 전기 난방기기 제조업
28519	기타 가정용 전기기기 제조업
28520	가정용 비전기식 조리 및 난방 기구 제조업
28903	교통 신호장치 제조업
28909	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29111	내연기관 제조업
29119	기타 기관 및 터빈 제조업
29120	유압기기 제조업(유압식 액체펌프, 유압식 동력전달장치, 기압식 기체펌프 및 압축기 제조에 한한다)
29131	액체펌프 제조업
29132	기체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
29133	탭, 밸브 및 유사장치 제조업
29141	볼베어링 및 롤러베어링 제조업
29142	기어 및 동력전달 장치 제조업
29150	산업용 오븐, 노(爐) 및 노용 버너 제조업
29171	산업용 냉장 및 냉동장비 제조업
29172	공기조화장치 제조업
29174	기체 여과기 제조업
29175	액체 여과기 제조업
29180	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복사기 제조에 한한다)

29193	자동판매기 및 화폐교환기 제조업
29199	그 외 기타 일반목적용 기계 제조업(용접기 제조에 한한다)
29221	전자응용 공작기계 제조업
29222	금속 절삭기계 제조업
29223	금속 성형기계 제조업
29241	토목공사 및 유사용 기계장비 제조업
29250	음·식료품 및 담배가공기계 제조업
29261	산업용 섬유세척, 염색, 정리 및 가공기계 제조업
29269	기타 섬유, 의복 및 가죽 가공기계 제조업
29271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29272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
29280	산업용 로봇 제조업
29292	고무, 화학섬유 및 플라스틱 성형기 제조업
29293	인쇄 및 제책용 기계 제조업
29294	주형 및 금형 제조업
29299	그 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30110	자동차용 엔진 제조업
30121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
30122	화물자동차 및 특수목적용 자동차 제조업
30201	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
30310	자동차 엔진용 부품 제조업
30320	자동차 차체용 부품 제조업
30391	자동차용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30399	그 외 기타 자동차 부품 제조업
31310	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유도 및 탄도 미사일 제조는 제외한다)
31321	항공기용 엔진 제조업
31322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 비고: 분류번호는 통계청 고시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교육과학기술부 소관법령

학교기업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08.2.29] [대통령령 제20740호, 2008.2.29, 타법개정] 교육과학기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2-2100-6155~6158

□ 제11조 (학교기업의 사업종목) ① 산업교육기관이 학교기업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는 사업종목은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사업종목중 별표에 규정된 사업종목을 제외한 사업종목으로 한다. 이 경우 사업종목은 당해 산업교육기관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특정의 학부·학과 또는 교육과정의 교육·연구 활동과 연계성을 가져야 한다. <개정 2007.10.23>

[별표] <개정 2008.2.22>

학교기업 사업종목으로 금지되는 업종(제11조제1항 관련)

표준산업분류	업종분류	학교기업 금지업종(세세분류기준)	업종수(개)
52	소매업	52222 담배 소매업 52820 노점 및 유사 이동 판매업	2개
55	숙박 및 음식업종	55112 여관업 55231 일반유흥 주점업 55232 무도유흥 주점업 55233 간이 주점업	4개
70	부동산업	70119 기타 부동산 임대업 70121 주거용 건물 공급업	4개

		70122 비 주거용 건물 공급업 70129 기타 부동산 공급업	
88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88313 경마 및 경주장 운영업 88911 전자게임장 운영업 88912 컴퓨터게임방 운영업 88913 노래방 운영업 88991 무도장 운영업 88995 도박장 운영업	6개
93	기 타 서 비 스	93121 욕탕업 93122 마사지업 93992 점술업	3개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약관

<공급약관세칙>

□ 제38조 【계약종별의 구분】

② 계약종별의 결정은 다음의 일반원칙에 의한다.

2. 한국표준산업분류별 계약종별 적용 기준

가. 표준산업 대분류 “A(농업, 임업 및 어업)”의 경우

(1) 약관 제60조(농사용전력)의 적용대상으로 명시된 고객에게는 농사용 전력을 적용한다.

(2) 농사용전력을 적용대상이 아닌 산업에는 산업용전력을 적용한다.

나. 표준산업 대분류 “B(광업), C(제조업)”에는 산업용전력을 적용한다.

다만, 약관 별표2의 단서조항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표준산업 대분류 “D~U”에는 일반용전력을 적용한다.

3.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상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에 해당하는 사업체의 본사건물 등과 같이 재화생산활동을 하는 장소와 구분하여 별개 전기사용계약단위로 공급하는 고객의 계약종별은 동 사업체의 산업분류에 관계없이 해당 계약 단위의 경제활동에 따라 결정한다.

<별표2 산업용전력 적용대상 기준표>

분류	중분류	세분류
광업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광업(05)	석탄광업,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업
	금속광업(06)	철 광업, 우라늄 및 토륨 광업, 기타 비철금속 광업

	비금속광물광업 (연료용제외)(07)	석회석 및 점토 광업, 석재·쇄석 및 모래자갈 채취업, 화학용 및 비료원료용 광물 광업, 소금 채취업, 그 외 기타 비금속광물 광업
	광업지원 서비스업(08)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관련 서비스업, 기타 광업지원 서비스업
제 조 업	식료품 제조업(10)	도축업, 육류 가공 및 저장처리업,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 수산식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 과실·채소가공 및 저장처리업, 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 제조업, 낙농제품 및 식용빙과류 제조업, 곡물가공품 제조업, 전분제품 및 당류 제조업, 떡·빵 및 과자류 제조업, 설탕제조업, 면류·마카로니 및 유사식품 제조업, 조미료 및 식품 첨가물 제조업, 기타 식료품 제조업,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11)	발효주제조업, 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 비알콜성음료 및 얼음 제조업
	담배 제조업(12)	담배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13)	방직 및 가공사 제조업, 직물 직조업, 직물 제품 제조업, 편조원단 제조업, 편조제품 제조업, 섬유제품 염색·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카펫·마루덮개 및 유사 제품제조업, 끈·로프·망 및 끈가공품 제조업, 그외 기타 섬유 제품 제조업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4)	정장 제조업, 내의 및 잠옷 제조업, 한복 제조업, 기타 봉제의복 제조업, 모피가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편조의복 제조업, 편조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기타 의복액세서리 제조업
	가죽, 가방 및 신 발 제조업(15)	원피가공 및 가죽 제조업, 핸드백·가방 및 기타 보호용케이스 제조업, 기타 가죽제품 제조업, 신발제조업, 신발부분품 제조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	제재 및 목재가공업, 박판·합판 및 강화 목제품 제조업, 건축용 나무제품 제조업, 목재

외)(16)	상자·드럼 및 적재판 제조업, 기타 나무제품 제조업, 코르크 및 조물제품 제조업
펄프, 종이 및 종이 제품제조업(17)	펄프 제조업, 종이 및 판지 제조업, 골판지 및 골판지상자 제조업, 종이포대·판지상자 및 종이용기 제조업, 기타 종이 및 판지제품 제조업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18)	인쇄업, 인쇄관련 산업, 기록매체 복제업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19)	코크스 및 연탄 제조업, 원유정제 처리업,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화학물질 및 화학 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20)	기초 유기화학물질 제조업, 기초 무기화학 물질 제조업, 무기안료·염료·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업,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살충제 및 기타 농약 제조업, 잉크·페인트·코팅제 및 유사제품 제조업, 세제·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 그외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화학섬유 제조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21)	기초 의약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완제 의약품 제조업, 한의약품 제조업,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품관련 제품 제조업
고무 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22)	고무타이어 및 튜브생산업, 기타 고무제품 제조업, 제1차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건축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포장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기계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플라스틱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 기타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23)	판유리 제조업, 산업용 유리 및 판유리가공품 제조업, 기타 유리제품 제조업, 일반도자기 제조업, 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구조용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시멘트·석회 및 플라스터 제조업, 콘크리트·시멘트 및 플라스터 제품 제조업, 석제품 제조업, 그외 기타 비금속광물 제품 제조업

1차 금속제조업(24)	<p>제철·제강 및 합금철 제조업, 철강압연·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철강관 제조업, 기타 1차 철강 제조업, 비철금속 제련·정련 및 합금 제조업, 비철금속 압연·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기타 1차 비철금속 제조업, 철강주조업, 비철금속 주조업</p>
금속가공 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제외)(25)	<p>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금속탱크·저장조 및 유사용기 제조업, 핵 반응기 및 증기 발생기 제조업,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 금속 단조·압형 및 분말야금 제품 제조업, 금속 열처리·도금 및 기타 금속가공업, 날붙이·수공구 및 일반철물 제조업, 금속파스너·스프링 및 금속선 가공제품 제조업, 그외 기타 금속가공제품 제조업</p>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6)	<p>전사집적회로 제조업, 다이오드·트랜지스터 및 유사 반도체소자 제조업,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업, 인쇄회로기판 및 전자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컴퓨터 제조업, 기억장치 및 주변기기 제조업,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 방송 및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텔레비전·비디오 및 기타 영상기기 제조업, 오디오·스피커 및 기타 음향기기 제조업, 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 제조업</p>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27)	<p>방사선장치 및 전기식 진단기기 제조업,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측정·시험·항해·제어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 안경제조업, 광학기기 및 사진장비 제조업, 시계 및 시계부품 제조업</p>
전기장비 제조업(28)	<p>전동기·발전기 및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전기공급 및 전기제어장치 제조업, 일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전구 및 램프 제조업, 조명장치 제조업, 가정용 전기기기 제조업, 가정용 비전기식 조리 및 난방기구 제조업,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p>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9)	내연기관 및 터빈 제조업(항공기용 및 차량용 제외), 유압기기 제조업, 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탭·밸브 및 유사장치 제조 포함), 베어링·기어 및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산업용 오븐·노 및 노용버너 제조업, 산업용 트럭·승강기 및 물품취급장비 제조업, 냉각·공기조화·여과·증류 및 가스발생기 제조업, 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 기타 일반목적용 기계 제조업, 농업 및 임업용 기계 제조업, 가공공작기계 제조업, 금속주조 및 기타 야금용 기계 제조업, 건설 및 광산용 기계장비 제조업, 음·식료품 및 담배 가공기계 제조업, 섬유·의복 및 가죽가공 기계 제조업, 반도체 및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 산업용 로봇 제조업,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	자동차용 엔진 제조업, 자동차 제조업,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자동차 엔진용부품 제조업, 자동차 차체용부품 제조업, 기타 자동차부품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31)	선박건조업, 오락 및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 철도장비 제조업, 항공기·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항공기용 엔진 및 부품 제조업, 전투용 차량 제조업, 모터사이클 제조업, 그외 기타 분류 안된 운송장비 제조업
	가구 제조업(32)	침대 및 내장가구 제조업, 목재가구 제조업, 기타 가구 제조업
	기타제품 제조업(33)	귀금속 및 관련제품 제조업, 모조 귀금속 및 모조 장신용품 제조업, 악기 제조업,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인형·장난감 및 오락용품 제조업,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 사무 및 회화용품 제조업, 가발·장식용품 및 교시용 모형 제조업, 그외 기타 분류 안된 제품 제조업
기 타 사 업		생 략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산업용전력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1. 채취, 채굴, 제조 등의 활동을 하는 장소와 수급계약단위가 다른사무실 등에 사용하는 전력
2. 건물내에 매장을 갖추고 의복·신발을 맞춤 제조 판매하는 양복(양장)점, 양화점 또는 생활용품 맞춤 제조 (편조를 포함합니다) 판매하는 산업활동
3. 인쇄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신문·잡지·서적 등을 발행 또는 출판 하는 산업 활동
4. 건물내에 매장을 갖추고 개인별 주문에 의하거나 개인소유 매장에서 판매 하기 위하여 주방용의 날붙이, 농업용 수공구, 문·창·대문·셔터·선반 등의 건물 부착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

<주>

1. 이 산업용전력 적용대상 기준표는 통계법과 동시행령에 의하여 통계청에서 작성 고시(제2007-53호 '07.12.28) 제9차 개정 **한국표준산업분류** (2008년 2월 1일 시행)를 기준으로 당사에서 작성한 것입니다.
2. 광업, 제조업 및 기타사업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붙임

STATISTICS



한국표준산업분류 준용 서식 모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서식 2] 입지기준확인신청서
- [서식 2의2] 사업계획서
- [서식 3] 입지기준확인 통보
- [서식 5] 공장 신설 등 신청서
- [서식 5의2] 공장설립승인사항 등 변경신고서
- [서식 6] 공장 설립 대 장
- [서식 7]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
- [서식 7의2] 사업개시 신고(확인)서
- [서식 8] 공장등록대장
- [서식 8의2] 공장등록증명(신청)서
- [서식 9] 공장등록 등 신청서
- [서식 13] 공장이전(예정) 확인(신청)서
- [서식 14] 기존공장폐쇄확인(신청)서
- [서식 17] 유치지역지정 등 신청서
- [서식 19] 아파트형공장 신설 등 신청서
- [서식 20] 아파트형공장설립완료(변경완료) 신고서
- [서식 20의2] 아파트형공장등록대장
- [서식 25] 산업단지입주신청(확인)서
- [서식 28] 처분신고서
- [서식 29] 임대신고서
- [서식 34] 매각협의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서식 1] 자유무역지역 입주(변경)허가 신청서
- [서식 2] 입주확인서(발급신청서)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규칙

- [서식 1] 신주 등의 취득 또는 출연 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서
- [서식 3] 기존주식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 투자
- [서식 5]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신고서
- [서식 12] 공장 신설 등 신청서
- [서식 13] 사업계획 승인 등 신청서
- [서식 16의6] 공장등록 신청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 [서식 1] 공동사업계획승인신청서
- [서식 2] 공동공장설립승인신청서

[서식 4] 공장증설신고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 [서식 27] 년 분기 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 장려금 신청서
- [서식 28] 년 중소기업 신규업종진출 계획(변경) 신고서
- [서식 43] 년 월(분기) 재고용장려금 신청서
- [서식 47] 년 분기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신청서(다수고용)
- [서식 56의4] 고용유지자금대부신청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서식 11]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 등 개시필] 통지서
- [서식 14] 우선지원 대상기업 신고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규칙

- [서식 8] 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상황보고서(년도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서식 3의2] 안전·보건관리대행계약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서식 7] 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변경계획서]
- [서식 14] 건설폐기물처리시설설치(변경)승인 신청서
- [서식 18] 건설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변경신고]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서식 12]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신청서(신고서)
- [서식 14]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증(신고증명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서식 46] 주식등의취득에의한외국인투자[변경]신고자료

법인세법 시행규칙

- [서식 3의2] 표준대차대조표[일반법인용]
- [서식 70] 자산교환명세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 2] 입지기준확인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09.8.7>

(앞 쪽)

입지기준확인 신청서					처리기간 10 일
신 청 인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전화번호:)			
공장설립예정지					
사 업 개 요	공장의 업 종	업 종 명		주 생산 품	
		분 류 번 호		사 용 원 료	
	공장의 규 모	부 지 면 적			
		건 축 면 적	제조시설:	m ²	부대시설:
기 업 규 모	<input type="checkbox"/> 대기업 <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장의 입지기준에 대한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수수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수수료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서식 2의2] 사업계획서 <개정 2009.8.7> (1쪽)

[별지 제2호의2서식] <개정 2009.8.7>

(1쪽)

사 업 계 획 서

20

회 사 명:

대 표 자:

(인)

1. 사업개요

업 체 현 황	회 사	명 칭					
		주 소					
		전 화 번 호		팩 스 번 호			
		홈페이지 주소		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	성 명		이 메 일 주 소			
		주 소		생 년 월 일			
전 화 번 호			팩 스 번 호				
생 산 제 품 현 황	업종(5단위)						
	생 산 품 명						
	주 원 자 재						
공 장 현 황	공장주소						
	형 태		분양() 경매() 양도() 양수() 임대()				
	용도지역						
	지 목						
	공 장 건 설 계 획		사 업 자 등 록 번 호				
			착 공 예 정 일				
			준공예정일 또는 준공일				
			사 업 시 작 일				
	공 장 의 규 모		종 업 원 수	국 내	남		
				국 외	남		
			용 지 면 적				m ²
			건 축 면 적		제조시설:		m ²
					부대시설:		m ²
			건 축 면 적 / 용 지 면 적				
	기 준 공 장 면 적 율				%		
	건 폐 율				%		
	용 적 율				%		
투 자 규 모		계		백만원			
		자 기 자 본		백만원			
		타 인 자 본		백만원			
		외 국 인 투 자 금 액		천불			
		외 국 인 투 자 비 율		%			
공 장 보 유 구 분	자가()	공 장 설 립 형 태	신규 건립 입주()	공 장 규 모	대()		
	임차()		기존 건물 입주()		중()		
					소()		

※ 기재요령

1.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5단위)까지 기입합니다.
2. 건축면적은 공장설립일부터 4년 이내의 건설계획분을 포함하여 기재합니다.
3. 공장규모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분류에 따라 적습니다.

[서식 3] 입지기준확인 통보 <개정 2009.8.7>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09.8.7>

행정기관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입지기준 확인 통보

귀하가 . . . 신청한 공장입지기준확인 신청에 대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불임과 같이 확인합니다.

1.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2. 공장설립예정부지

주 소	지 목	지적면적(m ²)

3. 사업개요

공장의 업종	업 종 명		
	분 류 번 호	기준공장면적률	%
	주 생산 품	사 용 원 료	
공장의 규모	부 지 면 적	m ²	
	건 축 면 적	제조시설: m ²	부대시설: m ²
배출시설 설치계획 및 배출량	대 기		
	수 질		
	소음·진동		

4. 기 타

이 확인서는 현재의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관계 법령 및 용도 지역·지구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확인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에 관한 사항은 ()의 소관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불임: 입지기준 세부명세서 1부. 끝.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송()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서식 5] 공장 신설 등 신청서 <개정 2009.8.7>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09.8.7>

(앞 쪽)

<input type="checkbox"/> 신 설 <input type="checkbox"/> 중 설 공장 <input type="checkbox"/> 이 전 <input type="checkbox"/> 업 종 변경 <input type="checkbox"/> 제조시설설치		<input type="checkbox"/> 승 인 <input type="checkbox"/> 변경승인	(신청서)		처리기간 뒤쪽 참조
신청인	회 사 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법인 소재지)				
승인 신청 사항	공장 소재지			지 목	
	용 도 지 역			생 산 품	
	업 종	분류번호	첨단 업종 (적용 범위)		
	공사착공 예정일	공사준공 예정일			
	규 모	공장부지면적(m ²)	제조시설면적(m ²)	부대시설면적(m ²)	종업원 수
기존 공장	회 사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 종	분류번호			
	규 모	공장부지면적(m ²)	제조시설면적(m ²)	부대시설면적(m ²)	
변경승인신청사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제2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7조, 제8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수수료 없음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년 월 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장설립등 및 변경을 승인합니다. ※ 의제처리되는 인·허가 및 승인조건: 별지 참조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서식 6] 공장 설립 대장 <개정 2003.7.19>

순번	회사명	대표자성명	공장소재지	용도지역	공장의업종	분류번호	생산품	공장부지면적(m ²)	공장건축면적(m ²)	~

364mm×257mm(보존용지(1종)70g/m²)

[서식 7]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 <개정 2009.8.7>

[별지 제7호 서식] <개정 2009.8.7>

(앞 쪽)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		처리기간	
		3일(법 제16조제6항에 따른 등록등을 의제처리하는 경우에는 20일)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대표자주소 (법인소재지)			
공장설립 승인번호	발행일		
업종 (분류번호)	기준공장 면적률	%	
공장가동 개시예정일	공장준공일		
규모	공장부지 면적(m ²)	제조시설 면적(m ²)	부대시설 면적(m ²)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장설립등의 완료를 신고합니다. <div style="text-align: right;">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div> 시장·군수·구청장·관리기관 귀하			
※ 구비서류 이하 생략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서식 7의2] 사업개시 신고(확인)서 <개정 2009.8.7>

[별지 제7호의2 서식] <개정 2009.8.7>

(앞 쪽)

사업개시 신고(확인)서				처리기간 3일
회 사 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			
대 표 자 성 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 주 소 (법 인 소 재 지)			종업원수	
입 주(변 경)계 약 일				
업 종 (분 류 번 호)	인·허가 등록 (등 록 번 호)			
사 업 개 시(예 정)일		건 축 준 공 일		
규 모	용지면적(m ²)		건축연면적(m ²)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9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개시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관리기관 귀하				
첨 부 서 류	신고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사업계획서에 따른 시설의 구입증명 서류 등 사업의 개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사업자등록증(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1부)	수수료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 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 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개시 신고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관리기관의 장 직인				

210×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서식 8] 공장등록대장 <개정 2009.8.7>

[별지 제8호 서식] <개정 2009.8.7>

등록번호						
등록일		공장등록대장(갑)				
등 록 인	회 사 명	(전화:)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대표자주소 (법인소재지)					
공 장 개 요	공장소재지				지 목	
	설립승인번호			설립승인일		
	용 도 지 역			배출규모별 사업장	대 기	중
					수 질	중
	업종 (분류번호)			주요생산품		
규 모	공장부지면적(m ²)	제조시설면적(m ²)		부대시설면적(m ²)		
등록 조건						
사 용 내 역						
회 사 명	대표자 성명	사 용 면 적		업 종	가 동 개시일	가 동 상 태
		제조시설 면적(m ²)	부대시설 면적(m ²)			

210mm×297mm(보존용지 1종 70g/m²)

등록번호		공장등록대장(을)						
등록일								
회사개요	회사명	(전화:)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대표자주소 (법인소재지)							
공장개요	공장설립등 승인일		완료신고 (등록)일		가동개시일			
	공장부지면적(m ²)	제조시설면적(m ²)		부대시설면적(m ²)		종업원수		
							남:	여:
	업종 (분류번호)						보유구분 <input type="checkbox"/> 자가 <input type="checkbox"/> 임대	
생산개요	주요생산품			주요원자재				
	전력사용량(kW/일)		용수사용량(t/일)		연료사용량			
			생활용수	공업용수	석유 (ℓ/일)	가스 (m ³ /일)	기타 (t/일)	
제 조 시 설 내 역								
제 조 시 설 명		수 량		배 출 여 부				

210mm×297mm(보존용지 1종 70g/m²)

공장등록증명(신청)서					처리기간
					즉 시
신청인	회 사 명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대표자주소 (법인소재지)				
등록 내용	공장소재지		지 목		보유구분 <input type="checkbox"/> 자가 <input type="checkbox"/> 임대
	공장등록일		사업시작일		종업원 수 남: 여:
	공장의 업종(분류번호)	공장부지면적(m ²)	제조시설면적(m ²)	부대시설면적(m ²)	
등록 조건					
등록변경·증설등 기재사항 변경내용 (변경 날자 및 내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공장등록증명서를 신청합니다.				수수료	
				시·군·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수수료 또는 관리기관이 정하는 수수료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관리기관 귀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2항·□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된 공장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관리기관의 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input type="checkbox"/> 등록 <input type="checkbox"/> 등록 변경 <input type="checkbox"/> 부분등록 <input type="checkbox"/> 건축물등록					신청서					처리기간 7일(법 제16조제6항 또는 제7항 각 호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허가 등을 의제처리하는 경우에는 20일)				
신청인	회 사 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대표자주소 (법인소재지)													
공장현황	공장소재지				지 목									
	용 도 지 역				종업원 수									
					생 산 품									
	공장의업종(분류번호)		첨단업종(적용범위)		공장부지면적(m ²)		제조시설면적(m ²)		부대시설면적(m ²)					
변경내용	구 분	회사명	대표자 성명	공장부지면적(m ²)	제조시설면적(m ²)	부대시설면적(m ²)	업종(분류번호)	토지(건축물)사용권(기간 등)						
	변경 전													
	변경 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제12조·제12조의2·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관리기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 제16조제6항 또는 제7항 각 호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허가 등을 의제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신청서 및 구비 서류) 2. 등록신청의 경우 -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 - 양수 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등록된 공장을 양수하거나 임차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등록변경신청의 경우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양수 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등록된 공장을 양수하거나 임차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공장건축물등록의 경우 -공장건축물의 건축물대장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서식 13] 공장이전(예정) 확인(신청)서 <개정 2009.8.7>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09.8.7>

(앞 쪽)

공장이전(예정)확인(신청)서						처리기간
						즉 시
신청인	회사명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이전전	공장소재지					
	공장등록일		공장등록번호			
	업종(분류번호)					
	공장부지면적 (㎡)		제조시설 면적(㎡)		부대시설 면적(㎡)	
이전후	공장소재지					
	이전시기		공장설립승인 (등록)번호			
	업종(분류번호)					
	공장부지면적 (㎡)		제조시설 면적(㎡)		부대시설 면적(㎡)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장이전(예정)의 확인을 신청합니다.						수수료
						없음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관리기관 귀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장이전(예정)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관리기관의 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아파트형공장 <input type="checkbox"/> 신 설 <input type="checkbox"/> 승 인 (신청서) <input type="checkbox"/> 증 설 <input type="checkbox"/> 변경승인					처리기간	
					뒤쪽참조	
신청인	회 사 명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대표자주소 (법인소재지)					
공장개요	공장소재지 (공장명칭)					
	용 도 지 역		지 목			
	주 요 유 치 업 종		공장부지 면적(m ²)	제조시설 면적(m ²)	부대시설 면적(m ²)	
사업개요	구 분	부지면적 (m ²)	건축면적 (m ²)	분 양 면 적		
				공장시설 면 적(m ²)	기타산업시 설면적(m ²)	지원시설 면 적(m ²)
	공 장 동					
	부 대 동					
투자액:		평당 분양예정가격:		유치업체 수:		
변 경 승 인 신 청 사 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아파트형 공장설립(설립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수수료	
					없 음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위와 같이 아파트형공장설립(설립변경)을 승인합니다.						
※ 의제처리되는 인·허가 및 승인조건: 별지참조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등록번호		아파트형공장등록대장(갑)					
등록일							
등록인	회사명	(전화:)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대표자주소 (법인소재지)						
공장개요	아파트형 공장명칭						
	공장소재지						
	실립승인번호 (설립승인일)	완료신고일					
	용도지역	지목					
	주유치업종 (분류번호)						
	구분	부지면적 (㎡)	건축면적 (㎡)	층수	분양면적		
				공장시설 면적(㎡)	기타산업시 설면적(㎡)	지원시설 면적(㎡)	공동시설 면적(㎡)
공장동							
부대동							
관리주체	명칭	대표자 성명	관리규약신고일		비고(변경사유 및 변경일)		
등록조건							

210mm×297mm(보존용지 1종, 70g/㎡)

[서식 25] 산업단지입주신청(확인)서 <개정 2009.8.7>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09.8.7>

산업단지입주 <input type="checkbox"/> 계약 <input type="checkbox"/> 계약변경		신청(확인)서		처리기간
				5일
신청인	회사명	(전화:)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대표자주소 (법인소재지)			
입주 계약 신청 내용	공장(사업장)소재지			
	입주형태	(분양)	(임차)	(양수·도) (기타)
	회사명	대표자 성명		
	업종	분류번호	첨단업종 (적용범위)	생산품 (서비스)
	규모	부지면적(m ²)	건축면적(m ²)	제조시설면적(m ²)
기존 공장	회사명	대표자		
	소재지			
	업종	분류번호		
	규모	부지면적(m ²)	제조시설면적(m ²)	부대시설면적(m ²)
계약변경사항, 사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산업단지 입주계약(변경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관리기관 귀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산업단지 입주계약(변경계약)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관리기관의 장 직인				
구비서류 1. 산업단지입주계약신청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임대사업계획서) 1부 2. 변경계약신청의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및 변경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서 각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서식 29] 임대신고서 <개정 2009.8.7>

[별지 제29호 서식] <개정 2009.8.7>

(앞 쪽)

임대신고서						처리기간 7일
임대인	회사명	(전화:)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대표자주소 (법인소재지)					
임차인	회사명	(전화:)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대표자주소 (법인소재지)					
임대내용	공장소재지					
	용지면적(m ²)		건축면적 (m ²)		임대가격 (백만 원)	
	임대용지면적(m ²)		임대건축 면적(m ²)		임대기간	
	임대시설			임대사유		
임대인의 공장등록 변경		구분	용지면적(m ²)	건축면적(m ²)	제조시설면적(m ²)	부대시설면적(m ²)
		변경전				
		변경후				
임차인의 사업계획		업종	분류번호	생산물	가동예정일	
<p>「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3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임대하려고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 신고인(임대인) (서명 또는 인)</p> <p>관리기관 귀하</p>						
구비서류	신고인(양도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임대계약서 사본 1부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부등본(1부)			수수료 없음
<p>위와 같이 임대신고를 하였음을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 관리기관의 장 직인</p>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매 각 협 의 서						
매 각 인	회 사 명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대표자주소 (법인소재지)					
양 수 인	회 사 명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대표자주소 (법인소재지)					
양수자의 사업계획		업 종 (생 산 품)	분류번호	부지면적 (㎡)	건축면적 (㎡)	가동예정일
<p>「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매각협의를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유 관 기 관 의 장 적인 </p>						
※ 구비서류: 양수인의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 1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 1] 자유무역지역 입주(변경)허가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자유무역지역 <input type="checkbox"/> 입주 허가 <input type="checkbox"/> 입주변경허가		신청서	처리기간 10 일
신청 인	①회사명	(전화번호 :)	
	②대표자성명	③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④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의 소재지)		
사 업 내 용	⑤사업명		
	⑥투자규모(자본금)	원 (US \$ 상당)	⑦외국인투자비율 및 투자금액
	⑧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상세세분류)	⑨주 생산 품	
변경 허가 신청 사항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동법시행령 제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입주허가(입주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div> 관리권자 귀하 (서명 또는 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자유무역지역의 입주를 허가(변경허가)합니다.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 년 월 일 관리권자 </div> (인)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수수료 없음
2.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사업에 관한 인가·허가·면허·등록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서식 2] 입주확인서(발급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앞 쪽)

<input type="checkbox"/> 입주확인서발급신청서 <input type="checkbox"/> 입 주 확 인 서		처리기간 1 일	
신 청 인	①회 사 명	(전화번호 :)	
	②대 표 자 성 명	③주민등록번호(법 인등록번호)	
	④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의 소재지)		
확 인 내 용	⑤공 장 소 재 지	⑥종 업 원 수	
	⑦입 주 허 가 일	⑧사업개시일	
	⑨공장의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상세세분류)	⑩공장용지면적(m ²)	⑪공장연면적(m ²)
	⑫제조시설의 면적(m ²)	⑬부대시설의 면적(m ²)	⑭기타 시설의 면적(m ²)
	⑮용도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14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입주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리권자 귀하			
위 업체는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 하여 입주허가를 받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체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관리권자 ⑮		수수료 없음	
※ 이 확인서는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등록에 관한 증서에 갈음하는 입주확인서입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규칙

[서식 1] 신주 등의 취득 또는 출연 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서 <개정 2007.10.26>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09.7.31>

(3-1)

신주 등의 취득 또는 출연 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외국 투자가	① 상호 또는 명칭(영문)			③국적				
	② 주소(영문)							
	SPC여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SPC의 최종 지배모기업	상호			
				국적				
내국 투자가	④ 상호 또는 명칭			(전화:)				
외국인 투자 기업	⑤ 상호 또는 명칭		국문:	⑥자본금 (출연금)	취득(출연) 전			
			영문:		취득(출연) 후			
	⑦ 사업자등록번호(본사)					SPC여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⑧ 주소	본사		(전화:)				
		공장 또는 사업 장		(전화:)				
		금번 투자지역		(전화:)				
	⑨ 하려는 사업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세분류		(신고접수기관 기재란)						
⑩ 금번 외국인투자금액 및 비율			취득가액:	원(USD	상당),	%		
⑪ 투자형태	┌			⑫ 투자목적	┌			
⑬ 투자방법	┌	┌		산업 재산권등	원(USD 상당)			
⑭ 취득할 주식(지분) 의 내용	종류	1주(좌)당 액면가			1주(좌)당 취득가액			
	수량	액면총액			취득총액			
⑮ 금번취득후외국인투자금액및비율			액면가액:	원	%			
			취득가액:	원(USD 상당)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1항 또는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또는 대리인)	(전화:)			
수탁기관장 귀하								
신고인 귀하								
신고번호:								
위와 같이 신고를 마쳤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수탁기관장	[인인]			
※ 유의사항: 이 신고필증은 외국인투자자금의 도착을 확인하는 것은 아니며,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 또는 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의 규정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서식 3] 기존주식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 투자 <개정 2009.7.31>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09.7.31>

(앞쪽)

기존주식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 투자					<input type="checkbox"/> 신고서 <input type="checkbox"/>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신고: 즉시, 허가: 15일
주 식 등 발 행 기 업	① 상호 또는 명칭	(국문) (영문)	② 사업자등록번호	SPC여부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③ 주소	(전화번호:)					
	④ 공장(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⑤ 하고 있는 사업					⑥ 자본금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 세 분 류	[신고(신청)접수기관 기재란]					
⑦ 주식(지분)취득자 (외국투자자)	상호 또는 명칭(영문)						⑧ 국적
	주소		(전화번호:)				
	SPC 여부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SPC의 최종 지배모기업	상호 국적			
⑨ 주식(지분)양도자	상호 또는 명칭		(전화번호:)				
⑩ 금번 외국인투자금액 및 비율		취득금액:		원(USD	상당),	%	
⑪ 취득할 주식 (지분)의 내용	종 류		1주(좌)당 액 면 가		1주(좌)당 취 득 가		
	수 량		액면총액		취득총액		
⑫ 금번 취득 후 외국인투자금액 및 비율			액면가액: 원			%	
			취득가액: 원(USD	상당)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또는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수탁기관장(또는 지식경제부장관) 귀하							
신고(신청인) 귀하 신고(허가) 번호: <input type="checkbox"/> 위의 신고를 마쳤음을 확인합니다. <input type="checkbox"/> 위의 신청을 허가합니다. 허가조건: 년 월 일 지식경제부장관(또는 수탁기관장) 직인							
※ 유의사항: 이 신고필증(허가증)은 외국인투자자금의 도착을 확인하는 것은 아니며, 다른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의 규정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수 수 료 없 음	
※ 첨부서류 이하 생략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신고서							처리기간
							즉 시
외국인 투 자 기 업	① 상호 또는 명칭		국문 :		② 사업자등록 번호(본사)		
			영문 :				
	③ 주 소	본 사	(전화 :)		④ 자 본 금	취득 전	
		공 장 (사업장)	(전화 :)			취득 후	
	⑤ 하고 있는 사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 세 분 류		(신고접수기관 기재란)					
외 국 투 자 가	⑥ 상호 또는 명칭				⑦ 국 적		
	⑧ 주 소				(Tel :)		
	SPC여부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SPC의 최종 지배모기업	상호		
					국적		
취득한 주식 (지분)의 내역	⑨ 종류	⑩ 수량	⑪ 1주(좌)당 액 면 가	⑫ 액면총액	⑬ 취득가액	⑭ 취득총액	
⑮ 취득사유	<input type="checkbox"/> 전환사채 <input type="checkbox"/> 신주인수권 <input type="checkbox"/> 무상증자 <input type="checkbox"/> 배당 <input type="checkbox"/> 상속·유증 <input type="checkbox"/> 합병 <input type="checkbox"/> 기업분할 <input type="checkbox"/> 포괄적 주식교환·이전 <input type="checkbox"/> 기타()						
⑯ 취득 후 외국인투자가 소유주식 (지분)의 수량, 금액 및 비율	주(좌)	액면가액: 원		취득금액: 원(USD 상당)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수탁기관장 귀하							
신고인 귀하 신고번호: 위와 같이 신고를 마쳤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수탁기관장 직인							
※ 유의사항: 이 신고필증은 외국인투자자금의 도착을 확인하는 것은 아니며, 다른 법령 에 따라 인·허가 또는 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의 규정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첨부서류 1.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이하 생략						수수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서식 27] 년 분기 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 장려금 신청서

[별지 제27호 서식]

(앞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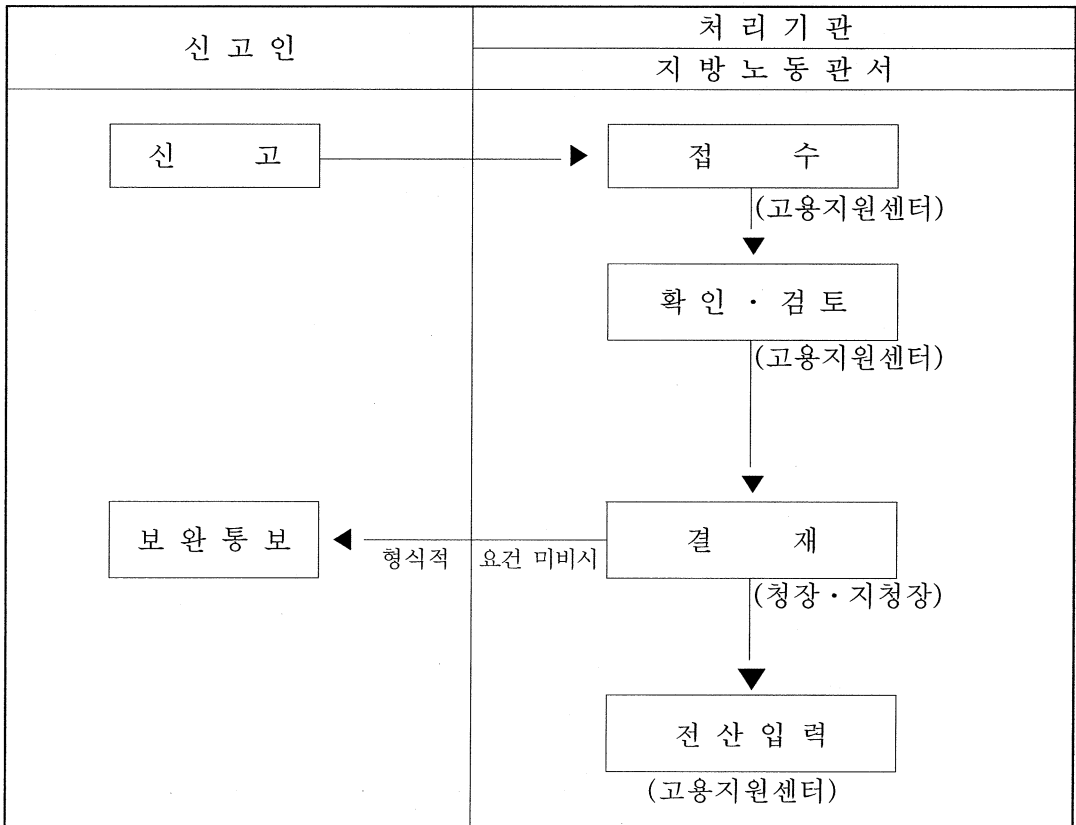
년 분기 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 장려금 신청서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명칭			② 대표자								
	③ 사업장관리번호											
	④ 업 종 명			업종명 (주생산물:)			⑤ 업종코드					
	⑥ 소 재 지			□□□-□□□			(전화번호: 담당자:)					
⑦ 전문인력고용(지원) 대상자 수										명		
⑧ 고용(지원) 전 3개월, 고용(지원) 후 6개월간 고용조정 여부										1. 예 2. 아니오		
⑨ 지원금신청액										원		
⑩ 계좌번호										은행 (예금주:)		
<p>「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p>												
구비서류										수수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새로 고용하거나 지원받은 전문인력의 경력·자격 등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새로 고용하거나 지원받은 전문인력의 근로계약서 사본 1부 3. 새로 고용하거나 지원받은 전문인력의 임금대장 사본 1부 4. 지원받은 전문인력의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협약서 사본 1부(전문인력을 지원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5. 근로자대표와의 협약서 및 근로자 동의서 사본 각 1부(전문인력을 지원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없음		
※ 표시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 접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처리부서		선		담당		과장	청장·지청장
							람					
※ 처 리	① 전문인력고용(지원)자수										명	
	② 지급결정액										원	
※ 결 재	담		팀		과		청장·		결재 연월일			
	당		장		장		지청장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작 성 요 령 ▶

1. ①란은 신청인의 회사 상호 또는 법인 명칭을 적습니다.
2. ②란은 대표자 성명을 적습니다.
3. ③란은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를 적습니다.
4. ④·⑧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업종에 따릅니다.
5. ⑥란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6. ⑦란은 신규업종진출 종류(업종추가, 업종전환)를 적습니다.
 - 업종추가: 현재 영위하고 있는 업종 외에 새로운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을 추가하는 경우
 - 업종전환: 현재 영위하고 있는 업종을 폐지하고 새로운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으로 전환하는 경우
7. ⑩란은 신규업종진출의 실시계획기간을 적습니다.
8. ⑪란은 신규업종진출에 필요한 시설 또는 설비 명세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별지 기재 가능).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서식 43] 년 월(분기) 재고용장려금 신청서

[별지 제43호 서식]

(앞 쪽)

년 월(분기) 재고용장려금 신청서							처리기간 10 일	
사업장	① 사업장관리번호							
	② 명	칭			③ 대규모기업	1. 해당 2. 비해당		
	④ 소	재 지	(전화번호: 담당자:)					
	⑤ 업	종 명	(주생산품:)					
	⑥ 업	종 코드				⑦ 피보험자수	명	
신청 내용	⑧ 재고용피보험자수							명
	⑨ 지원금 신청액 (뒤쪽의 합계금액)							원
	⑩ 계좌 번호		은행			(예금주:)		
⑪ 채용 전 3개월, 채용 후 6개월 고용조정에 따른 근로자 이직 여부						1. 예 2. 아니오		
<p>「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p>								
구비서류 1. 근로계약서 사본 1부 2.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3. 그 사업장에서 이직하게 된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수 수 료 없 음	

※ 표시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 접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처리부서	선 람	담 당	과 장	청장· 지청장
	· · ·						
※ 처리	지급대상자수	명		지 급 결 정 액		원	
※ 결재	담	팀 장	과 장	청장· 지청장	결재 연월일		
	당					· · ·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서식 47] 년 분기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신청서(다수고용)

[별지 제47호 서식]

(앞 쪽)

년 분기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신청서(다수고용)		처리기간		
* 뒤쪽의 작성요령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0 일		
사업장	① 사업장관리번호			
	② 명 칭	③ 대규모기업 1. 해당 2. 비해당		
	④ 소 재 지	□□□-□□□ (전화번호: 담당자:)		
	⑤ 업 종 명	(주생산품:) ⑥ 업종코드		
고령자 고용 현 황	근로자수		고령자수 (고용기간 1년 이상)	
	월	명	명	
	월	명	명	
	월	명	명	
	월 평균	⑦ 명	⑧ 명	
	⑨ 고령자고용율[(⑧/⑦)×100]			%
	⑩ 기준 고령자수 (⑦×업종별지원기준율)	명	⑪ 지원 한도 고령자수 (대규모기업: ⑦×0.1) (기타기업: ⑦×0.15)	명
⑫ 초과 고령자수(⑧-⑩)	명	⑬ 정년퇴직자 계속고용 지원 인원 수	명	
⑭ 지원고령자수(⑫ > ⑪이면 ⑪-⑬, ⑫ < ⑪이면 ⑫-⑬)			명	
신청 내용	⑮ 분기당 장려금/인	원	⑯ 신청액(⑭×⑮) 원	
	⑰ 계좌번호	은행	(예금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주민등록번호와 재직기간이 적힌 고령자 명부 사본 1부 2. 고령자의 월별 임금대장 및 근로계약서 사본 1부(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의 신고대상이 되는 고령자는 제외합니다)			수수료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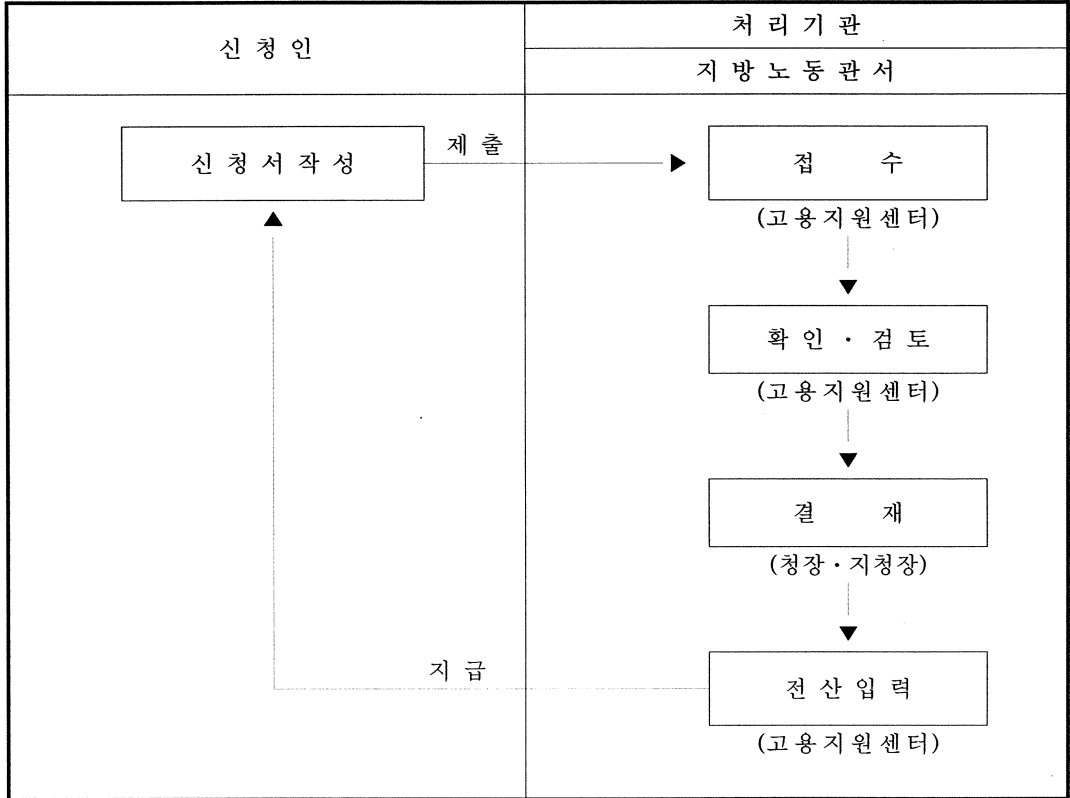
* 표시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 접수	접수 연월일	접수번호	처리부서	선 담	담 당	과 장	청 장· 지 청 장
* 처 리	근로자수		명	고령자수		명	
	기준고령자수		명	초과고령자수		명	
	지원한도인원		명	신규지원인원		명	
	지원고령자수		명	지급결정액		원	
* 결 재	담당		과 장		청장지 청장		결제 연월일
	담당		과 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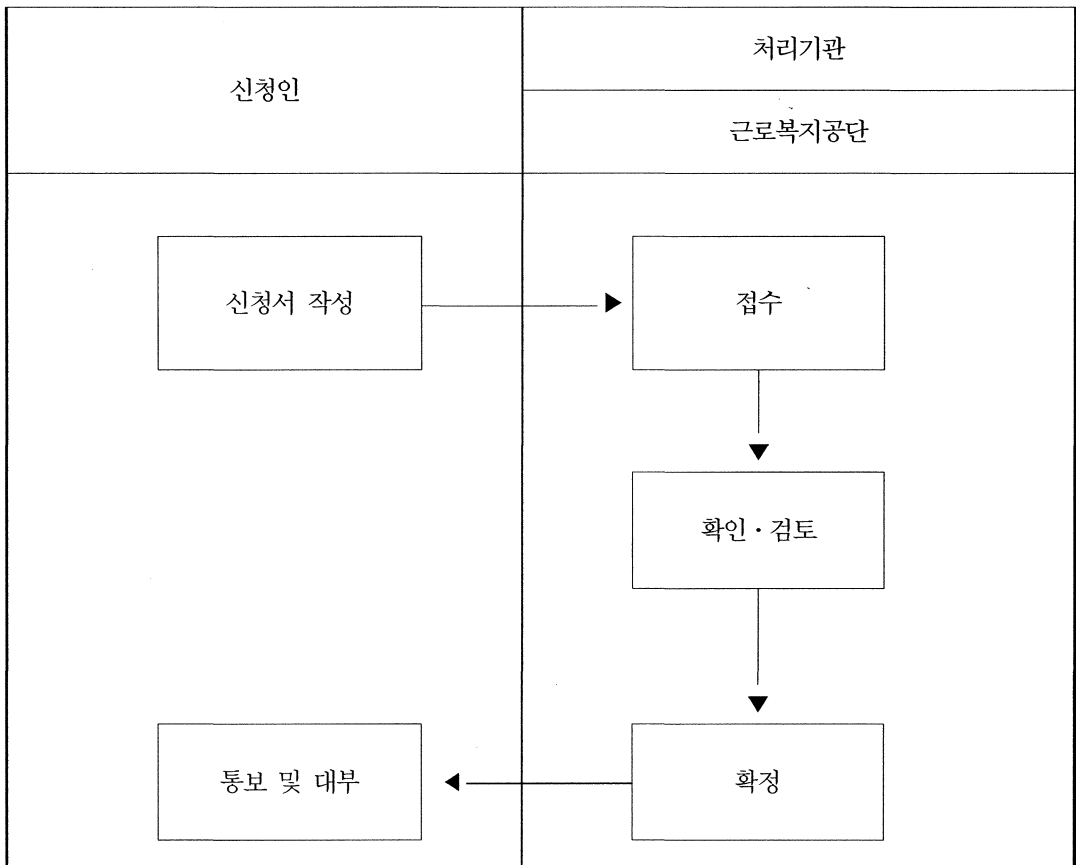
◀ 작성요령 ▶

1. ⑤업종 및 ⑥업종코드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고시 제2000-1호)상의 업종 및 업종코드에 따릅니다.
2. 각 월의 근로자수 및 고령자수는 각 월 말일의 근로자수 및 고령자수를 적습니다.
 - 가. 고령자(만 55세 이상)는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자를 산정합니다.
 - 나. 일용근로자(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자),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되는 자는 근로자수 및 고령자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다. 보험관계의 성립일 또는 사업이 폐지·종료된 날이 속한 월의 적용일수가 16일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보아 근로자수를 적습니다.
3. 건설현장이 적용단위인 경우의 근로자수는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됩니다.
 - 가. 근로자수 = 임금총액 ÷ 건설업 월평균임금 ÷ 연간공사개월수
 - 나. 공사명세서상 임금총액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한 노무비율을 곱하여 산정(총공사금액×노무비율)
 - 다. 건설업 월평균임금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건설업의 상시근로자수 산정을 위하여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사용
4. ⑩의 업종별 지원기준율은 노동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합니다.
5. ⑦·⑧·⑨·⑩·⑪·⑫·⑬·⑭는 소수점 둘째 자리만 적습니다(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버립니다).
6. ⑮의 금액을 적는 경우 원 단위는 버립니다.

【작 성 요 령】

1. ① 중 『상시근로자수』에는 사업장 전체 근로자 수를 적습니다.
2. ① 중 『업종코드』에는 고용보험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세세분류 업종 및 코드 번호를 적습니다.
3. ⑥ 『고용유지조치기간의 임금지급기준』에는 고용유지조치기간 동안 고용유지조치 대상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노사간 협의사항을 적습니다.
4. ⑦ 『신청월에 지급할 임금총액』에는 고용유지조치 대상근로자에게 고용유지조치기간에 지급할 임금총액을 적습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 사업장별 보험관계 성립사항						
(2)	사업장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명 칭			업종코드		
	소재지					
	고용보험성립일					
	관할지역본부(지사)명		소재지			
(3)	사업장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명 칭			업종코드		
	소재지					
	고용보험성립일					
	관할지역본부(지사)명		소재지			
(4)	사업장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명 칭			업종코드		
	소재지					
	고용보험성립일					
	관할지역본부(지사)명		소재지			
(5)	사업장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명 칭			업종코드		
	소재지					
	고용보험성립일					
	관할지역본부(지사)명		소재지			
(6)	사업장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명 칭			업종코드		
	소재지					
	고용보험성립일					
	관할지역본부(지사)명		소재지			

[서식 14] 우선지원 대상기업 신고서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08.7.1>

(제 1 쪽 앞면)

우선지원 대상기업 신고서		처리기간
※ 뒤쪽의 기재요령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5 일
사업주	① 상호 또는 법인명칭	
	② 소재지	(전화 :)
	③ 대표자	④ 주민등록번호
주된사업장	⑤ 사업장관리번호	
	⑥ 명칭	
	⑦ 소재지	(전화 :)
	⑧ 보험사무대행기관명칭	⑨ 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항 목		변경 전 내용
		변경 후 내용
변경항목	⑩ 사업의 종류 및 업종코드	
	⑪ 총상시근로자수 (전년도)	명
	⑫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여부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중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 해당 여부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⑭ 변경사유 발생일		⑮ 변경사유
⑯ 총 사업장 수		
※ 처리	변경후 기업규모	<input type="checkbox"/> 우선지원대상기업 <input type="checkbox"/> 대규모 기업
	변경사유 :	변경적용개시일
<p>「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고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right;"><input type="checkbox"/> 보험사무대행기관명 (서명 또는 인)</p> <p>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p>		
※ 구비서류 : 없음 우선지원기업 해당·비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별도의 증빙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없음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않습니다.

※ 접수	접수일자	. . .	※ 처리	선 략		※ 결재	담당	차장	부장	본부(지사)장
	접수번호			입력필						
	처리기한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규칙

[서식 8] 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상황보고서(년도분)

[별지 제8호 서식] <개정 2008.2.14>

(제1쪽)

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상황보고서(년도분)											
(금액단위: 천원)											
기 금	① 기금명				② 인가번호			③ 기금설립등기일			
	④ 소재지				⑤ 회계연도	년 월 일 ~ 년 월 일					
사 업 체	⑥ 대표자	⑦ 업종	⑧ 근로자수	⑨ 노동조합원수	⑩ 납입자본금						
			명	명							
기 금 현 황	당기 변동금액										
	⑪ 전기 말 기금원금 총액	⑫ 사업주 출연	⑬ 수익금 전입	⑭ 제3자출연 등	⑮ 원금사용 등 변동액	⑯ 소계	⑰ 당기 말 기금원금 총액				
기 금 관 리	증식 방법										
	⑱ 금융기관 예입예탁	⑲ 투자신탁수익증권 매입	⑳ 유가증권매입	㉑ 기타	㉒ 근로자대부	㉓ 합계					
용 도 사 업 재 원	㉔ 당기 기금운용 수익금	㉕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액의 50퍼센트 또는 80퍼센트 범위		㉖ 자본금 50퍼센트 초과액	㉗ 이월금 등		㉘ 합 계				
사 업 실 적	구 분		계		보조사업		대부사업		㉙ 부동산현황		
			금액	수혜 자수	금액	수혜 자수	금액	수혜 자수	명칭	금액	취득 일
	복 지 사 업 비	⑳ 주택구입자금지원									
		㉑ 우리사주주식구입									
		㉒ 생활안정자금									
		㉓ 장 학 금									
		㉔ 재 난 구 호 금									
		㉕ 체육문화활동지원									
		㉖ 근로자의날행사비지원									
		㉗ 복지시설취득운영									
	㉘ 기 타 복 지 비										
㉙ 기 금 운 영 비											
㉚ 잔 액											
㉛ 합 계											

선택적근로자복지제도실적	☞ 주택구입자금지원									
	☞ 우리사주주식구입									
	☞ 생활안정자금									
	☞ 장 학 금									
	☞ 재 난 구 호 금									
	☞ 체육문화활동지원									
	☞ 근로자의날행사비지원									
	☞ 기 타 복 지 비									
☞ 합 계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27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기금대표자 (서명 또는 인)

○○○○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구비서류

1. 해당 연도 결산서 1부
2.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추정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포함) 1부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⑦ 업종란에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대분류 업종명을 적습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 7] 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변경계획서]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08.12.31>

(앞 쪽)

건설폐기물처리		<input type="checkbox"/> 계획서 <input type="checkbox"/> 변경계획서		처리기간		
				3일		
신고인	①상호(명칭)		②발주자와의 관계			
	③성명(대표자)		④생년월일			
	⑤주소	(전화번호:)				
	⑥업종		⑦사업자등록번호			
공사내역	⑧공사명		⑨공사기간			
	⑩공사(배출)현장주소	(전화번호:)				
	⑪순환골재의무사용건설공사의 내용					
⑫발주자	상호(명칭)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⑬건설폐기물 성상별·종류별 분리배출계획						
⑭건설폐기물의 발생주기						
⑮건설폐기물의 보관방법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배출 및 처리계획						
⑯건설폐기물의 종류	⑰배출량 (톤)	⑱운반		⑲처리		
		운반차	운반량	처리구분	업소명	처리방법
⑳당해 건설현장에서의 재활용계획						
시설명	처리능력	처리대상 건설폐기물 의 종류	처리 예상량 (톤)	순환골재 생산량	사용량	사용용도
㉑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㉒변경사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계획을 <input type="checkbox"/> 신고 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변경신고 <input type="checkbox"/> 제9조제3항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수수료	
1. 건설폐기물처리계획신고필증 1부					없음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⑥란은 한국표준산업분류(소분류)에 따른 업종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서식 14] 건설폐기물처리시설설치(변경)승인 신청서

[별지 제14호서식]

(앞 쪽)

건설폐기물처리시설설치 <input type="checkbox"/> 승인 <input type="checkbox"/> 변경승인 신청서					처리기간 10 일
신 청 인	①상 호(명 칭)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 명(대표자)	④생 년 월 일			
	⑤주 소(사무실) (전화번호 :)				
⑥업 종					
⑦처리시설설치예정지 (전화번호 :)					
⑧착 공 예 정 일			⑨준 공 예 정 일		
⑩ 처리시설명	⑪시설규격 (능 력)	⑫처 리 대 상 건 설 폐기물의 종류	⑬처리예상량 (톤/일)	⑭ 방지사설명	⑮시설설치비용 (백만원)
⑯현장내사용용도					
⑰변 경 사 항		변경전	변경후		
⑱변 경 사 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input type="checkbox"/> 제16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input type="checkbox"/> 승인 을 신청합니다. <input type="checkbox"/> 제19조제2항 <input type="checkbox"/> 변경승인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가. 설치승인신청의 경우 1. 처리대상 건설폐기물의 처리공정도 및 건설폐기물배출내역서 1부 2. 건설폐기물의 성상·종류 및 예상배출량 내역서 1부 3.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장비확보계획서 1부 4. 건설폐기물의 중간처리 및 재활용 계획서 1부 5.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계도서 1부 6. 중간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서 1부 7.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각호의 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합니다)의 설치 허가신청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며, 제1호 내지 제6호의 서류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부 나. 변경승인신청의 경우 1. 건설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서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3.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변경계획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4. 배출시설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서식 18] 건설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변경신고]서

[별지 제18호서식]

(앞 쪽)

건설폐기물처리시설설치 <input type="checkbox"/> 신고 <input type="checkbox"/> 변경신고 서					처리기간 10 일	
신	①상 호(명 칭)		②사업자등록번호			
고	③성 명(대표자)		④생 년 월 일			
인	⑤주 소(사무실)		(전화번호 :)			
⑥업 중						
⑦처리시설설치예정지		(전화번호 :)				
⑧착 공 예 정 일		⑨준 공 예 정 일				
⑩	⑪시설규격	⑫처 리 대 상 건 설	⑬처리예상량	⑭	⑮시설설치비용	
처리시설명	(능 력)	폐기물의 종류	(톤/일)	방지시설명	(백만원)	
⑯설치목적						
⑰건 설 폐 기 물		배 출 자	건설폐기물의 종류		반입량(톤/일)	
반 입 계 획						
⑱변 경 사 항		변 경 전		변 경 후		
⑲변 경 사 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input type="checkbox"/> 제18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input type="checkbox"/> 신고 <input type="checkbox"/> 변경신고 를 합니다. <input type="checkbox"/> 제19조제4항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없음	
가. 설치신고의 경우 1.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목적 1부 2.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계획 및 운영기간 1부 3.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계획서 1부 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각호의 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합니다) 설치 허가신청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 한합니다) 1부 나. 변경신고의 경우 1. 건설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필증 2.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계획변경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제3호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4. 배출시설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 12]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신청서(신고서)

[별지 제12호서식]

(앞 쪽)

폐수배출시설 설치 <input type="checkbox"/> 허가신청서 <input type="checkbox"/> 신고서		처리기간 뒤쪽 참조		
신청(신고)인	①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② 대표자			
	③ 주소	(전화번호:)		
	④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신청(신고)내용	⑤ 사업종류	(분류번호)	⑥ 주 생산 품	
	⑦ 설치개시 예정일	년 월 일	⑧ 가동개시 예정일	년 월 일
	⑨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폐수배출시설명	제품별 생산능력(일)	폐수배출량(m ³ /일)	폐수처리의 방법 및 능력
	⑩ 폐수배출시설의 조업 시간 및 연간 가동일	시간/일 일 /년	⑪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조업시간 및 연간 가동일	시간/일 일 /년
	⑫ 수질오염물질 배출항목			
	⑬ 측정기기 부착항목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및 제34조제1항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고자 신청(설치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1. 일반 제출서류: 다음 각 목의 서류 각 1부 가.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흐름도 나. 원료(용수를 포함합니다)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명세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다목 단서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따로 용수의 수질분석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설치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도면을 배치도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면제 대상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비고 제2호 따른 측정기기 부착 일부 항목 면제이유, 제5호에 따른 측정기기 항목 선정 이유를 증명하는 서류 2.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각 1부 가. 제1호 각 목에 따른 서류 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7항 각 호의 시설설치계획서와 그 도면 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세부설치기준 이행계획서와 그 도면 3.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각 1부		1만원		

210mm×297mm [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서식 14]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증(신고증명서)

[별지 제14호서식]

(앞 쪽)

허가번호 또는 신고번호	폐수배출시설 설치 <input type="checkbox"/> 허가증 <input type="checkbox"/> 신고증명서			
제 호				
① 사업장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④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⑤ 사업종류	(분류번호)	⑥ 종류	종	
⑦ 폐수배출시설 일 일 조업시간 및 연간 가동일			⑧ 수질오염방지시설 일일 가동시간 및 연간가동일	
⑨ 폐수배출요인명세				
원료명	사용량	생산제품명	생산량	
허 가 또 는 신 고 사 항	⑩ 폐수배출공정흐름도: 따로 붙임			
	⑪ 폐수배출 및 처리명세			
	폐수배출시설명	폐수배출량	수질오염물질 배출항목	폐수처리방법
	⑫ 폐수처리계통도: 따로 붙임			
⑬ 허가 또는 신고의 수리조건				
<p>「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를 허가(설치신고를 수리)합니다.</p> <p style="text-align:center;">년 월 일</p> <div style="text-align:right; margin-top: 20px;">인</div>				

210mm×297mm [보존용지(1종) 120g/m²]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 46] 주식등의취득에의한외국인투자[변경]신고자료

[별지 제46호서식] <개정 2007.8.6>

주식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변경)신고 자료						
외 국 투자가	상호(명칭)(영문)				국적	
	주소(영문)					
외국인 투 자 기 업	상호 또는 명칭	국문		자본금	취득 전	
		영문			취득 후	
	사업자등록번호					
	주소(본사)		(전화 :)			
허고자 하는 사업명			세세분류			
주식 취득 내역						
신고구분			주식 취득근거			신고일
					당초신고일	
주식양도자	상호(명칭)				전화번호	
금번 외국인 투자금액 및 비율		취득가액	원	USD	상당,	주, %
금번 취득 후 외국인 투자금액 및 비율		취득가액	원	USD	상당,	주, %
투자형태				투자목적		
투자방법	현금		원		USD	상당
	자본계		원		USD	상당
	주식		원		USD	상당
	부동산		원		USD	상당
	산업재산권 등		원		USD	상당
취득할 주식(지 분)의 내용	종 류		1주당액면가			1주당 취득가액
	수 량		액 면 총 액			취 득 총 액
취득사유						
※제출대상: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료에 한정합니다.						

210mm×297mm(신문용지 54 g/m²(재활용품))

법인세법 시행규칙

[서식 3의2] 표준대차대조표[일반법인용]

[별지 제3호의2서식(1)] <개정 2009.3.30>

(제1쪽)

표준대차대조표 (일반법인용)						(단위: 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년 월 일 현재					
■ 자산항목										
계 정 과 목	코드	금 액				계 정 과 목	코드	금 액		
I. 유동자산	01					4. 장기대여금	40			
(1) 당좌자산	02					①관계회사대여금	41			
1. 현금 및 현금성자산	03					②주주입원·종업원대여금	42			
2. 단기예금	04					③기타	43			
3. 유가증권	05					5. 투자부동산	45			
4. 매출채권	06					6. 기타	49			
5. 단기대여금	07					(2) 유형자산	50			
①주주입원·관계회사	08					1. 토지	51			
②기타	09					2. 건물	52			
6. 미수금	10					3. 구축물	53			
①분양미수금	11					4. 기계장치	54			
②공사미수금	12					5. 선박·항공기	55			
③기타	13					6. 건설용 장비	56			
7. 선급금	14					7. 차량운반구	57			
8. 이연법인세자산	73					8. 건설중인자산	58			
9. 기타	15					9. 기타	59			
(2) 재고자산	16					(3) 무형자산	60			
1. 상품	17					1. 영업권	61			
2. 제품	18					2. 산업재산권	62			
3. 반제품	19					3. 광업권	63			
4. 재공품	20					4. 어업권	64			
5. 원재료(원자재)	21					5. 차지권	65			
6. 가설재	22					6. 창업비	66			
7. 저장품	23					7. 개발비	67			
8. 미착상품(미착재료)	24					8.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68			
9. 완성주택	25					9. 개업비	69			
10. 미완성주택	26					10. 사채발행비	70			
11. 용지(건설업)	27					11. 기타	71			
12. 미성공사	28					(4) 기타비유동자산	75			
13. 기타	29					1. 장기매출채권	44			
						2. 장기미수금	76			
						3. 장기선급금	77			
II. 비유동자산	36					4. 보증금	46			
(1) 투자자산	37					5. 이연법인세자산	47			
1. 장기예금	38					6. 기타	78			
2. 장기투자증권	39					자산총계(I + II)	72			
3. 지분법적용투자주식	74									

210mm×297mm(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작성방법

※ 이 표준대차대조표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이 표준대차대조표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작성합니다.
 - 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보험·증권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법인
 - 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관련서비스업 중 기타 금융서비스업과 보험 및 연금관련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
2. 대차대조표의 계정과목과 동일한 계정과목이 없는 경우에는 유사한 계정과목란에 적습니다.
3. II. 비유동부채 중 2. 전환사채등신종사채란은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그 밖에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 등을 사채와 구분하여 별도로 적습니다.

표준대차대조표					
(금융·보험·증권업 법인용)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		년 월 일 현재	
법인등록번호					
계 정 과 목	코드	금 액	계 정 과 목	코드	금 액
I. 현금 및 예치금	01		I. 예수부채	44	
1. 현금 및 현금성자산	02		1. 예수금	45	
2. 예치금	03		2. 기타	46	
3. 기타	04		II. 차입부채	47	
II. 유가증권	85		1. 장·단기차입금	48	
(1) 단기매매증권	86		2. 콜머니	49	
1. 주식	87		3. 매출어음	50	
2. 국·공채, 회사채	88		4. 환매조건부채권 매도	51	
3. 기타	89		5. 기타	52	
(2) 매도가능증권	90		III. 사채	53	
1. 주식	91		IV. 기타부채	54	
2. 국·공채, 회사채	92		1. 퇴직급여충당부채	55	
3. 기타	93		2. 미지급금	56	
(3) 만기보유증권	94		3. 미지급비용	57	
1. 주식	95		4. 선수수익	58	
2. 국·공채, 회사채	96		5. 수입보증금	59	
3. 기타	97		6. 이연법인세부채	60	
(4) 지분법적용투자주식	98		7. 지급보증충당부채	61	
III. 대출채권	15		8. 기타	62	
1. 대출금	16		V. 보험사채준비금	63	
2. 콜론	17		1. 책임준비금	64	
3. 할인 및 매입어음	18		2. 계약자지분조정	65	
4. 환매조건부채권 매수	19		3. 비상위험준비금	66	
5. 지급보증대지급·대출금	20		VI. 특별계정부채(보험업)	101	
6. 기타	21		부채총계(I + ~ VI)	67	
IV. 어음관리계좌자산	22		VII. 자본금	68	
V. 리스자산	23		VIII. 자본잉여금	69	
1. 금융리스채권	24		1. 주식발행초과금	70	
2. 운용리스자산	25		2. 재평가적립금	71	
3. 선급리스자산	26		3. 기타	72	
4. 기타	27		IX. 자본조정	79	
VI. 유형자산	30		1. 주식할인발행차금	80	
1. 토지	31		2. 자기주식	102	
2. 건물	32		3. 기타	82	
3. 건설중인자산	33		X.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03	
4. 기타	34		1.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81	
VII. 기타자산	37		2. 파생상품평가손익	104	
1. 투자부동산	29		3. 기타	105	
2. 보증금	38		XI. 이익잉여금	73	
3. 미수금	39		1. 이익준비금	74	
4. 선급비용, 선급금	40		2. 기업합리화적립금	75	
5. 이연법인세자산	41		3. 「조세특례제한법」 상 준비금	76	
6. 파생상품자산	99		4. 기타이익적립금	77	
7. 무형자산	35		5. 미처분이익잉여금	78	
8. 기타	42		또는 미처리결손금		
VIII. 특별계정자산(보험업)	100		자본총계(VII+ ~ XI)	83	
자산총계(I + ~ VIII)	43		부채와 자본총계	84	

작성 방법

※ 이 표준대차대조표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이 표준대차대조표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보험·증권업 법인(금융관련 서비스업 중 기타금융서비스업과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은 제외한다)이 작성합니다.
2. 대차대조표의 계정과목과 동일한 계정과목이 없는 경우에는 유사한 계정과목란에 적습니다.

작성요령

1. ④·⑨업종란에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증 증분류에 따라 기입하고, 당해 업종의 영위기간을 괄호안에 기입합니다.

[별지 제70호서식]

(앞 쪽)

사업연도	~	자산교환명세서	법인명				
1. 자산교환 법인							
①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성명		④업종(영위기간)					
⑤본점소재지	(☎ :)						
2. 상대방 법인							
⑥법인명		⑦사업자등록번호					
⑧대표자성명		⑨업종(영위기간)					
⑩본점소재지	(☎ :)						
⑪자산교환법인과와의 관계		⑫교환일					
3. 양도한 사업용고정자산 명세							
⑬자산명	⑭소재지	⑮면적(m ²)	⑯취득일	⑰용도(사용기간)	⑱시가	⑲장부가액	
계							
4. 교환 취득자산명세							
⑳자산명	㉑소재지	㉒면적(m ²)	㉓상대방취득일	㉔상대방의용도(사용기간)	㉕취득후용도	㉖시가	㉗상대방장부가액
법인세법 제50조제3항·제99조제11항 및 동법시행령 제86조제6항·제140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교환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세무서장 귀하					제출인	(서명 또는 인)	

22226-84611일
99.4.1 승인

210mm×297mm
(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